

수산정책관실 업무편람

2011. 12

목 차

I. 일반 · 예산현황

1. 조직 및 정원	3
2. 세부기능	4
3. 소관법령	5
4. 수산정책관실 업무추진 방향	6
5. 2010~2011년 예산·기금 총괄표	6
6. 2010~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영현황	9

II. 과별 주요업무 현황

수산정책과

1. 일반현황	51
2. 주요업무현황	61
2-1.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추진	6
2-2. 수협 경영정상화	2 2
2-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7 2
2-4. 수산정책자금 지원	9 2
2-5.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사후관리	1 3
2-6.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5 3
2-7. 수산물·수산특산물·전통식품 인증 활성화	3 4
2-8.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9 4
2-9.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	1 5
2-10.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3 5
2-11.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9 5

2-12. 수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소비촉진	8	7
2-13. 수산시장 확충 및 시설개선	5	8
2-14.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5	9
2-15.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8	9
2-16.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2·0	1

수산개발과

1. 일반현황	0	
2. 주요업무현황	8	
2-1. 다양한 어촌 개발수요에 부응한 어항인프라 확충	8	0·1
2-2. 재해예방을 위한 어항시설(방파제) 안전성 평가	1	1
2-3. 솔로몬군도 어항개발 협력사업 추진	3	1
2-4.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방안 마련	5	1
2-5. 도시와 어촌의 교류촉진 사업	7	1
2-6.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0	21
2-7.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3	21
2-8.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추진	5	21
2-9.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7	2
2-10.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 운영	9	2
2-11. 어업인 경영 및 복지 지원 확대	4	3
2-12. 어업정책보험사업 확대로 안정적 어업경영기반 조성	6	3
2-13. 수산업경쟁력 제고와 어촌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9	3
2-14. 수산계 학교 교육의 특성화 추진	6	4
2-15. FTA/DDA 등 개방확대에 대응, 수산분야 직불제 확충	9	4
2-16. 미래지향적 수산연구기술개발(R&D) 추진	1	5

지도안전과

1. 일반현황	5
2. 주요업무현황	8
2-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851

2-2. 어업질서 확립 수단 확대 및 자율어업질서 유도	0·6	1
2-3.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 안전조업대책 추진	9·6	1
2-4. EEZ 조업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5·7	1
2-5.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예방대책	0·8	1
2-6. 국가 어업지도선 확충 및 현대화	4·8	1
2-7.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7·8	1
2-8. 과징금 부과 제도개선 추진	9·8	1
2-9. 중복 승선조사 방지 「OK 스티커」 시행	1·9	1
2-10.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2·9	1
2-11. 어선안전점검요원 폐지	5·9	1
2-12. 종합상황실 운영	8·9	1

Ⅲ. 주요 수산통계

1. 어가 및 어가인구	12	
2. 연도별 어가 현황	22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32	
4. 보유 어선 톤수별 어가 현황	302	
5. 연도별·지역별 어업인구	402	
6.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5·0	2
7. 어업가구	8	
8. 어가소득	10	
9. 어가자산	8	
10. 어가부채 추이	10	
11.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1·1	2
12. 영어자금 공급 현황	212	
13.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3·1	2
14.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4·1	2
15. 어업용면세유 공급 실적	512	
16.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612	

17. 연도별 수산물 가공생산 및 지원 현황	7·1 2
18.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8·1 2
19.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금액	9·1 2
20.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0·2 2
21.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122
22. 수산물 수급 현황	22
2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322
24.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4·2 2
25. 국가어항 건설 추진 현황	522
26. 시·도별 어항 건설 추진 현황	622
27. 지방어항 현황	7
28. 국가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822
29. 지방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922
30. 어촌 정주어항 지정 현황	032
31. 수산물 생산현황	32
32. 2010년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금액 순위	6·4 2
33.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052
34. 기타 참고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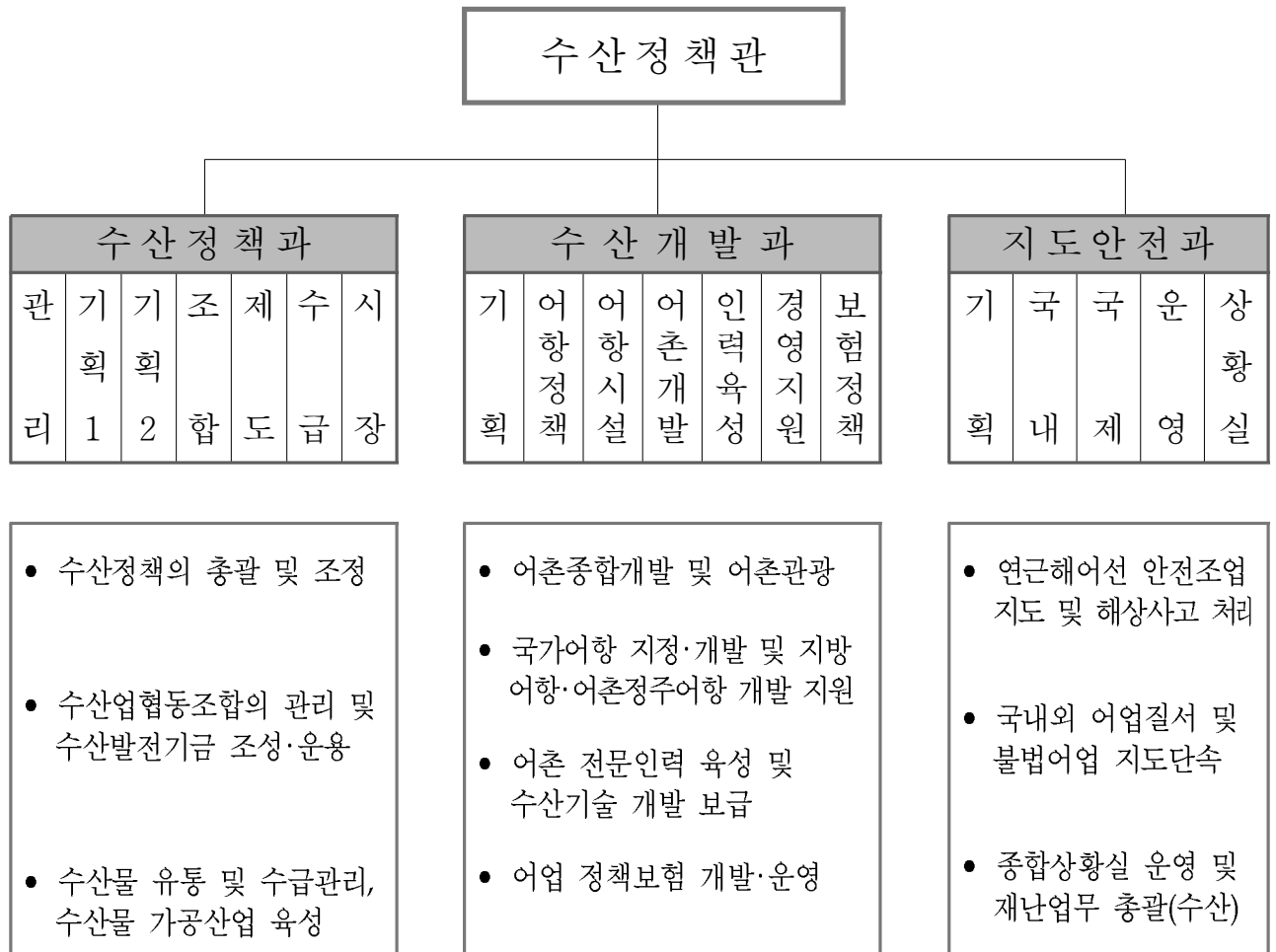
IV. 수산관련 지도

1. 전국 수협 분포도	52
2. 국가어항 위치도	62
3.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관할수역도	752
4.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852
5. 서해 5도서 어장도	92
6. 동해 북방어장 구역도	062

I. 일반 · 예산현황

1 조직 및 정원

조직



정원

구 분	계	고공단	3·4~4급	4·5~5급	6~7급	실무관
계	50	2	3	19	21	5
수산정책과	21	2	1	7	8	3
수산개발과	15		1	7	6	1
지도안전과	14		1	5	7	1



2

세부기능



구 분	기 능
수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산정책자금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수산관련 기금의 조성·운용 ○ 어가부업의 개발·장려에 관한 사항 ○ 수산물(양식수산물 제외)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수산물 유통단지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수산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어촌체험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가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국가어항의 기본계획·정비계획·환경개선계획의 수립 ○ 국가어항의 시설운영 및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 어선원 교육기관의 육성·지원 ○ 어선원 수급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수산기술지도의 기획·총괄 및 지도·감독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지도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 어업정보통신국의 통제·지도 ○ 수산통신시설계획의 수립·운영관리 ○ 어업지도선 수급계획의 수립 ○ 수산어업분야 해상재해대책 관련 제도의 운영

3 소관법령

▣ 단독법령

법 른	대통령령	부 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수산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수산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 어촌어항법	○ 어촌어항법 시행령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동법령

법 른	대통령령	부 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의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의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및농산 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4

수산정책관실 업무 추진 방향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위험관리 강화

- ▶ 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 ▶ 수산물 자급률 제고
- ▶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 ▶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 수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 수산물 수출확대
- ▶ 상생적 해외 개발·협력
- ▶ R&D 개편·민간투자 활성화
- ▶ FTA / DDA 협상대응

어촌 지역 활성화

- ▶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
- ▶ 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 수협 경영정상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5 2010~2011년 예산·기금 총괄표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8,444	8,250	△194	△2.3
예 산 계	5,287	4,768	△519	△9.8
기 금 계	3,157	3,482	325	10.3
〈일반회계〉	2,795	714	△2,081	△74.5
○ 수협경영정상화	605	334	△271	△44.8
○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 농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비 이관	1,203	0	△1,203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농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비 이관	629	0	△629	-
○ 어선안전점검요원운영	7	6	△1	△14.3
○ 어업정보통신지원	126	128	2	1.6
○ 어업지도단속	225	245	20	8.9
〈농특회계〉	1,782	3,223	1,441	80.9
○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사업비 이관	0	824	824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사업비 이관	0	677	677	-
○ 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	50	5	△45	90.0
○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	3	3	0	0.0
○ (자)수산물시장시설개선	73	38	△35	△47.9
○ 인천수산물류가공센터	24	0	△24	-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8	70	△8	△10.3
○ 수산장비(임대)활용	24	17	△7	△29.2



사 업 명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	
			(B-A)	%
○ 어촌관광활성화	37	35	△2	△5.4
○ 수산인 안전공제	12	0	△12	-
○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R&D)	99	109	10	10.1
○ 국가어항관리	73	52	△21	△28.8
○ 국가어항	1,265	1,393	128	10.1
○ 대포항 피해복구	44	0	△44	-
<광특회계>	710	831	121	17.0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88	144	56	63.6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141	127	△14	△9.9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279	261	△18	△6.5
○ 국가어항(제주)	0	80	80	-
○ 어업인교육훈련(제주)	0	0.1	0.0	-
○ 수산어업 행정지원	202	219	17	8.4
<수발기금>	3,157	3,482	325	10.3
○ 수발기금 관리비	4	4	0	0.0
○ 수발기금 운영비	11	11	0	0.0
○ 비축사업	108	125	17	15.7
○ 수산물수매지원(육자)	1,104	1,079	△25	△2.3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육자)	1,475	1,328	△147	△10.0
○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육자)	296	266	△30	△10.1
○ 어업인 영어자금공급 (육자)	0	510	510	-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	23	0	0.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106	106	0	0.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보조)	30	30	0	0.0

6 2010~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용현황

연도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조달	○ 정부출연금(민간출연)	120 (20)	550	650	550	400	200	200	200	249	150	150
	○ 공자기금예탁금											510
	○ 자체수입	142	117	661	889	4,437	4,889	5,139	4,946	5,120	5,167	5,269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149	166	194	240	240	177	121	177	14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	-	-	-	-	-	11	69	35	70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	-	-	-	-	1	3	1
	- 수산물공매납입금	-	-	-	-	-	-	60	60	85	60	84
	- 감척어선매각대금	141.5	12	56	17	9	52	-				
	- 어항토지매각대금	-	-	2		1	7	-		6		
	- 용자원금회수금	-	49	413	648	3,928	4,105	4,345	4,226	4,458	4,531	4,586
	- 전년도이월금	-	41	-	-	-	-	-				
	- 이자수입 등	0.5	15	41	58	125	134	190	174	185	179	208
	- 수산물판매수입대금	-	-	-	-	180	256	138	163	137	91	92
	- 면허료및수수료	-	-	-	-	-	95	166	135	58	91	82
	○ 여유자금회수	-	170	250	976	1,435	920	715	852	627	334	497
합 계(운용액 운용규모)	262	837	1,561	2,415	6,272	6,009	6,054	5,998	5,996	5,651	6,426	
운용	○ 사업비	50	586	569	952	5,114	5,511	5,254	5,479	5,515	5,139	5,581
	- 경상지출	-	-	8	14	413	431	380	602	688	501	569
	- 용자지출	50	586	561	938	4,701	5,080	4,874	4,877	4,827	4,638	5,057
	○ 기금관리비	-	1	1	1	3	4	4	4	4	4	4
	○ 사업운영비	-	-	12	27	5	9	9	10	9	11	11
	○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 여유자금 운용	212	250	979	1,435	1,150	485	787	505	468	497	828



2010~2011년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0년(A)	'11년(B)	증감	
			(B-A)	%
○ 사업비	513,870	562,598	48,728	9.5
- 경상지출	50,080	56,881	6,801	13.6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2,300	0	0.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0,600	10,600	0	0.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3,000	3,000	0	0.0
▪ 비축사업	10,800	18,200	7,400	68.5
▪ 수산물자조금지원	3,781	3,781	0	0.0
▪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13,000	12,500	-500	-3.8
▪ 생계소득및안정	99	0	-99	-
▪ 피해보전직불금	1,500	1,500	0	0.0
▪ 폐업지원금	5,000	5,000	0	0.0
- 용자지출	463,790	505,717	41,927	9.0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용자)	11,875	10,687	-1,188	-10.0
▪ 양식어업지원(용자)	7,699	7,629	-70	-0.9
▪ 노후원양어선대체(용자)	16,376	29,662	13,286	81.1
▪ 원양어업관리회사(용자)	3,000	3,000	0	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용자)	1,000	1,000	0	0.0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용자)	700	-	0	0.0
▪ 수산물수매지원(용자)	110,440	107,949	-2,491	-2.3
▪ 우수수산물지원(용자)	134,000	134,000	0	0.0
▪ 가공시설및운영(용자)	29,600	26,640	-2,960	-10.0
▪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1,600	1,400	-200	-12.5
▪ 산지및소비자유통자금(용자)	147,500	132,750	-14,750	-10.0
▪ 어업인영어자금공급(용자)	0	51,000	51,000	신규

Ⅱ. 과별 주요업무 현황

수 산 정 책 과

1. 일반현황	15
2. 주요업무현황	16
2-1.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추진	61
2-2 수협 경영정상화	22
2-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72
2-4. 수산정책자금 지원	92
2-5.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사후관리	13
2-6.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53
2-7. 수산물·수산특산물·전통식품 인증 활성화	34
2-8.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94
2-9.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	15
2-10.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35
2-11.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95
2-12. 수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소비촉진	87
2-13. 수산시장 확충 및 시설개선	58
2-14.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59
2-15.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89
2-16.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10

1. 일반 현황

□ 조직



□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관 리	○ 수산정책실 및 수산정책관실 공통 업무(국회, 예결산업무 등) ○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결산업무
기 획	○ 수산정책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등 ○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조 합	○ 수협 제도·개혁에 관한 업무 및 지도·경제·신용사업 지도감독 ○ 일선수협의 구조개선 등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금 용	○ 수산정책자금의 운용 및 이차보전(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포함) ○ 수산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공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수산물 브랜드, 품질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업무 등
유통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계획수립 시행 ○ 수산물 소비촉진, 수요개발,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시행
시 장	○ 수산물유통시설(도매시장, 위판장, 공판장 등) 건립지원 및 운영

□ 소관법령

법률명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인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쟁력 도모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관련법률	조합의 합병 및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 사항 규정



2. 주요 업무 현황

2-1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추진

가 제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평가

- '99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
 -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 제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시행
 - 제1차('00~'04) : 신 해양질서 시대 수산업 개편
 - 한·일('99) 및 한·중 어업협정('01) 체결로 연근해 어장 축소
⇒ 어선 감척, EEZ 어업관리, TAC 및 자율관리어업 등에 중점
 - 제2차('05~'09) : 개방화 시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
 - WTO/DDA 출범('01), FTA 확산 등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감
⇒ WTO/FTA 국내대책, 어촌개발,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 자원 회복, 어획량 증대, 소득 증대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연근해 수산자원은 '02년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 * 수산자원량 : ('90) 835만 톤 → ('00) 790 → ('08) 835
 - 어업 생산액은 10년간 47% 증가('99. 4조3,200억원 → '08. 6조3,450)
 - 어업 생산량은 10년간 16% 증가('99. 219만 톤 → '08. 336)
 - 근해어업은 어선세력을 36%(5,937척 중 2,165척)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96% 수준 유지
 - 양식어업은 생산량 1.8배 증가, 넙치·전복산업 등 비약적 발전
 - 어가호당 소득은 69.2% 증가('99. 1,843만 원 → '08. 3,118)
 - 자율관리어업, 총허용어획량(TAC) 등 선진 어업관리 정착

나 대내외 여건 변화

■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시대로의 진입

-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기온 상승은 2배, 해수면 상승은 3배)하여 수산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 심각
 -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어업 현실을 수용하기 어려움
- 우리 연근해어업은 고탄소 산업(수산물 1kg 생산에 유류 0.66ℓ 사용)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산물 수요는 증대하나 생산은 한계

-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35% 증가('00. 35kg → '09. 50kg)하여 육류(22%), 과일류(0%)에 비해 높은 증가율
 - 중국의 수산물 소비도 급증('00. 11kg/인 → '09. 30kg/인)
- 수산자원량에 비해 아직 어선세력이 과도(7% 추가감축 필요)하고, 양식어업도 어장오염, 개발적지 부족 등으로 생산 증대에 한계
 - 원양어업은 어선 노후와 국제규제 강화로 생산량 감소 추세

■ 유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어업 채산성 악화

- 최근 5년간 어가소득은 19% 증가했으나, 어업경영비는 47% 증가
 - * 소득 : ('06) 3,001만원 → ('10) 3,570 / 경영비 : ('04) 1,431만원 → ('08) 2,108
- 보건의료시설 접근에 농촌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촌의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

◆ 어업인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규제 위주의 행정을 자율 기반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 필요

◆ 국내 수산물 소비 증가와 대중국 수출 확대에 대비해 안정적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과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 감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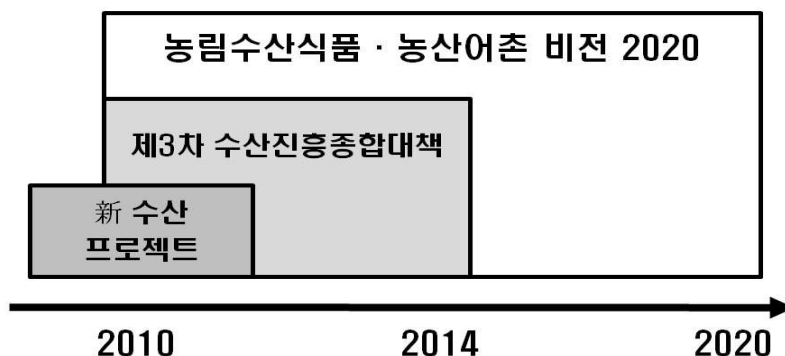


다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p>정책수단</p>	<p>정부 규제·지원 → 어업인 자율·자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정부지원은 어업인의 자생력을 약화 - 어업인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립능력도 강화
<p>자원관리</p>	<p>획일적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자원관리로 고질적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p>변화관리</p>	<p>소극적·방어형 → 적극적·공세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명태 고갈)보다는 기회(참치 출현)를 주목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 - 대중국 수입 증대를 우려하기보다는 대중국 수출 확대 추진

라 타 계획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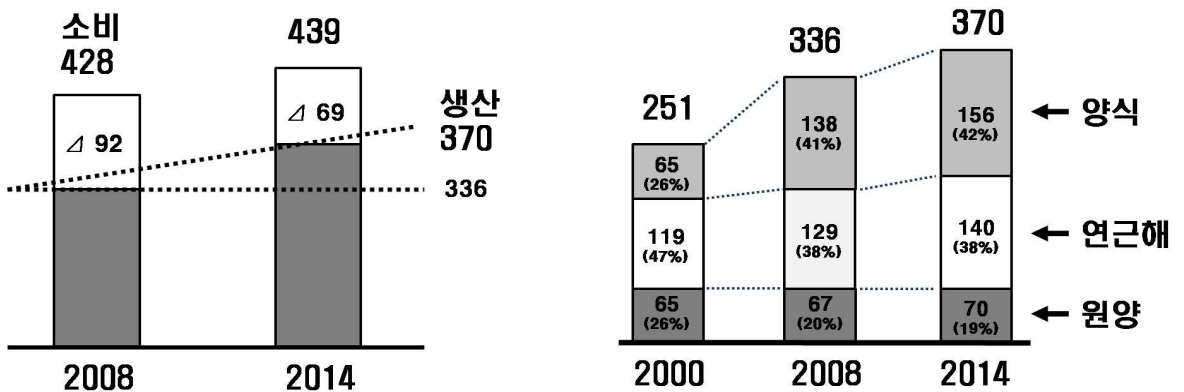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및 “新 수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마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비 전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목 표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 수출 20위 ('07. 생산 13위 수출 26위)
주 요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산 량 : (08) 336만톤 → (14) 370만톤 ■ 어가소득 : (08) 3,118만원 → (14) 3,800만원 ■ 수 출 액 : (08) 14.5억불 → (14) 25억불
중 점 추 진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수산물 생산 목표>



<수산물 생산목표·소비 전망>

<수산업 분야별 생산 목표>



바 업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 및 구조조정 방안

2014년 생산목표 370만 톤 : 연근해 140, 양식 156, 원양 70

■ 연근해어업 : ('08) 129만 톤 ⇒ ('14) 140만 톤

○ 어선척수는 줄이고 수산자원량은 늘려서 척당 생산량 24% 증대

구 분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연근해 생산량	129만톤	140만톤	8.5%	- 어업 구조조정 촉진 - 맞춤형 수산자원관리 - 자율관리어업 확산 - 유류비 등 비용 절감
연근해 어선수	57,183척	50,000척	-12.6%	
수산자원량	835만톤	900만톤	7.8%	
척당 생산량	22.5톤	28.0톤	24.4%	

■ 양식산업 : ('08) 138만 톤 ⇒ ('14) 156만 톤

○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촉진으로 ha당 생산량 19% 증대

구 분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양식 생산량	138만톤	156만톤	13.0%	- 외해양식 활성화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 불법양식어업 근절
양식장 면적	13.6만ha	13만ha	-4.4%	
ha당 생산량	10.1톤	12.0톤	18.8%	

■ 원양산업 : ('08) 66만 톤 ⇒ ('14) 70만 톤

○ 원양 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로 척당 생산량 15% 증대

구 분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원양 생산량	66만톤	70만톤	6.1%	- 원양어선 신조대체 - 연안국 협력 강화 - 해외 수산투자 촉진
원양어선 척수	380척	350척	-7.9%	
척당 생산량	1,736톤	2,000톤	15.2%	

사 중점과제 추진계획

-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 연근해 어업 유류소비량 감축,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수산식품 가공유통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추진
-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생산체계 구축
 -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류소비가 많거나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점 감척하고,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규제를 완화하여 어황변동을 어민 소득증대로 연결
 - 자율관리어업의 선진화 및 어업정책 전반으로의 확대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연안해역 오염을 유발하는 내만가두리는 외해로 이설하고 불법 양식어장 정비 등 양식산업의 친환경화 유도
 - 참다랑어 외해양식, 갯벌어업, Aqua-pet 등 신 성장동력 육성
 -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및 재해대응시스템 개편
- 해외수산자원의 지속적 확보
 - 월양어선 신조대체, 러시아 연해주 수산업 진출, 해외투자 확대, 연안국과의 협력강화 등 추진
- 수산식품산업 육성
 -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기능성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산업의 녹색성장 촉진 등 추진
-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 창조적 경영주체 육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촌관광산업 진흥, 어촌어항 복합개발 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2-2 수협 경영정상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는 '97년 외환위기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01년)
 - 미처리결손금 급증('00년 기준 △9,887억원)으로 경영위기 직면, 어업인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공적자금 1조1,581억원(BIS비율 10% 유지) 지원
 - * 예금보험공사와 MOU 체결 및 지도·경제·신용 사업부문 독립사업부제 실시
- 일선 수협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 경영개선자금 지원('03년)
 - 47개 수협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MOU를 체결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28개 수협 정상화, 5개 수협(완도군, 흑산도 등) 통폐합
 - * 순자본비율 0% 이하 수협에 대해 4,048억원 지원('03~'10)

나 추진실적

- 수협법 개정('10.4)으로 경영구조 개편 및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 중앙회장(조합장) 비상임 및 지도·경제사업 통합(전문경영인 도입) 등
 - 개정 수협법 시행('10.10.13)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시행령 부처협의·입법예고·자체 규제심사 및 정관고시(11)안 마련
- 중앙회는 공적자금 지원 후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 경비 20% 감축, 중앙회 임원 보수반납(20%), 직원 급여반납(3~6%) 조직축소(7개부서), 부실사업장 폐쇄(10개소) 등
 - * 미처리결손금 : ('00) 9,887 → ('05) △6,046 → ('09) 3,574 → ('10) 3,155억 원

- 일선수협은 '03년부터 자금지원 및 MOP 체결로 많은 조합이 정상화 되었으나 일부는 경영악화
 - * 미처리결손금 : ('02.9) △6,694 → ('05) △4,957 → ('09) △1,726 → ('10) △405억 원
 - * MOP체결 조합수 : ('03) 47 → ('05) 42 → ('07) 37 → ('09) 8 → ('10) 3
- 완도군수협 계약이전('09.1) 및 흑산도수협 합병(10.5 신안군수협) 완료

다 향후 추진계획

- 경영정상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 (중앙회)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조직·인력구조 혁신 추진
 - (일선수협) 부실수협(장흥, 전남서부)은 경영목표 미 달성시 통폐합 하고, 부실우려 수협(29개)은 고강도 경영개선 추진
- 수협 중심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역할 강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
 - 산지수산물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부가가치 제고, 우수 브랜드 “바다앓찬” 육성
 - 중앙회 조직을 『전국 단위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으로 재편
 - 일선수협의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개편



참고자료

일선조합 경영정상화

일선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경영진단결과 부실규모 증가 : (회계기준) 5,510억원 → (실사기준) 8,417억원('02.9말기준)
 - * IMF이후 강화된 자산건전성기준(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적용에 따라 '99~'01년간 총 7,539억원의 채충당금 일시적립 등이 원인
 - ('99이전) 총채권액의 2% 적립(중앙회 결산지침)
 - ⇒ ('99이후) 정상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등급 구분 및 구조조정방향 결정('03. 9)

등급	순자본비율	조합	정책방향
1	0% 이상	정상(36)	-
2	0~△7%	부실우려조합 (28)	○ 경영정상화 추진 - '10년 목표순자본비율 0% 달성을 위한 소요액 지원 (재정 70%, 중앙회기금 10%, 자구노력으로 20% 충당) - MOU체결로 이행상황 점검·관리 * 38개조합 4,339억원 무이자융자, 10개조합 자체 경영정상화중
3	△7~△20%	부실우려조합 (20)	
4	△20% 미만	부실조합 (13)	○ 회생가능성여부에 따라 구분 조치 - 회생불가능조합(3개)은 통폐합 - 회생가능조합(5개)은 경영정상화 추진 - 회생가능여부가 불명확한 조합(5개)은 1년간 합병유예조치 후 회생여부 결정 * 회생 및 유예조합에 무이자자금지원(2,370억원), MOU 체결

경영정상화 추진성과

- 경영상태평가결과 정상조합 증가 및 부실조합 감소추세

등급	순자본비율	'02.9	'03	'06	'09	'10
1	0% 이상	36	44	51	50	61
2	0~△7%	28	21	26	32	23
3	△7~△20%	20	18	10	7	6
4	△20% 미만	13	11(합병조합제외)	7	4	2

- 자산·부채실사에 따른 부실규모 감소(전체조합)
 - △8,417억원('02.9) → △6,284('05) → △3,659('08) → △1,726('09) → △405('10)
- 최초 MOU체결조합(47개) 기준, 평균순자본비율 개선
 - △12.2%('02.9) → △9.2%('05) → △2.5%('08) → △0.6%('09) → △0.5%('10)

수협 자금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09	2010	증△감
조 달	예 수 금	147,870	159,372	11,502
	신 용 사 업	116,100	121,637	5,537
	상 호 금 융	31,770	37,735	5,965
	차 입 금	18,596	17,992	△604
	발 행 금 융 채 권	30,662	28,020	△2,642
	매 입 채 무	967	977	10
	적 립 금	8,444	12,852	4,408
	기 타 부 채 본	38,909	41,032	2,123
합 계		256,240	270,949	14,709
운 용	현 금 · 예 치 금	4,114	4,052	△62
	유 가 증 권	57,803	66,414	8,611
	대 출 채 권	139,638	152,466	12,828
	신 용 사 업	137,617	151,254	13,637
	공 제 사 업	42	-	△42
	상 호 금 융	1,979	1,212	△767
	대 여 금	7,593	7,528	△65
	매 출 채 권	2,826	2,677	△149
	채 고 자 산	397	394	△3
	고 정 자 산	10,172	9,638	△534
기 타 자 산	33,697	27,780	△5,917	

* 2009년, 2010년 예산 편성기준



수협 경영수지 현황

수협중앙회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손익현황	계	141	686	891	1,326	1,739	1,461	1,131	164	405	600
	지도관리	△90	124	41	78	283	66	46	△36	65	133
	경 제	△44	12	139	206	209	209	206	124	10	48
	신 용	275	550	711	1,402	1,247	1,186	879	76	330	419
신용사업 부문	B I S 비율	10.7	10.6	11.7	11.2	12.6	11.4	11.4	12.0	13.5	13.1
	부실채권비율	4.0	2.1	2.0	1.5	1.47	1.12	1.12	2.76	2.15	3.86

일선 수협

○ 당기 순손익

(단위 : 개, 억원)

연 도	계		흑자		적자	
	조합수	당기순손익	조합수	당기순손익	조합수	당기순손익
2000	87	△1,958	29	46	58	△2,004
2001	91	△2,430	32	71	59	△2,501
2002	98	△19	79	424	19	△443
2003	98	△155	70	300	28	△455
2004	95	471	85	539	10	△68
2005	94	272	82	592	12	△320
2006	94	315	75	639	19	△324
2007	94	93	74	708	20	△615
2008	94	669	79	1,117	15	△448
2009	93	921	84	1,021	9	△100
2010	92	1,077	83	1,130	9	△53

2-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가 추진배경 및 경위

- 수협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협법 개정 추진('08~)
 - 전문경영인체제 및 경영정상화 기반 구축 등 '수협개혁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09.4.30)
 - 국회 본회의 심의('10.3.18), 대통령 재가('10.4.7) 및 공포(4.12)
- * 개정 수협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시행('10.10.13)

나 주요 개정내용

< 중앙회 관련 >

- 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 전문경영체제 확립
 - 중앙회장은 비상임화 및 연임제한으로 대외적 대표 역할에 전념
 - 비상임 중앙회장 권한은 교류협력사업 등 상징적 대외적 역할에 전념하고 실질적인 경영권 배제
 -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경영인 유치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 구성·운영은 정관규정
 - 지도경제대표이사, 감사위원 3명, 사외이사 2명, 조감위원 2명 등 추천
 - 인사추천위원회(5명) : 조합장 3, 외부인사 2
 -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대표이사 경영평가·해임 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설치
- 중앙회 공적자금을 출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중앙회 자본확충을 위해 일선수협이 우선출자 가능
 - 지도경제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출자 가능(현행은 100분의 20으로 제한)

< 일선수협 관련 >

-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 선택권 부여, 부실수협 (MOU 목표 2회 연속 미이행) 조합장은 비상임화
- 임원 자격의 합리적 조정
 - 조합원에게 상임이사 자격 부여 등 상임이사 자격 완화 및 선출 절차 개선
 - 정상조합은 현행 선출방법 또는 인사추천위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중 선택 가능
 - 수협 등 금융기관에 일정규모 이상 금융채무 연체자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의 임원자격을 제한
 -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나 전무가 직무대행(종전 비상임이사)
 - 조합의 대의원은 타조합이나 농협 등의 임직원 겸직 제한
 - 조합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이사회 의결시 이해관계자의 의결참여 제한
 -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부의금을 허용하되(3만원 한도), 조합 명의로 해야 함
-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잉여금 배당순서 개선 (출자배당 우선 → 이용고 배당 우선)

2-4 수산정책자금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의 안정적인 영어활동 영위를 위한 영어자금 공급
 - 공급규모 : ('08) 15,050억원 → ('09) 19,050 → ('10) 19,050 → ('11) 19,050
 - * 대출조건 : 연리 3%, 1년 상환(1년씩 2회 연장 가능)
- 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공급
 - 대출조건 : 자금 성격에 따라 연리 1.5~5%, 3~17년 분할 상환
- 어업인에 대한 저리의 자금공급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보전
 - 영어자금·부채경감대책자금·피해복구자금 등 이차보전(보전율: 약 2.8~6.3%)

나 추진실적

-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영어자금 공급 확대 및 지원 강화
 - 어업인이 어업경영활동에 필요한 소요액의 39% 수준 공급 중임

<연도별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 요 액	41,199	41,299	41,685	44,223	46,837	48,690
공 급 액	15,050	15,050	15,050	19,050	19,050	19,050
공 급 율 (%)	(37)	(36)	(36)	(43)	(41)	(39)

-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
 - 어가부채대책자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천억원 지원

<연도별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어가부채경감 대책자금지원	6,654	9,173	9,687	8,352	6,972	5,750	4,574	3,353
어가부채경감 대책이차보전금	172	329	361	292	224	185	174	115



- 영어자금 등 어업경영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민영 자금화
 - 어업경영비 지원주체를 정부에서 생산자단체(수협) 등으로 전환
 - * '11년 영어자금재원(19,050억원) 중 정부재정자금(5,284억원) 비율 : 28%
- 어업소득 향상 등을 통해 어업인 부채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
 - 어가소득 창출 정책과 병행, 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등 추진
- 영어자금 운용 내실화 및 공급규모 확대
 -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대출을 강화하고 자금운용 건전화 도모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액 대비 지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공 급 액	15,050	15,050	15,050	19,050	19,050	19,050
지 원 액	13,695	13,912	14,216	14,819	15,248	15,735
지 원 율 (%)	(91)	(92)	(94)	(78)	(80)	(83)

다 향후 추진계획

- 어가부채 및 연체액 저감을 통해 수협 등의 경영부담 완화
 - 영어자금 연체율을 '12년까지 3.5% 이내로 감축 추진
 - * 영어자금 연체율 감축현황 : ('06) 11.5% → ('07) 10.8 → ('08) 9.7 → ('09) 7.8 → ('10) 4.8
- 흉어 등 피해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공급 등 어업경영 지원활동 강화
 - 특별영어자금 지원 현황('11년)
 - 서·남해안지역, 한파 및 저수온 피해어업인 지원 50억원(연리 3%, 1년상환)
 - 충남 서천지역, 김 황백화 피해에 따른 지원 72억원(연리 3%, 1년상환)
- 정책자금 운용에 따른 이차보전 실시 및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100억원/연리 3%)

2-5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사후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WTO·DDA 보조금 협상에서 수산분야 보조금 중 48%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가 금지 보조금으로 명시
 - 관련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단시일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협상의 급진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
 - * 수산분야 보조금('10년 기준, 1조 5천억원) 중 면세유(7천 4백억원) 제한시 수산업 타격 예상
- 국제유가 불안으로 어업경영비 상승추세는 계속되고, 일반유(과세유)와 면세유의 판매가격 차익을 노린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
 - 고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업생산경비 지속 상승
 - *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고경유, 원/ℓ) : ('09평균) 591 → ('10평균) 695 → ('11.9월) 896
 - 면세유가 시중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하여 판매차익을 노린 일부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 * '11.9월(원/ℓ) : 고경유 896(시중가의 55%), 휘발유 946(시중가의 48%)

나 추진실적

- 면세유 감면제도 연장·확대를 통한 어업인 경영지원 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어업용 석유류 감면제도 일몰 연장
 - * '72~'00년→'03까지(3년 연장)→'05까지(2년 연장)→'07까지(2년 연장)→'12까지(5년 연장)
 -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
 - * 니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가시파래 건조시설('09부터)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대책 지속 추진

- 선박·시설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등 신고 강화('08, 조특법)
 - 면세유 공급시 조업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 신설
- 부정유통 어업인 등에 대한 제재강화('10, 조세범처벌법 개정)
 - * 면세유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

-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면세유가 금지보조금에 포함될 경우 대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추진
 - * WTO/DDA 협상 타결 대비, 면세유 제도 등 수산보조금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11.5월~11월)

■ 어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추진

- 한·미 FTA 농어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내실화 방안과 연계하여 '11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
 - * 조세감면건의서 기재부 제출('11.5월) 및 협의(6월~)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 지속 추진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수협 상시감시시스템* 자체감시기능 추가 등 관리 강화
 - * 부정유통 발생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면세유 공급과정을 실시간으로 전산 모니터링('10.4월부터)
- 전자어업허가증에 유류공급카드 기능 연계
- 조업사실 확인을 해양경비안전망과 연계 추진
- 면세유 연간소요한도량 산정방식 개선 검토
- 어업인 및 면세유취급자 의식개혁 추진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유류공급사업요령(수협내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100% 면세가 되나, 2012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75%만 면세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과세로 전환될 예정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 ①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② 멸치 자숙·건조시설, ③ 미역·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④ 오징어건조시설, ⑤ 새우 자숙·건조시설, ⑥ 패류 자숙시설, ⑦ 축제식양식어업용시설, ⑧ 육상해수양식어업용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⑨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 「낙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낙시어선업용 선박
-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실적

(단위: 천kl,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합 계	994	7,898	6,021	1,122	6,723	7,523	1,103	7,743	7,005
경 유	790	6,316	4,844	908	5,346	6,310	904	6,274	5,877
중 유	58	386	51	76	416	58	69	456	60
휘발유	131	1,022	1,093	129	798	1,134	122	850	1,048
기 타	14	174	33	10	163	22	9	162	19

어업용 면세유 사용현황('10년 기준)

(단위: kl, %)

계	경유	휘발유	중유	등유	윤활유
1,103,353 (100.0)	904,007 (81.9)	122,476 (11.1)	69,267 (6.3)	54 (0.00005)	7,549 (0.7)

* 분야별 공급량 : 연근해어선(74.8%), 양식장 관리선(19.4%), 김건조 시설 등 수산물 건조장(3.1%), 기타(2.7%)

유종별 세제 현황('11.8월 기준)

구분	경유	휘발유	중유	등유	LPG	어업용유류
석유수입부과금	16원/ℓ				-	부과
관세	원유가격의 3%				수입가의 2%	과세
소계	528.75원/ℓ	745.89원/ℓ	19.55원/ℓ	103.5원/ℓ	20원/kg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ℓ	529원/ℓ	-	-	-	면세
개별소비세	-	-	17원/ℓ	90원/ℓ	20원/kg	면세
교육세	56.25원/ℓ (교통세의15%)	79.35원/ℓ (교통세의15%)	2.55원/ℓ (개소세의15%)	13.5원/ℓ (개소세의15%)	-	면세
주행세	97.50원/ℓ (교통세의26%)	137.54원/ℓ (교통세의26%)	-	-	-	면세
부가가치세	제세포함 공급가격의 10%					면세

시중가격 대비 어업용 면세유 가격비교('11.4월 기준)

(단위: 원/ℓ, kg)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고유황	저유황			
시중가격(A)	1,951	1,784	1,793	1,353	1,027	1,444
공급가격(B)	946	982	1,020	1,061	894	1,177
B/A(%)	48.5	55.0	56.9	78.4	87.0	81.5

* 시중가격은 유종에 따라 월 평균 주유소가격 또는 대리점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2-6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소득 증대와 웰빙 문화 확산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 증가
 - 고령화, 비만, 성인병의 사회 문제화 등으로 수산식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식품 시장규모도 지속 성장 전망
 - *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2007년 17.4Kg → 2030년 20Kg으로 증가 전망
 - * 국내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2007년 55.0Kg → 완만하게 증가 전망

- 수산물 소비 행태는 고급화, 간편화 등으로 변화
 -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고급화 및 가공기술의 고도화, 현대화 등을 통한 간편 수산식품 요구 증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산물 가공·식품산업의 수준은 영세
 - 수산물 가공산업체들은 영세형, 중소기업형, 고원료비 구조형 이면서, 지역 밀착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GDP 대비 어업부가가치 비중은 감소,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정체
 - * GDP 대비 어업부가가치 비중 (%) : ('99) 0.45 → ('02) 0.32 → ('09) 0.31 → ('10P) 0.22
 - * 가공품 생산규모(천톤) : ('03)1,358 → ('06)1,547 → ('09)1,898 → ('10)1,847

- 수산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현 정부(실용정부)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부응하고 “돈버는 수산업 만들기”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대책 수립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방향 제시 등



나 추진실적

- 지역별로 수산식품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센터, 가공·유통시설이 집결된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 식품산업단지조성에 의한 우수기업 유치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
 - * ('08) 1개소/15억원 → ('09) 6/94 → ('11) 7개소(계속 포함)/144

- 수산물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수산물 가공시설을 고차가공, 기능성식품 생산시설로 육성
 - 수산물을 단순 음식에서 의약품 원료와 건강 보조식품으로 개발하여 고수익 창출
 - * 지원실적 및 계획(개소/억원) : ('92-'10) 302/1,275 → ('11) 115/261
 - 수산물가공업체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 * ('10) 296억원 → ('11) 266억원 (수산발전기금, 융자)

다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특수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및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참고자료

수산물 가공시설 관련 예산 현황

1. 예산 총괄

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광특)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73	27,896	115	26,138	63	25,855
수산물산지가공시설	68	20,505	106	22,138	54	14,705
- 광역	58	16,705	98	19,838	51	13,255
- 제주	10	3,800	8	2,300	3	1,450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	1,500	6	2,100	7	6,500
- 광역	1	1,500	6	2,100	6	5,650
- 제주	-	-	-	-	1	850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1	250	3	1,900	2	4,650
젓갈타운조성	3	5,641				

-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국고 50%, 지방비 50%

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광특) (국고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10년 까지	'11예산 (A)	'12예산(안)
	총 사업비	국고지원액 (50%)			
총 계	171,944	85,972	20,015	14,360	16,750
군산 ('12~'13)	19,500	9,750	-	-	300
여수 ('09~'12)	29,000	14,500	3,984	2,000	5,000
영덕 ('11~'13)	25,000	12,500	-	250	4,500
부안 ('09~'12)	9,900	4,950	1,500	1,000	2,450
고창 ('10~'12)	15,000	7,500	250	1,760	1,000
영광 ('09~'12)	10,000	5,000	1,500	1,000	1,500
포항 ('09~'13)	38,000	19,000	5,359	3,000	2,000
부산 ('09~'10)	3,300	1,650	1,650	-	-
목포 ('08~'11)	22,244	11,122	5,772	5,350	-

다. 가공시설 개선 및 운영지원(수발기금)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111	29,600	102	26,640	100	23,976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32	14,100	3	2,025		
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79	15,500	99	24,615	100	23,976



2. 지역별 예산 현황

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광역발전계정>

지역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58	16,705	98	19,838	51	13,255
부산시	2	800	5	1,020	2	565
기장군	2	800	1	420		
서 구	-	-	1	150		
영도구	-	-	1	200		
사하구	-	-	1	200	1	65
금정구	-	-	1	50		
강서구	-	-	-	-	1	500
인천시	1	150	1	130	-	-
강화군	1	150	1	130		
울산시					1	250
북구					1	250
경기도	4	1,675			3	1,930
안산시	1	200			2	1,480
화성시	3	1,475			-	-
평택시	-	-			1	450
강원도	7	2,100	7	1,750	5	1,450
강릉시	-	-	1	250	1	300
속초시	6	1,800	4	1,200	3	900
양구군	-	-	1	150		
인제군	-	-	1	150		
횡성군	1	300				
고성군	-	-	-	-	1	250
충남도	3	1,050	13	3,388	14	2,060
서천군	-	-	4	1,100	1	200
홍성군	1	250	2	400	6	1,200
보령시	1	360	3	750	1	450
태안군	1	440	2	900	-	-
서산군			1	148	-	-
당진군			1	90	1	350
아산시					1	400

지역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전북도	4	1,240	1	300	2	900
군산시	2	580	1	300	1	400
고창군	1	360			-	-
부안군	-	-			1	500
정읍시	1	300			-	-
전남도	20	6,120	42	8,050	16	4,000
목포시			1	450	-	-
여수시	3	1,050	6	1,350	2	600
고흥군	2	600	7	1,800	2	600
장흥군	2	800	13	500	1	450
강진군	2	700	1	100	2	600
해남군	5	700	2	500	1	150
무안군	1	450	2	550	1	400
영광군	1	600	5	900	1	300
진도군			2	1,100	4	400
신안군	1	320	1	300	1	250
완도군	3	900	2	500	1	250
경북도	7	2,080	3	800	3	450
포항시	5	580	2	400	1	150
영덕군	2	1,500	1	400	1	150
울진군					1	150
경남도	10	1,490	26	4,400	14	2,060
창원시	-	-	1	200	1	100
사천시	8	1,150	15	2,350	6	1,200
통영시	1	180	1	250	1	400
거제시	-	-	1	250	1	100
고성군	1	160	1	150	3	140
남해군	-	-	7	1,200	2	12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역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10	3,800	8	2,300	3	1,450
제주도	10	3,800	8	2,300	3	1,450
제주도	10	3,800	8	2,300	3	1,450



나.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광역발전계정>

지역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1	1,500	6	2,100	6	5,650
인천시					1	250
옹진군					1	250
강원도	1	1,500	2	400	2	2,600
삼척시	1	1,500				
동해시			1	200	1	1,300
고성군			1	200	1	1,300
충남도			1	200	1	1,300
보령시			1	200	1	1,300
태안군						
전남도			1	200	2	1,500
강진군					1	200
신안군			1	200	1	1,300
경북도			1	300		
영덕군			1	300		
경남도			1	1,000		
마산시			1	1,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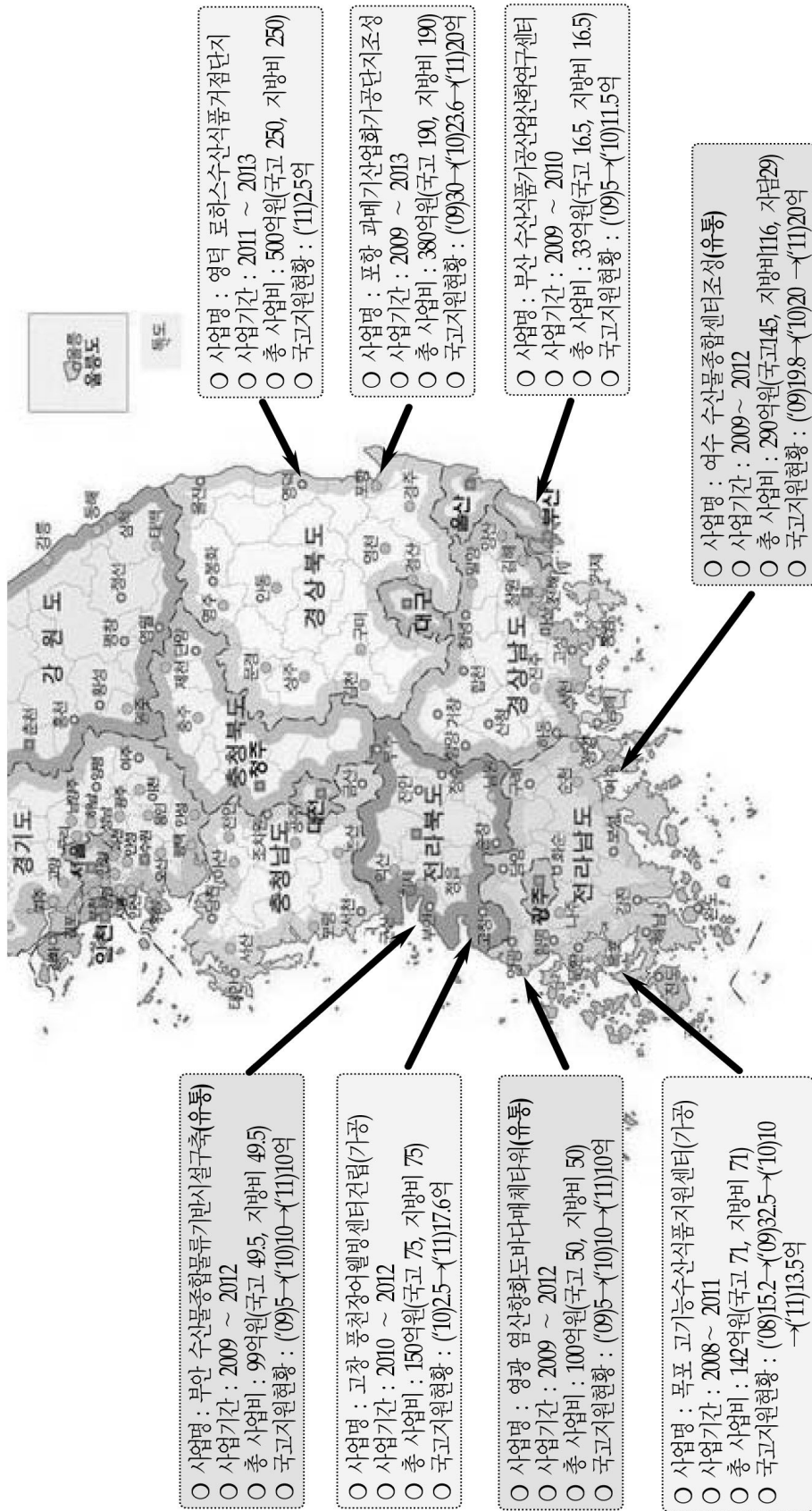
지역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	-	-	-	1	850
제주도	-	-	-	-	1	850
제주도	-	-	-	-	1	850

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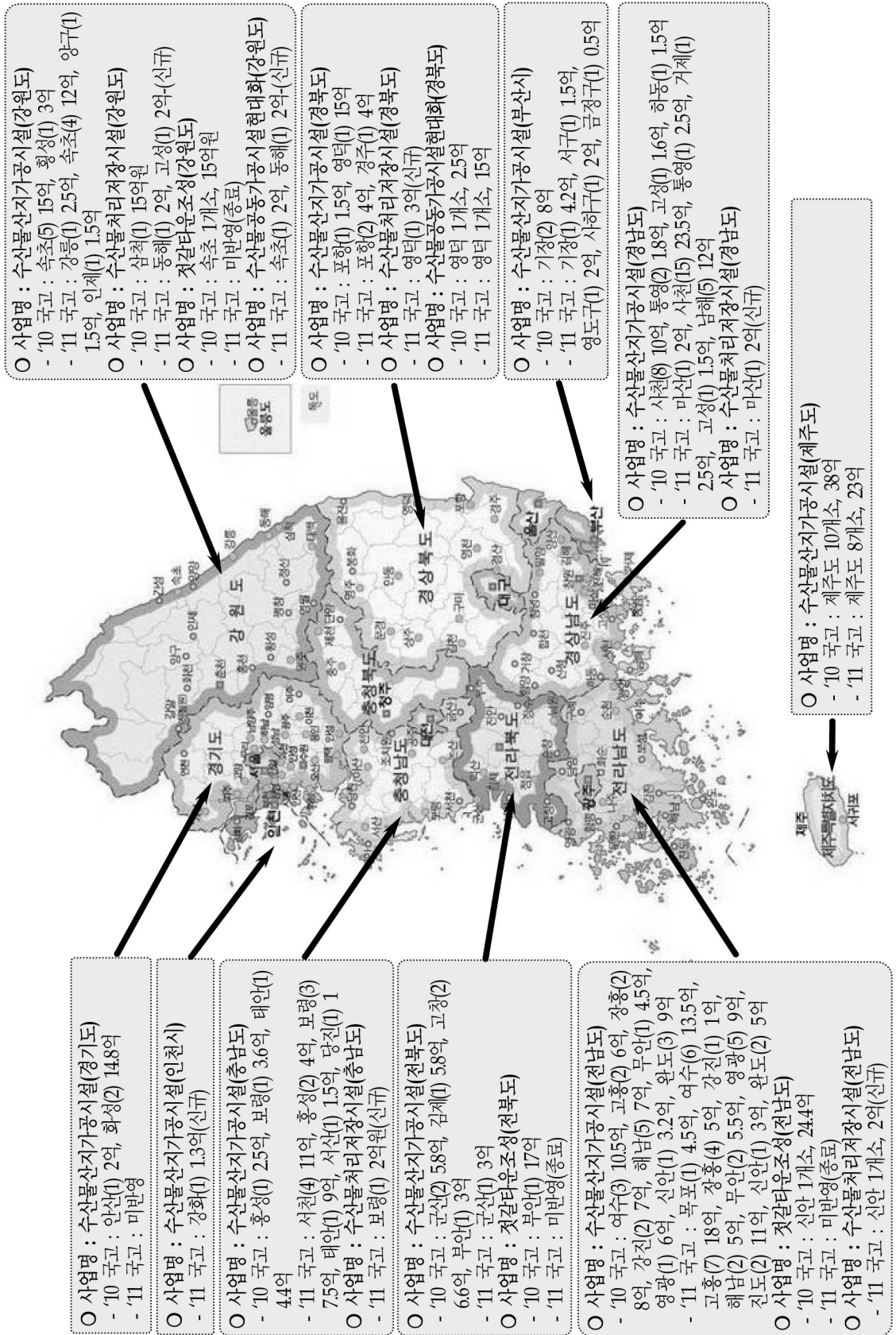
<광역발전계정>

지역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1	250	3	1,900	2	4,650
강원도			2	400	1	400
속초시			1	300	-	-
동해시			1	100	1	400
경상북도	1	250	1	1,500	1	4,250
영덕군	1	250	1	1,500	1	4,250

지역별 거점단지조성사업 지원 현황



지역별 가공산업육성사업 국고지원 현황



2-7

수산물·수산특산물·전통식품 인증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소득 증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수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93년부터 추진
 -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品”자 또는 “물레방아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과 공정 거래 도모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 수산물품질인증(78개 품목) : 상품화할 경우 일반 수산물과 비교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순가공 수산물로 마른오징어, 간미역 등
 -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11개 품목) :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수산물로 조미쥐치포 등
 -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47개 품목) :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수산 식품과 고전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수산물로 오징어젓 등
- 그동안 품질인증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증대로 수산물 품질인증품 매출이 증대되는 등 효과 가시화
 - 품질인증업체 수 : ('08) 196 → ('09) 217 → ('10) 205 → ('11.9) 211
 - 품질인증품 출하량(천톤) : ('08) 9.1 → ('09) 11.1 → ('10) 12.8 → ('11.9) 7.6
- 다만, 유사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등 개선 필요
 - 그러나, 국내산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 HACCP 시설 도입에 따른 비용조달, 낮은 소비자 인지도와 홍보 등에서 어려움
 - 유사한 수산물이라도 수산물·수산특산물·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로 구분되어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나 추진실적

- 품질인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홍보 실시
 - 품질인증품(시판품) 및 인증업체 조사를 통한 품질인증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 품질인증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통합 추진
 - 소비자 혼란 예방 등을 위해 인증공통표지(Logo) 도입 및 수산물 인증제도 통합 추진
 - *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 도입 추진 계획(안) 마련('11.7)

다 향후 추진계획

- 소비촉진을 위한 인증품의 관리 및 홍보 강화
 -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품질인증품(시판품) 및 인증업체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 인증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수산물품질인증품의 지원강화 등을 통한 국내 대표브랜드 육성
 - 품질인증품에 대해 HACCP 시설지원,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수 수산물 브랜드 육성
- 관련규정 정비 검토
 -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11.7.21)으로 '12.7.22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중장기적으로 수산물·수산특산물·수산전통식품으로 구별된 인증제도 통합 검토
 - * 농산물은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우수관리로 단일화

참고자료 1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 (LOGO) 도안

구분	인증제도명	표지(現)	변경(안)		비고 (인증제 개편 완료후)
			한글표시	영문표시	
친환경 인증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 친환경수산물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무항생제)				
	○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안전 인증	○ 우수농산물(GAP) 인증				
	○ 수산물 HACCP				
	○ 축산물 HACCP				



구분	인증제도명	표지(現)	변경(안)		비고 (인증제 개편 완료후)
			한글표시	영문표시	
품질 특성 인증	○ 수산물지리적표시				
	○ 농산물지리적표시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전통식품 품질인증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 식품명인지정				
	○ 수산전통식품 명인지정	-			

참고자료 2

수산물 · 수산특산물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추진

■ 추진배경

- 상품화할 경우 일반 수산물과 비교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순가공 수산물(수산물품질인증)
 - * 마른오징어, 간고등어, 횡감용 생굴 및 냉동갈치 등 78개 품목 지정
-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
 - * 조미쥐치포, 조미오징어,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등 11개 품목
-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수산 식품과 고전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수산물(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 * 명란젓, 꽃게장, 조미김, 굴죽, 굴비, 양념장어, 어간장 등 47개 품목

■ 법적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 도입효과

-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국가가 인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수산식품의 이미지 제고로 소비촉진 기대
 - * 인증업체 수('11.9) : 211개 업체(수산물 112, 특산물 10, 전통식품 89)

■ 향후 추진계획

- 인증제품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등 사후관리 지속 강화
- 유통·판매중인 인증제품 안전성 검사
- 인증제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 홍보



품질인증 대상품목(136개 품목)

수산물(78개 품목)

제품별	품목명
건제품(15)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콩치과메기, 마른뱅어포, 덜마른한치
염장품(3)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9)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찢돔, 마른김(자반용)
횟감용수산물(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냉장품(13)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쟁이, 생굴, 홍어, 병어, 전어 • 냉동품(10) : 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홍어, 병어, 키조개(개아지살)
냉동수산물(28)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콩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각육), 붉은대게살(자숙, 봉육)

수산특산물(11개 품목)

제품별	품목명
조미가공품(9)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조미오징어, 조미썰은오징어, 조미늘인오징어, 조미썰은취치포, 조미늘인취치포,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해조가공품(2)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수산전통식품(47개 품목)

분류	품목명
젓갈류(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갈(24)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뱀댕이, 자하, 가리비, 청어알, 우렁쟁이(명게), 갈치속, 한치, 전복 • 액젓(4)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 식해(2) : 가자미, 명태
죽류(6)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	꽃게, 민꽃게, 참게
건제품(2)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타(6)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2-8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하는 등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도입('08. 8. 4)
 - * 인증 대상품목(10품목)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툇,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 친환경농산물 :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등 27,733건('10년)
- 그러나,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조건에 노출되고,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증 저조
 - * 친환경수산물 인증 : ('09) 1 → ('10) 20 → ('11.9) 41건*(누계)
 - * 41건 : 김 11, 미역 10, 굴 8, 마른김 5, 간미역 3, 마른미역 3, 툇 1

나 추진실적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추진
 - 현행 15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15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
 - * '11. 3월 및 8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대상품목으로 5개 품목(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 조미김)이 심의통과 되어 관련 고시 개정('11.11.7)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품목 선정

다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 인증 대상품목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도모

참고자료

친환경수산물인증 제도

■ 추진 배경

-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하여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조건에 노출되고 있으며,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처리 과정이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및 대상품목 확대 필요

■ 법적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 추진 실적

- 친환경수산물 대상품목 및 인증현황('11. 9월)

	대상품목수	인증품목수	인증업체수	인증건수
계	10	7	38	41
수산물	7	4	30	30
수산가공품	3	3	8	11

- 품목별 및 지원별 인증 현황(41건)

	계	굴	김	미역	툫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합계	41	8	11	10	1	5	3	3
여수	15	7	-	4	-	-	2	2
목포	9	-	8	-	-	1	-	-
완도	16	-	3	6	1	4	1	1
평택	1	1	-	-	-	-	-	-

- 출하량(톤) : ('09) 없음 → ('10) 3,536 → ('11. 9) 18,668

2-9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01.1.29) 및 본격 시행('07.12.13)
- 수산물지리적 표시제 시행에 어려움 발생
 - 일정한 구역안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는 달리 이동성이 있고, 서식환경이 조류 이동 등으로 변화요인이 많아 지역간 특성을 입증하기 위해 등록을 위해 장기간 소요
 -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제1호 지리적표시 등록품인 “보성녹차”의 경우 '99년 지리적표시가 도입된 후 2년이 경과한 '01년 12월에 등록됨
 - 원료 생산지와 제품 가공지가 다를 경우(수입산 또는 원양산 등) 지리적 표시 대상품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논란
 - * '08.10 인제 용대리 황태 등 수입산을 활용한 지리적 표시 신청에 따른 부결

나 추진실적

-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1.10) : 11건(김,미역,다시마,전복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동일 품목에 대한 인접지역 통합신청 제도 도입
 - 자연 환경요인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 시·군 신청시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검토
- 대상품목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수산물지리적표시분과위) 전문인력 확보



참고자료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도

■ 추진배경

- 개방화 시대 수입 수산물과의 품질 차별화로 수산물 경쟁력 제고
- 지리적 표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향상

■ 법적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1.6월말 현재)

등록번호	품목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대표자
제1호	꼬막	'09. 2. 25	보성별교꼬막	보성별교꼬막영어조합법인	김점곤
제2호	전복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김유신
제3호	미역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최광선
제4호	다시마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임익노
제5호	미역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김양춘
제6호	다시마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김양춘
제7호	키조개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문부환
제8호	김	'10. 8. 20	완도김	완도군김영어조합법인	황권칠
제9호	넙치	'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김명규
제10호	김	'11. 1. 18	장흥김	(사)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김길봉
제11호	매생이	'11. 5. 13	장흥매생이	(사)정남진장흥매생이생산자협의회	김삼봉

2-10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주로 함에 따라 생산이 불확실하며, 유통을 위한 다양한 장비 등 매체 필요
 - 선박, 양육항, 위판장, 활어차, 냉동저장고, 용수(얼음)등
 - 또한 살아있는 생물이거나 냉동품이 많아 부패·변질성 등으로 농업에 비해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유통경로도 다양(2~4단계)
 - * 전통적 경로 : 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시장→소매상→ 소비자(4단계)
 - * 유통업체 경로 : 생산자 → 유통업체 → 소비자 (2단계)
- 최근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형 유통업체, 산지직판장 전자 상거래 등 유통 채널 다양화 추세

나 추진실적

- e-비즈니스 시대에 적합한 사이버 수산시장 구축
 - 전자도매시장 및 인터넷수산시장 구축 지원
 - 전자도매시장('07 구축, 821개소), 인터넷수산시장('04년 구축, 159개소)
- 수산물 직거래 및 도매시장 현대화 시설 지원
 - 수산시장 시설 지원('07~'11) : 105개소 / 258억원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지원('07~'15) : 1개소 / 2,024억원
 -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63~'11) : 192개소 / 675억원
- 수산물 유통 정보화시스템 보장 및 운영
 -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월 2회 수급통계, 가격동향 분석 보고
 - 관리대상 : 7개품목(고등어, 오징어, 명태, 조기, 갈치, 멸치, 삼치)
- 수산물 유통환경 경쟁력 강화 등 연구용역 추진('11. 10월)
 - 용역기관 : KMI(35백만원)
 -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도입 실행방안 수립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e-비즈니스 시대에 부응한 수산물의 사이버 거래확대
 - 수협중앙회에 구축('07.1)된 전자도매시장(B2B)의 대국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거래대상 및 품목 다양화를 통한 직거래 확대 추진 (정부비축 B2B방출 확대 등)
 - * '10년도 누적 거래실적 : 821여개 수산업체, 1,225억원 거래
- 수산물 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통통계 확립
 - 정부차원(농식품부 주관)에서 수산물 유통통계 확립
 - 수협중앙회, 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 KMI, 유통관련 업체 참여
 - * 일본은 수산물 유통 통계(정부승인)를 통해 정책 도입
- 수산물 표준 규격화 추진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어상자) 검사 관련 고시 정비

< 중장기 계획 >

-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 공급망 구축
 - 기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노후시설 보강
 - 소비지 도매시장 및 산지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07~'15년까지 완료)
- 수산물 가공 거점단지조성으로 유통혁신 도모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인터넷수산물시장(fishsale) 현황

■ 사업목적

- 인터넷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 어업인 수산물거래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통해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 직거래시스템을 통한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어가소득 증대

■ 사업내용

- 개설일 : '04. 4. 26
- 사업비('10년까지) : 2,317백만원 (시스템구축 767, 운영비 1,550)
- 운영자 : (사)한국수산물협회
- 참여업체 : 159개 어가
 - ['03~'06년 508개, '06년 8개, '07년 11개, '08년 2개, '09년 8개, '10년* 15(-369)]
 * 어가 폐업, 운영실적 저조 등 경쟁력 있는 업체만 선별하여 정비

구분	계	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 충청	전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남 부산/울산	제주
계	159	18	9	12	6	14	52	31	17
'03-'06년	508	50	30	63	23	59	122	106	55
'07년	11	-1	2	-	-	2	6	3(-1)	-
'08년	2	-	-	1	-	-	1	-1	1
'09년	-8	6(-3)	3(-2)	2(-7)	1	2(-3)	8(-6)	2(-8)	-3
'10년	15(-369)	2(-36)	2(-26)	-47	-18	2(-48)	6(-85)	-70	3(-39)

○ 운영실적

구분	'04	'05	'06	'07	'08	'09	'10
매출액(백만원)	250	520	762	942	1,068	1,291	1,520
주문수(건)	5,818	9,854	13,741	14,385	22,393	36,438	44,985
회원수(명)	2,638	4,852	10,403	13,179	14,904	17,074	19,113
방문자(천명)	129	220	260	187	185	257	339



■ 주요추진 사업

- 쇼핑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장비(서버, 방화벽 등)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DB관리 등
- 홍보·광고 및 판촉마케팅 추진
 - 온라인광고(포털사이트, 파워블로그 등) 및 판로개척 확대 추진
 - 유명 쇼핑몰과의 판매연계를 통한 매출증대 추진
 - 피쉬세일 네이버카페 개설 작업 추진 등
- 참여 어가 교육 및 현장실사 점검 추진
 - 참여 어가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고객맞춤 서비스(품질, 가격, 배송, 불만처리 등) 중점 교육
- 쇼핑몰 고객관리 및 업체관리, 신규상품 발굴 등 마케팅 추진
- 기타 쇼핑몰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원 및 운영
 - 업체상품촬영, 상품상세페이지 무료제작
 - 할인·특가행사 지원 및 판촉 아이디어 기획 추진
 - 고객불만(클레임)처리 및 고객관리 지원(콜센터 운영) 등
 - 기타 판촉지원(회원대상 주 2회 상품홍보 이메일 발송 등)

참고자료

전자도매시장(B2B) 현황

정의

- 수산물 유통 및 가공법인, 중도매인(법인) 등 수산물 거래 주체들이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수산물 전자도매시장을 말함

추진배경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및 WTO, FTA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수산물 도매유통 패러다임 도입 필요성 증가
- 위판장, 유통·가공기업 등이 수산물, 수산관련 물품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기여

누적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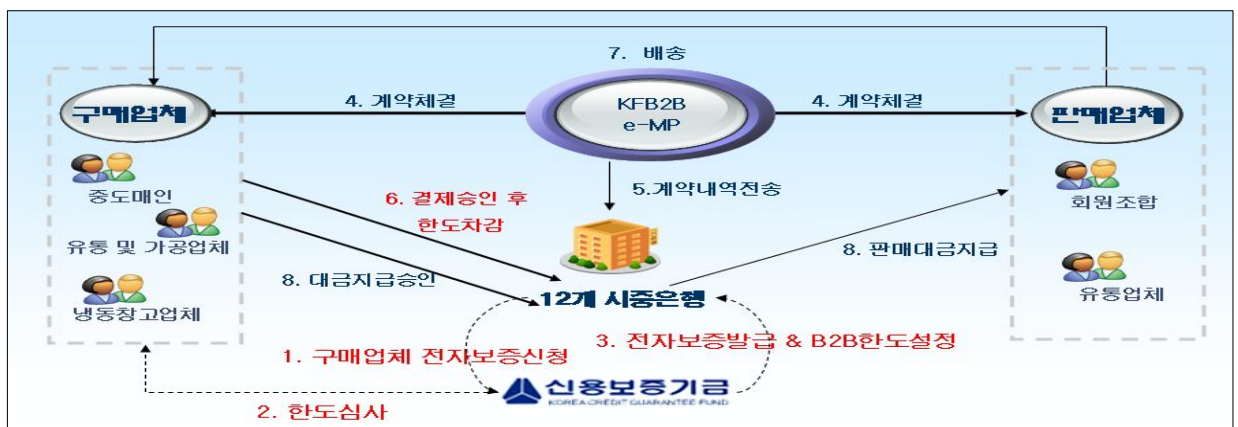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회원사 수	신보보증금액	거래금액	비고
'06	175	160	14,278	오픈 전 거래
'07	314	3,162	32,820	
'08	419	8,637	54,975	
'09	584	13,407	82,605	
'10	821	20,454	122,502	

기대효과

- 어업인의 수산물 판로확보 및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수산물 가격 안정
- 전자도매시장(B2B) 확대를 통한 비 제도권 수산물 유통물량 제도권 전환
- 직거래 확대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

【B2B전자도매시장 거래절차도】





수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 기반마련

■ 추진경위

-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 근거마련
 - '07.1.3 농안법 제35조 및 '07.7.6 농안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신설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거래 물량에 대해 도매시장내 반입의무를 면제
 - *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 시행은 해당법인의 재량사항임
-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고시('07.12.28)
 - * 농림부(제2007-84호), 해양수산부(제2007-146호) 공동으로 제정고시

■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및 표준정산서를 표준화(전자코드)하여 사용
- 시장사용료를 거래금액의 3/1,000이내(일반은 5/1,000이내)
 - 위탁수수료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최고한도(60/1,000) 이내
- 기타 전자문서의 관리, 이용자 보호, 분쟁조정 등을 규정

■ 추진계획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행중인 농업부문의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운영 내용 자문
 - * 청과부류의 경우, 가락동시장, 대전오정동시장 등 19개 도매시장, 30개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서 시스템 구축 운용 중
 - * 수산의 경우, 선도유지, 품질보증, 규격화 및 검수 등의 문제로 시스템 미구축

2-11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식용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화
 - * 수입산('94) → 국내산('95) → 국내산 활어('02) → 수입산 활어('04) → 수입산 자라, 레토르트식품('07), 식염('10)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 농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07년 도입·추진 중이나, 수산물은 전무한 실정
- FTA확대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수입수산물이 증가추세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허위표시 단속의 한계 초래

나 추진실적

■ 현장 지도단속 활동

<2010년 실적>

- 약 7만개 조사대상 업소 중 20,328개소 단속 실시(29% 수준)
- 단속 회 수 : 4,046회, 단속연인원 : 9,157명
- 단속업소수 : 20,328개소
- 과태료 처분 : 1,002건
- 허위표시 적발 : 172건
 - ※ 위반율 : 5.8%(전년 6.7%)

- 원산지표시 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 및 전담요원 지정·운영으로 상시 지도·단속 및 유관기관간 공조수사 체계 구축
 - *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거짓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경각심 제고



- 명예감시원(422명) 활동 강화를 통한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전국일제조사(설명절, 추석명절)
 - 방법 : 수산물명예감시원 2인1조로 수산물 판매현장 방문조사
 - 조사 횟수 / 업소수 : 1,954회 / 2,052개소
 - ※ 원산지표시 정착단계인 백화점·대형할인매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조사결과 : 이행업체 개소(66.2%), 불이행업체 개소(33.8%)
 - ※ 품목별 원산지표시 이행율 80%이상인 업체는 이행, 미만은 불이행으로 분류
- 교육 및 홍보실적
 - 교육실적
 - 소비자, 유통종사자, 명예감시원 등 원산지 표시 관계자(227회 3,786명)
 - 서울시 등 전국 10개 지역의 관련업체, 공무원 대상으로 통합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순회 교육(10회 2,000명)
 - 홍보실적
 - 원산지 표시 풋말 제작·배포(11만개, 1월)
 - 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10만부, 10월)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보도자료 배포(2회, 2월, 9월)
 - 국산수산물과 수입수산물 판별법 전시회 참가(1회, 9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KBS-2TV, CBS라디오, 경인일보 옥외전광판, 수산전문지 등 언론 홍보(3,259회, 12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추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0.2.4) 제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행('10.8.5)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통신판매의 범위 설정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 우편·전기통신, 광고물·전단지 등을 통신판매 범위로 함

- 원산지 허위 표시자에 대한 처분·공표 근거 규정 마련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 농관원에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공동단속권한 부여
 -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 인력부족에 따른 총리실 개선방안 수용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통합고시(2개) 제정('10.8.3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및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 지방 이양 등
 - 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 및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령 '11년도 개정('11.7.21)
 - 시행('12.7.22) 전 시·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에 수산물명예감시원 위촉업무 이양 등 사전 설명
- 유관기관과 지도·단속 공조체제 구축 및 합동단속 실시(9~11월)
 - 농림수산물식품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협의회 구성
 - 추석, 김장철 수산물 수요가 많은 기간에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 기관, 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다 향후 추진계획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10.10) 및 시행('12.4.11)
 - 적용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적용대상 :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율 제고 및 이력제 활성화 계획 수립(12월까지)
 - 수산물 이력제 12개 품목중 일반 국민이 선호하는 4개 품목(전복, 넙치, 굴비, 굴) 대형유통업소 이력제 추진 유도 등 집중관리
 - 수입품 유통이력제 품목 확대를 위한 관세청과 협의(계속)

- 원산지 표시 이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상시 단속체계 구축
 - 지자체 단속공무원 연찬회·교육 및 평가시스템 도입(12월까지)
 - 농수산물 지도단속공무원 합동 연찬회 개최
 - 원산지 표시율 제고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지자체 평가 시스템 마련

참고자료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현황

1 원산지의 의미

-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

2 원산지 제도의 목적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함

3 원산지 표시제도 법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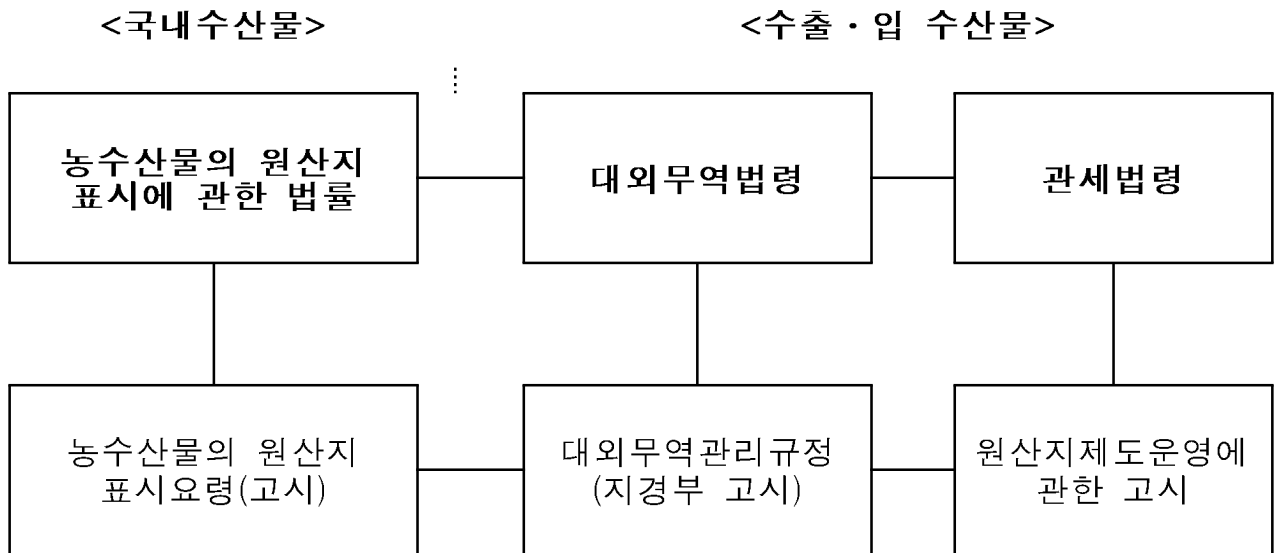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출·입 물품 이외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거래되는 물품까지를 포괄하여 상세한 원산지표시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고시) : 수산물의 원산지 세부표시방법, 세부판정기준을 정함
- 대외무역법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원산지 판정, 표시방법, 위반시의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
 - ※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 고시)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 세부표시 방법,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
 -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함(시행령 제52조)



■ 관세법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시중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상태 확인, 원산지 허위 또는 부정적 표시에 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규정
 -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과 관세법령의 원산지 관련사항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도 〉



4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추진경과

-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법률 제4527호, '92.12.8)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근거 신설('93.7.1부터 시행)
 - 활어, 비식용을 제외한 수입수산물(신선·냉장품, 냉동품, 피레트, 건조·염장품,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산물조제품)
 - 수입 활어 원산지표시대상 추가 고시('04.6.30)
 - 수입 자라 원산지표시대상 추가 고시('07.3.5)
 - 소금(식염) 원산지표시대상 추가 고시('11.2.11부터 시행)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93.6.11)
 -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유통 원산지표시요령 제정(농수산부고시) : '94.1.1시행
 -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제정(해수부고시) : '97.5.26
 - 국산수산물중 “원양어획물” 원산지표시방법 신설 : '94.10.13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법률 제6399호, 2001.1.29) : '01.9.1 시행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개정(고시) : '02.1.10
 - 국내 활어 원산지표시대상 지정 : '02.7.1시행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개정 : '04.7.16
 - 수입 활어 원산지표시방법 등 신설 : '04.9.1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22호, 2010.2.4) : '10.8.4 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10.8.31

⇨ 현재 모든 식용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산지표시대상품목 별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23214호, 2011.10.10)
 - 6개 품종(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시행(2012.4.11 시행)

5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5-1. 원산지 표시기준(시행령 제5조)

- ① 국산 수산물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포획·채취한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을 표시할 수 있음

예) 고등어 : 국산, 갈치 : 연근해산, 갈치 : 제주도, 김 : 완도군

②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
- 「원양산」 표시와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을 표시
예) 참치 : 원양산, 참다랑어 : 원양산(태평양)

③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 국산 수산물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 또는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
- 국산 수산물과 그 외의 수산물 혼합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 및 혼합비율 표시

④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 혼합비율이 높은 2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

⑤ 수산물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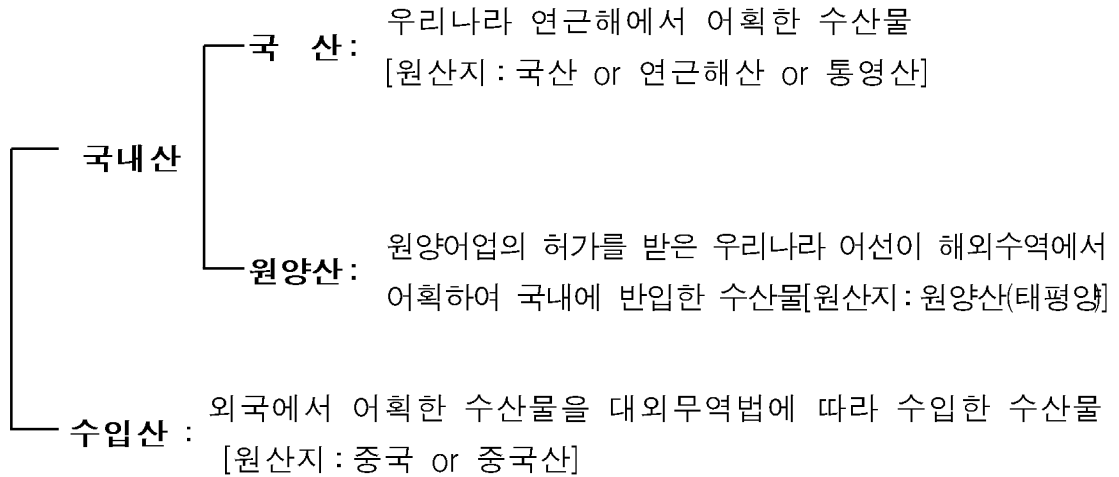
-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 원료 표시
(다만,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1가지 표시가능)
-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국 3개국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이내 연평국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 가능

⑥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 혼합 사용 시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 및 혼합 비율 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5-2. 표시방법(시행규칙 제3조)

① 수산물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영자 또는 한자를 추가 표시 가능
 - 포장 표면적 3,000cm² 이상: 20포인트 이상, 50cm² 이상: 12 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포장재의 바탕색 등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직접 인쇄 원칙, 잉크·각인·소인, 스티커, 라벨지 등으로 표시
 - 그물망 포장 또는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표시
 - 법정 크기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살아있는 수산물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풋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예1) 국산과 수입산의 어종이 다른 경우에는 국산과 수입산 구획하지 않고 한 수족관에 보관하며 원산지 표시 가능

예2) 국산과 수입산의 어종이 같은 경우에는 수족관을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획하여 각각 원산지를 표시

② 수산가공품

— <수산가공품의 정의(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

-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2차이상 가공한 제품
-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함양보다 많은 가공품

— <가공품의 정의(식품공전 제1.2.29)> —

-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 한글로 하되, 필요 시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가능
- 포장 표면적 3,000cm² 이상: 20포인트 이상, 50cm² 이상: 12 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포장재의 바탕색 등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직접 인쇄 원칙, 잉크·각인·소인, 스티커, 라벨지 등으로 표시
- 그물망 포장 또는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표시
 - 법정 크기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③ 통신판매 수산물
 -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글로 하되, 필요 시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가능
 - 문자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말로 표시
 - 글자표시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크기·색깔로 표시
 - 말표시 :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 설명과 같이 표시
 - 전자매체 이용 시 표시방법
 -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같거나 큰 글자로 표시하여 한다.
 -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인쇄매체 이용 시 표시방법
 -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이용 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면적 (3,000cm² 이상: 20포인트 이상, 50cm² 이상: 12 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 8포인트 이상)에 따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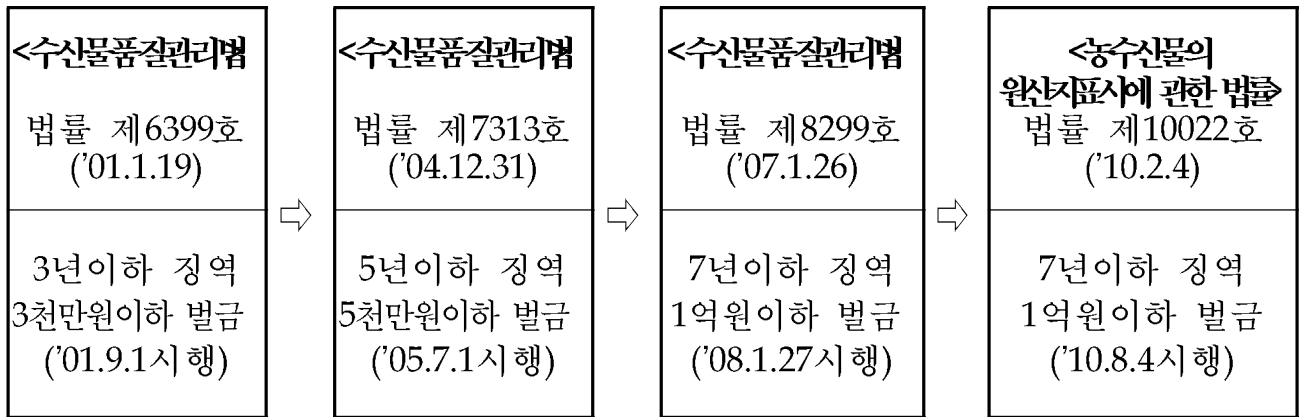
6-1. 과태료 부과(행정처벌)

- 과태료 부과대상(시행령 제10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부과금액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위반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 판매가격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을 부과
 -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
 -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자는 원산지 미표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1/2을 부과
 - 가공품의 미표시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2차 이상 위반으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6-2. 형사처벌

- 처벌대상(법 제6조제1항 위반)
 -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위장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 처벌내용 : 형사입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원산지허위표시 처벌규정 강화경과>



7 '10 ~ 11년도 단속실적(수산물안전부)

■ 2010년도 단속실적

- 설대비 특별단속 실시(230회, 1,078명) : '10.1.25~2.12
 - 위반실적 : 총 229건, 1,302백만원(미표시 202건, 허위표시 27건)
- 추석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212회, 2,217명) : '10.8.30~9.20
 - 위반실적 : 총 167건, 26백만원(미표시 137, 허위표시 30건)

■ 2011년도 단속실적

- 설대비 특별단속 실시(217회, 2,204명) : '10.1.17~2.7
 - 위반실적 : 총 205건, 83백만원(미표시 162건, 허위표시 43건)



[별첨]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구 분	품 목
해면어류 (108)	큰가시고기,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고등어류, 까나리, 꼬치고기류, 곶치, 꼼치류, 쫄치, 게르치류, 날치류, 넙치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바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도루묵, 도치류, 돔류, 망둑어류, 매통이류, 멸치류, 민어류, 민태류,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병어류, 뱀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불락류, 참치(메기)류, 베도라치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치류, 서대류, 성대류, 송어류, 아귀류, 양미리, 양태(장대)류, 연어류, 검정우럭류, 장갱이류, 장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준치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촉수류, 갈치꼬리과어류, 학공치류, 독중개과어류, 홍어류, 개복치류, 독가시치, 동갈양태, 동미리류, 등가시치류, 만새기류, 배불뚝치, 바다빙어류, 새다래류, 셋멸, 황줄감정어류, 날새기, 통구멍류, 꼬리치, 날개줄고기류, 노랑벤자리, 동강연치, 다동가리류, 대주동치, 대치류, 물꽃치, 물수배기류, 바닥가시치, 부치류, 선홍치, 썬벵이류, 압치, 엘통이, 은비늘치, 점매가리, 주걱치류, 주둥치류, 학치, 홍메치, 활치, 나비고기류, 독중개류, 미올비늘치, 셋비늘치류, 날개멸, 물멸, 색줄멸류, 청황문절류, 여을멸, 줄벤자리, 실치, 바라문디, 기타해면어류
내수면어류 (20)	가물치류, 툴리피아, 메기류, 기름중개류어류, 동자개류, 장어류, 붕어류, 바다빙어류, 산천어, 송어류, 꺾지류, 열목어, 드렁허리, 잉어류, 동사리, 등목어, 버들치, 송사리, 흑연, 기타내수면어류
해면갑각류 (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해면갑각류
내수면갑각류(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내수면갑각류
해면패류 (12)	가리비류, 고둥류, 꼬막류, 굴류, 맛조개류, 바지락류, 전복류, 기타조개류, 홍합류, 우렁이류, 피조개류, 기타해면패류
내수면패류(5)	재첩류, 다슬기류, 대칭이류, 논우렁이류, 기타내수면패류
해면연체류(8)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오징어류, 문어류, 화살오징어류, 낙지, 주꾸미, 기타해면연체류

구 분	품 목
해조류(19)	김류, 꼬시래기, 다시마류, 도박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우뚝가사리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진두발, 청각, 석묵류, 갈래곰보, 돌가사리, 벗붙은잎, 옥덩굴, 세모가사리, 기타해조류
해면기타(8)	개불, 고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 해삼, 해파리, 기타해면기타
내수면 과충류(1)	자라
식염(2)	천일염, 정제소금

※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HS 4단위, 19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구 분	분 류 내 용
제1류	산 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5류	소금

HS번호	품 목
0106	기타의 산 동물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301	활어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HS번호	품 목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305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는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0511	다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6	다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수산물 가공품 : 37품목

○ 「식품위생법」 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의 정의 품목에 따름

구 분	품 목
어육가공품(6)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1)	묵류
다류(3)	침출차, 액상차, 고품차
음료류(2)	기타음료(추출음료, 음료베이스)
젓갈류(5)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1)	수산물조림
건포류(1)	조미건어포류
식 염(4)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기타식품류(5)	조미김, 튀김식품, 추출가공식품, 생식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장기보존식품(3)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수산물가공품(4)	훈제품, 어간장, 한천, 해조류조미품,



기관별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제

소관부처	제도명	위임·위탁기관	추진근거
농식품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포함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5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의5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5조,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의2
	쇠고기 이력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등급판정 및 지도단속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법 제35조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제	-	관세법 240조의2 및 3
	수출입품 원산지 표시제	지경부 위탁사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4항 6항
식약청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	식품위생법 제49조
시·도	유통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지경부 위임사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3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법률위임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8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13조의2

이력제 주요내용

구분	수산물 이력제	농산물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	식품 이력제
근거 법규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의2) ☞ 임의등록제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의5) ☞ 임의등록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의무제	식품위생법 (제49조) ☞ 임의등록제
최초 시행	'08. 8월	'06. 1월	'08.12월(사육단계) '09. 6월(유통단계)	'08.6월
적용 품목	모든 국산 수산물 (원양산 포함)	모든 국산 농산물	쇠고기 지육, 정육 등 (갈비 포함)	전체식품
적용 대상	수산물 생산·유통 또는 판매자 중 이 력추적관리를 희망 하여 등록한 자	농산물 생산·유통 또는 판매자 중 이력 추적관리를 희망하여 등록한 자	소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품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자중 이력 추적관리를 희망하여 등록한 자

수산물과 농산물 원산지 단속체계 비교

구 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6과), 1시험소, 9지원, 109출장소 ※ 본원 “원산지관리과(4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3과), 17검역검사소(사무소) ※ 본부 “원산지계(5급)” 운영
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4명(조사공무원증 소지자)
관 할 구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기관당 2개 자치단체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당 18개 자치단체 담당
단 속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 기동단속반 117명 ○ 시험연구소 : 6명 ○ 명예감시원 : 25,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법경찰관 133명 ※ 기동단속반 4명 ○ 시험연구소 : 없음 ○ 명예감시원 : 433명
업 무 수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단속업무만 전담 - 추곡수매 등 일부를 검사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수출입수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보완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
단 속 체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단속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관할구역을 매일 단속실시 * 경찰 등 요청시 합동단속 실시 ○ 성수기시 6회 이상 특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인력 부족으로 매월 6회 이상 단속실시 ○ 지자체와 합동단속(월 1회) ○ 명절 등 성수기에 4회 특별단속



2-12 수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소비촉진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비축을 통한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능 미흡
 - '79년부터 정부비축사업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수산물의 증가로 수급·가격안정기능이 미흡, 수발기금의 결손 증가
 - * 기금 결손율은 매년 30~40%내외 이나, '09년 13%, '10, 10% 결손율
-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소비확대가 미흡
 - 온라인을 통한 이달의 수산물 홍보, 인터넷 수산시장, 온라인도매시장 등을 통한 판매확대, 청소년들의 급식담당 교사 대상 교육 및 시식회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활동을 지속전개
 - * 남산 수산물사랑 걷기대회 행사, 이달의 수산물 홍보, 수산물수능밥상 요리책자 제작배포 등

나 추진실적

- 정부비축 효율성 제고 및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전개
 - 정부비축품목, 비축량 등에 대한 사전 심의로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비축심사위원회('07.6신설)" 심의 의무화 추진
 - * '09, '10년 등 정부비축심의회 매년 개최(1회씩), '11년도부터 상반기 개최
 - 정부비축사업(수매, 판매, 보관·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및 관리상태 점검 실시
 - * 정부비축실적 : ('07) 86억원 → ('08) 157 → ('09) 116 → ('10) 93
 - * 민간수매실적 : ('07) 1,339억원 → ('08) 1,365 → ('09) 1,318 → ('10) 1,104

- 정부비축심사자문위원회를 상반기 조기 개최하여 연중 비축 추진하고, 원양산 외 수입산 비축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10년도까지는 9월 이후 주 어획시기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비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어종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 '11년도부터 상반기 개최로 전환
 - '11년부터 연근해 및 원양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입산 비축 추진 제도화
 - * '11년 상반기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410톤 비축 및 추석물가안정용 방출
 - 비축대체어종으로 꽂치, 삼치, 조기를 선정, 주요 어종 수급불안시 대체어종을 통한 물가안정도모 제도화('11년도부터)

■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전개

-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홍보로 수산물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도모
 - * 수능 수험생 대상으로 “수산물 수능밥상” 요리레시피 제작·홍보
 - * 온라인 도매시장 및 인터넷수산시장 운영지원으로 판로 확대
 - * 남산 수산물걷기대회 등 수산단체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효과 고양

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비축 사업의 효율성 합리성 제고

- 정부비축사업의 수매, 판매, 보관·관리 등 각 단계별 집행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강구하고, 시장 및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하여 비축사업의 결손율 최소화

※ '11년 정부비축 계획('11.3.9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 결정)

구분	계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금액(억원)	182	55	80	30	17



■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을 통한 이달의 수산물 홍보 실시

- 기존 포스터 제작 배포 홍보방법에 추가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도 “제철 제맛 이달에 꼭 먹어야 할 수산물”을 홍보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 홍보 강화
-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의 수산물에 대한 영양과 요리방법 등 관련 정보 소개, '농식품부 밥상 지킴이'로 활동중인 주부블로거들의 여러가지 요리 소개

■ 수산관련 단체별 성격에 맞는 맞춤형 홍보 실시로 효과제고

-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지역의 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
 - * “수산물 브랜드 대전” 행사, “여성어업인 요리대회” 개최 등
- 한국수산회 : 도시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기능성 위주로 홍보
 - * 웰빙수산물 홍보강의(초중고 급식담당 영양교사 대상), 남산 수산물사랑 걷기대회 등
- 수협중앙회 : 회원수협 및 중앙회 공동브랜드 홍보, 수산물 지역축제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농촌정보문화센터 : 요리레시피 제작 및 온라인 홍보
 - * 수산물 수능밥상, 수산물 미인밥상 등

참고자료

정부비축 수매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3,881	14,486	12,428	27,752	4,507	8,587	4,838	12,319	2,677	6,477	3,654	7,758	4,428	12,500
김	108	1,560	-	-	-	-	-	-	-	-	-	-	-	-
오징어	745	2,118	2,783	5,208	3,851	7,751	2,793	7,722	326	2,458	-	-	1,773	5,000
- 연근해	745	2,118	1,695	3,790	3,145	5,553	2,584	5,072	191	503	-	-	-	-
- 원양산	-	-	1,088	1,418	569	448	-	-	-	-	-	-	-	-
- 건오징어	-	-	-	-	137	1,750	209	2,650	135	1,955	-	-	-	-
냉동고등어	2,028	4,175	1,030	2,606	656	836	1,215	3,346	2,010	5,973	-	-	1,047	3,000
- 연근해	2,028	4,175	1,030	2,606	656	836	1,215	3,346	2,010	5,973	-	-	1,047	3,000
- 수입산	-	-	-	-	-	-	-	-	-	-	-	-	-	-
냉동갈치	397	3,125	-	-	-	-	-	-	-	-	127	1,459	182	1,700
냉동명태	-	-	7,000	9,646	-	-	830	1,251	341	1,046	3,527	6,299	1,226	2,800
- 원양산	-	-	693	945	-	-	830	1,251	-	-	-	-	-	-
- 수입산	-	-	6,307	8,701	-	-	-	-	-	-	-	-	-	-
송 어	329	1,278	96	1,628	-	-	-	-	-	-	-	-	-	-
향 어	234	1,029	234	1,172	-	-	-	-	-	-	-	-	-	-
자 라	40	1,201	34	1,323	-	-	-	-	-	-	-	-	-	-
삼 치	-	-	685	894	-	-	-	-	-	-	-	-	-	-
넙 치	-	-	93	1,454	-	-	-	-	-	-	-	-	-	-
조피볼락	-	-	443	3,580	-	-	-	-	-	-	-	-	-	-
마른미역 (썰은미역)	-	-	30	240	-	-	-	-	-	-	-	-	-	-

※ 수매금액은 부대비를 제외한 물품 대금액 임

※ '11년은 부대비를 포함한 수매계획임(기금운용계획으로 전용한 57억원은 하반기 물량 금액 결정 예정)

민간수매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127,598	135,811	133,946	136,500	131,800	110,440	107,949
원료수매	107,630	106,694	104,638	106,944	103,268	90,011	88,614
유통보관	19,968	29,117	29,308	29,556	28,532	20,429	19,335



연도별 정부비축 품목 및 기금손실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매품목	수매액	기금손실액	%
'79~'80	김	2,593	200	
1981	김, 건멸치	2,700	238	
1982	김, 간미역, 건오징어	2,460	85	
1983	간미역	2,187	△715	
1984	김, 간미역, 건오징어	1,676	△511	
1985	김, 건멸치, 간미역, 건오징어	5,303	△1,203	
1986	김, 건멸치, 간미역	6,769	△1,373	
1987	건멸치,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2,102	△323	
1988	간미역, 냉동오징어	16,788	△3,151	
1989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수입조기	10,399	△2,250	
1990	김, 건멸치, 냉동오징어, 수입조기	14,721	△144	
1991	김,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10,155	△1,950	
1992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건오징어	24,969	△11,385	
1993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30,711	△12,263	
1994	김, 건멸치,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수입)갈치	30,941	△7,850	
1995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수입건멸치	58,007	△15,845	
1996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수입건멸치	75,024	△24,763	
1997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수입건멸치	48,244	△16,957	
1998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뽕치,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80,032	△23,184	
1999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원양오징어	46,858	△11,452	
2000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37,656	△11,315	30%
2001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원양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수입고등어	52,079	△15,649	30%
2002	김, 간미역, 냉동(수입)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수입)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냉동조피볼락	22,729	△3,046	13%
2003	김, 간미역,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수입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26,963	△7,886	29%
2004	김,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갈치	27,496	△10,031	37%
2005	김,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활어(송어, 향어, 자라)	42,162	△16,168	38%
2006	김,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삼치, 활어(넙치, 조피볼락)	25,005	△16,016	64%
2007	냉동오징어, 마른오징어, 냉동고등어	8,587	△3,517	25%
2008	냉동오징어, 마른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12,319	△6,114	30%
2009	냉동오징어, 마른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11,571	△2,102	13%
2010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9,319	△1,166	11%

< 2011 교부결정 내역(1,90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액			사업명	비고
	총계	보조금	자담		
합계	3,545.5	1,289.5	2,256		
어항협회(소계)	40	40		여성어업인 요리대회	
한국수산물협회(소계)	579	579			
	330	330	-	2011년 인터넷수산물시장운영사업	
	80	80	-	수산물 사랑 남산 걷기 대회	
	49	49	-	웰빙수산물 홍보강의	
	120	120	-	이달의수산물,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수협중앙회	2,786	530	2,256		
	425	180	245	국산수산물 브랜드 홍보	
	2,161	150	2,011	2011 지역수산물 축제 지원	
	200	200	-	2011 B2B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사업	
원양협회		70.5	-		
		40	-	원양선사 직거래 수산물 대전	
		30.5	-	원양산 브랜드 홍보	
농촌정보문화센터	40	40	-	「수산물 미인밥상 가이드북」	
유통가공협회	30	30		2011 어담채 홍보	

※ 민간경상보조(1,750백만원)

- 수급계 1,350백만원 중 1,289.5백만원 교부결정(3월) 유보 60.5백만원
- 신지명사십리축제 30백만원 8월 지원완료, **유보액 잔액 30.5백만원**
- 수산물브랜드대전(100백만원), 서울수산물식품전시회(200백만원), KS 규격제정(100백만원) 등 400백만원은 가공계에서 보조결정

※ 수용비(150백만원) : 내수면홍보(80백만원), FTA홍보(3백만원), 나머지(67백만원)는 유보

- 수산과학원 생명산업대전 참가 지원 10백만원, 유보액 잔액 56,978천원

< 수급계 담당 마사회자금 내역 >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주관과)	'11하반기	'12연도
II. 홍보사업		350	490
○ 국산수산물 브랜드 홍보 - 대표상품 광고, "바다사랑" 상품 개별 홍보비 지원	수협중앙회 (수산정책과)	50	100
○ 국산 수산물 해외홍보 - 시식 및 판촉행사, 요리강연회, 홍보 판촉물 설치 등	수협중앙회 (수산정책과)	-	90
○ 풍어수산물 한마당 축제 - 시식·판촉행사, 요리경연대회 등	한국어업포럼 (수산정책과)	50	50
○ "KFE 2011" 수산홍보관 설치·운영 - 수산홍보관 설치 및 운영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정책과)	250	250
III. 복지사업			50
○ 학교급식 수산물 조리법 개발 - 수산물조리법 개발·보급	수협중앙회 (수산정책과)	-	50
총계		350	540



'11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자	예산	사업명	비고
합계	2,250		
어항협회(소계)	290		
	40	여성어업인 요리대회	
	250	Korea Food Expo(수산전시관 운영)	마사회특별적립금
한국수산회(소계)	589		
	330	2011년 인터넷수산시장운영사업	
	80	수산물 사랑 남산 걷기 대회	
	49	웰빙수산물 홍보강의	
	120	이달의수산물,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10	연말 우리수산물 온라인 홍보	
수협중앙회(소계)	580		
	180	국산수산물 브랜드 홍보	
	150	2011 지역수산물 축제 지원	
	200	2011 B2B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사업	
	50	국산수산물 브랜드 홍보	마사회특별적립금
원양협회(소계)	70.5		
	40	원양선사 직거래 수산물 대전	
	30.5	원양산 브랜드 홍보	
농촌정보문화센터	40	「수산물 미인밥상 가이드북」	
유통기공협회(소계)	330		
	30	2011 어담채 홍보	
	100	수산물브랜드대전	
	200	서울수산식품전시회	
한국식품연구원	100	KS 규격제정 사업	
한수연	30	신지면 명사십리 우럭.광어축제	
추자도수협	10	추자도 참굴비 소비촉진 행사	
내수면향어양식협회	10	국내산 향어 소비촉진	
어업포럼	50	풍어수산 한마당 축제	마사회특별적립금
수산물안전부	57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화 제도 홍보	
수산과학원	10	생명산업대전	
내수면향어양식연합회	80	Korea Food Expo(내수면수산물 소비촉진)	
농식품부	33.5	FTA 홍보	

2-13 수산물 유통 및 시설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지 위판장의 소규모로서 수산물 물류기능 수행에 한계
 - 생산지 유통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위판장(200여개소)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위판기능만 수행할 뿐 수산물의 도·소매 및 물류기능 수행에는 한계
 - * 연간 1천톤 이하 취급 위판장이 41%, 거래액 1억 이하 3.9% 점유('10년 기준)
- 소비지 도매시장의 노후화로 기능저하 및 취급물량 담보상태
 - 시설노후 및 공간협소로 사용자와 이용객의 불편초래하고, 재래 유통형태가 고착되어 물동량 증대에 한계
 - * 도매시장 취급물량 : ('02) 379천톤 → ('08) 374 → ('09) 412 → ('10) 418
 - * '09년도 취급물량 증가요인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51천톤) 포함

나 추진실적

-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 지원
 - 어업인이 일시다확성인 수산물을 생산후 적기에 위탁판매처리 하고 어업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수산물 위판장 건립 지원
 - * 수산물위판장건립 :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3개소 5,170백만원
 -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출하 할 수 있는 수산물직매장시설 지원
 - * 수산물직매장시설 : 강원, 전남, 경남 3개소 1,200백만원
 - 산재되어 있는 수산물·젓갈류 등 영세수산물 유통업체의 집적화 및 직매장과 위판장이 복합된 물류유통센터 건립 지원



-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강원, 경북, 경남 3개소 1,900백만원
-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다기능 수산물 소비단지 조성
-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충남, 전북, 전남 3개소 2,964백만원
-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물류센터, 가공공장,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 * 전북일류화상품기지개발 : 전남 1개소 1,500백만원

■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유통환경 조성

- 노후화된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이익증진과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 * 소비지 도매시장 : 구리시장 1개소 1,299백만원
- * 산지 위판장 : 부산공동어시장 등 9개소 2,451백만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의 수급·공급 기능강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추진
-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물 유통환경의 물류시설 등 개선
- 노후화된 수산시장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품질을 제고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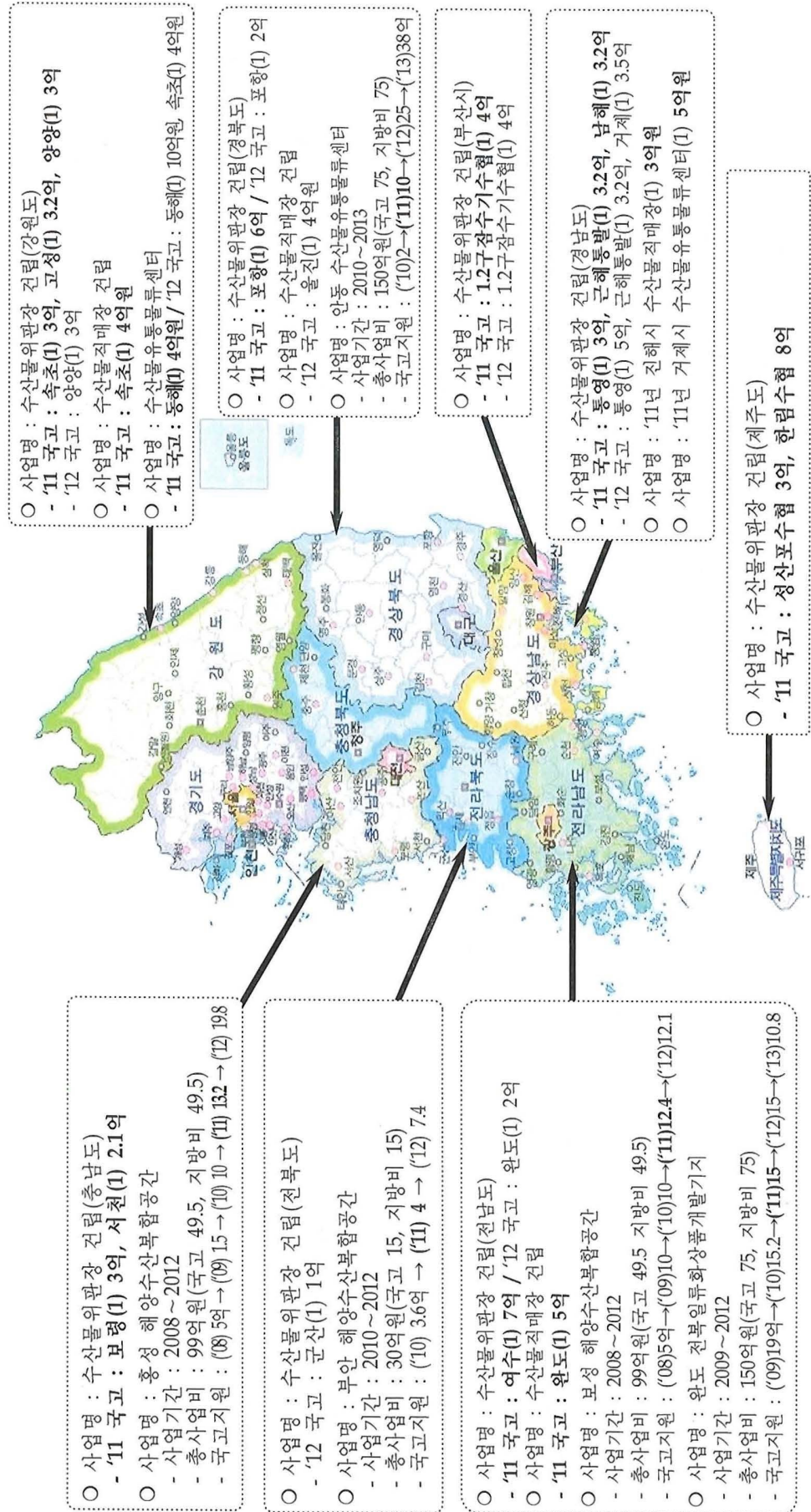
수산물시장 확충 및 시설개선 예산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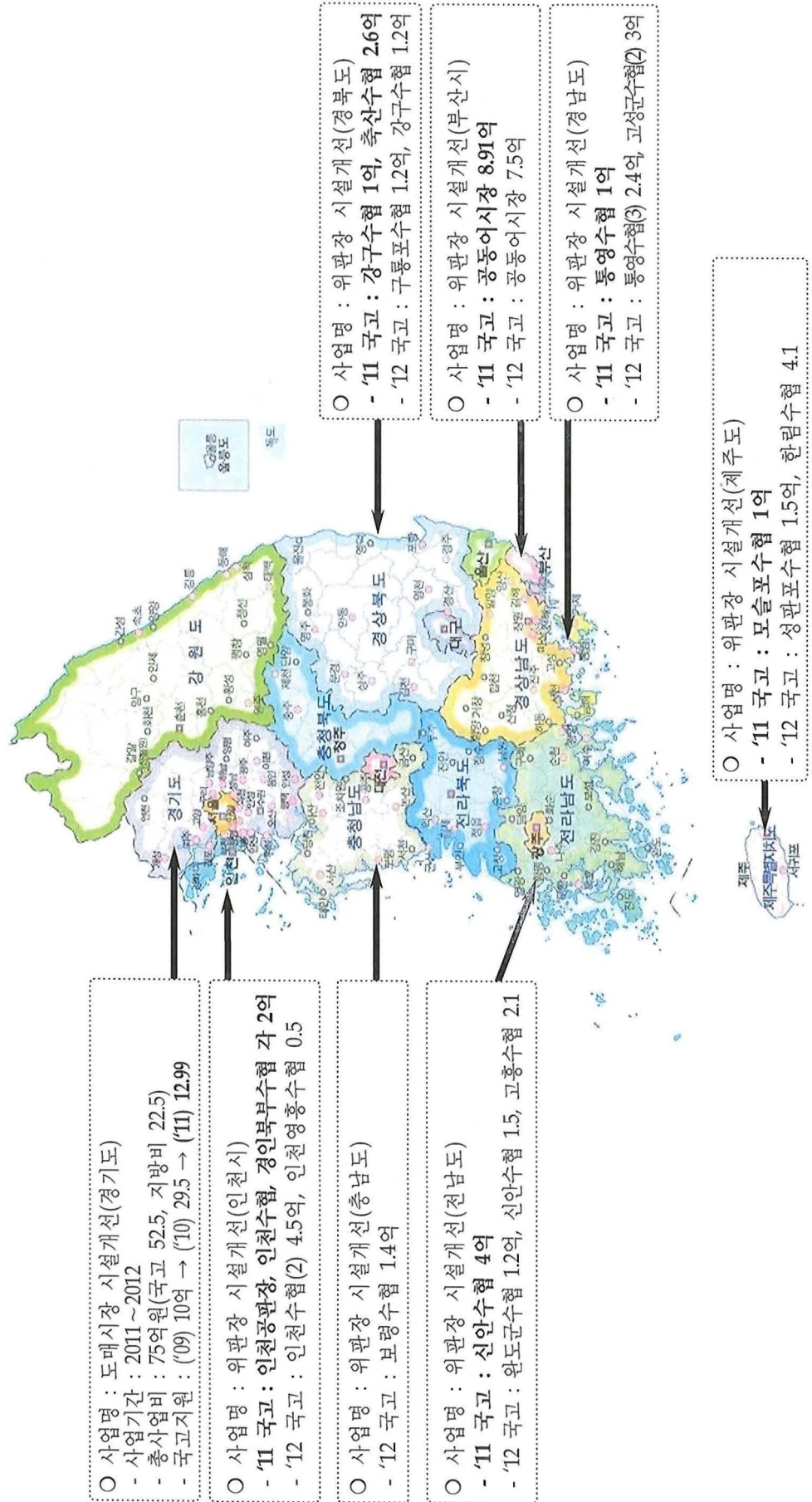
'11년도 사업명	예산액	미집행액
합계 (37개소)	16,984	500
①(자)수산물시장시설개선(농특)	3,750	0
1. 경기(구리도매시장)	1,299	0
2. 부산(공동어시장)	891	0
3. 인천(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200	0
4. 인천(인천수협 연안위판장)	200	0
5. 인천(경인북부수협 외포위판장)	200	0
6. 전남(신안수협 흑산도위판장)	400	0
7. 경북(강구수협 강구위판장)	100	0
8. 경북(죽산수협 죽산위판장)	260	0
9. 경남(통영수협 도천위판장)	100	0
10. 제주(모슬포수협 활어위판장)	100	0
②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농특, 수협)	500	500
③(자)수산물유통시설건립(광특)	12,734	0
㉠수산물 위판장	5,170	0
1. 충남 보령(보령수협)	300	0
2. 충남 서천(서천서부수협)	210	0
3. 전남 여수(거문도수협)	700	0
4. 경북 포항(구룡포수협)	600	0
5. 경남 통영(권현망수협)	300	0
6. 경남 남해(남해군수협)	320	0
7. 제주(청산포수협)	300	0
8. 부산 중구(1.2구 잠수기수협)	400	0
9. 강원 양양(양양군수협)	300	0
10. 강원 속초(속초시수협)	300	0
11. 강원 고성(고성군수협)	320	0
12. 경남 통영(근해통발수협)	320	0
13. 제주 제주(한림수협)	800	0
㉡수산물 직매장	1,200	0
1. 강원 속초시	400	0
2. 전남 완도군	500	0
3. 경남 진해시	300	0
㉢수산물유통물류센터	1,900	0
1. 경북 안동시	1,000	0
2. 경남 거제시	500	0
3. 강원 동해시	400	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2,964	0
1. 충남 홍성군	1,320	0
2. 전북 부안군	400	0
3. 전남 보성군	1,244	0
㉤전북일류화상품기지개발전담원도	1,500	0
④(자)수산물산업 거점단지조성제도계	4,000	0
㉠전북(부안-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1,000	0
㉡전남(여수-수산물종합센터조성)	2,000	0
㉢전남(영광-염화향화도바다매체타워시설)	1,000	0

'12년도 사업명(안)	예산안
합계 (38개소)	15,807
①(자)수산물시장시설개선(농특)	3,209
1. 부산공동어시장	750
2. 인천(인천수협 연안위판장)	312
3. 인천(인천수협 소래위판장)	135
4. 인천(영흥수협 영흥위판장)	45
5. 충남(보령수협 본소위판장)	144
6. 전남(완도군수협 완도위판장)	120
7. 전남(신안수협 흑산도위판장)	150
8. 전남(고흥나로도수협 나로도위판장)	210
9. 경북(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	120
10. 경북(강구수협 강구위판장)	120
11. 경남(통영수협 도천위판장)	90
12. 경남(통영수협 제12구잠수기위판장)	60
13. 경남(통영수협 사랑위판장)	90
14. 경남(고성군수협 임포위판장)	150
15. 경남(고성군수협 수남위판장)	150
16. 제주(청산포수협 청산포위판장)	150
17. 제주(한림수협 한림위판장)	413
②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농특, 수협)	500
③(자)수산물유통시설건립(광특)	12,098
㉠수산물 위판장	2,370
1. 부산 중구(1.2구 잠수기수협)	400
2. 강원 양양(양양군수협)	300
3. 경남 통영(근해통발수협)	320
4. 전북 군산(군산수협)	100
5. 전남 완도(완도금일수협)	200
6. 경북 포항(구룡포수협)	200
7. 경남 통영(통영수협)	500
8. 경남 거제(거제수협)	350
㉡수산물 직매장	400
1. 경북 울진군	400
㉢수산물유통물류센터	3,900
1. 경북 안동시	2,500
2. 강원 동해시	1,000
3. 강원 속초시	400
4. 경남 거제시	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3,928
1. 충남 홍성군	1,980
2. 전북 부안군	742
3. 전남 보성군	1,206
㉤전북일류화상품기지개발전담원도	1,500
④(자)수산물산업 거점단지조성제도계	6,200
㉠전북(부안-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1,700
㉡전남(여수-수산물종합센터조성)	3,000
㉢전남(영광-염화향화도바다매체타워시설)	1,500

지역별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광특) 국고 지원 현황



지역별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농특) 국고 지원 현황





농안법상 시장의 종류(수산분류)

구 분		개 설 자	허가·승인	개소	비 고
도매시장	중앙	특별·광역시장	장관허가	6개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림부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지방	특별·광역시장, 시장	시·도지사 허가	10개	
	민영	민간인	시·도지사 허가	-	
공판장		수협 (생산자단체)	시·도지사 승인	2개	생산자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
도매시장 법 인		법인	시·도 지사 지정	27개 ·도매시장법인 20개소 ·도매시장공판 장 7개소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아 출하주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집하장		수협 (생산자단체)	승인(허가)편자 없음	-	수산물을 대량으로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종합유통 센터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민간인		-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및 거래실적

(단위 : 평, 톤, 백만원)

구분	시 장 명 (허가일)	법인명	지정일	시설규모 (평)		중도매인 (명)	거래실적 ('10)		수수료율 (%)
				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총 계	18개 (단독공판장 2개소 포함)	29개 (공판장 2개소 포함)				1,686	417,591	1,441,452	-
중 앙 도 매 시 장	소계 (6)	14		38,068	34,279	1,044	312,280	1,106,405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85.6.19)	소계		18,330	17,458	481	119,373	476,244	-
		강동수산	’85.1.11			197	58,560	183,391	패3, 선
		수협공판장	’85.2.5			70	30,082	86,257	패3.8, 선
		서울건해	’85.1.11			214	20,134	160,467	3~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76.12)	노량진	’76.12	66,636	68,375	186	102,109	347,087	4.3
		소계		111,607	111,769	147	69,384	192,481	-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08.4.28) ’08.9.18 도매시장 개장	감천항수산물시장	’08.5.30		11,803	66	29,876	84,642	1.1
		피터블유수산 (주)삼성IFM	’08.5.30 ’10.1.22		12,702	-	-	-	4
		부산수산물공판장	’08.8.11		11,288	53	26,651	93,504	6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88.10.7) ’08.1.1부터 시장도매인 제도 시행	소계		8,703	6,169	101	8,539	34,351	-
		대구수산	’96.9.12			42	3,148	11,085	4~5
		종합수산	’96.12.23			35	3,429	13,493	4~5
	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87.11.2)	신화수산	’08.1.1			24	1,962	9,773	4~5
		한밭수산	’06.8.25	1,674	2,403	67	7,063	31,040	5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90.3.20)	소계		1,490	2,043	62	5,812	25,202	-
		중앙수산	’90.3.20			24	2,747	10,549	4
		울산수협공판장	’90.3.20			17	2,581	9,752	5
		울산건해	’90.3.20			21	484	4,901	6
	지 방 도 매 시 장	소계(10)	13		41,424	28,135	514	81,687	256,86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97.6.9)		소계		18,968	11,358	219	46,628	130,601	-
		강북수산	’96.6.10			122	25,608	70,155	4.5
		수협공판장	’97.3.10			97	20,352	54,525	4.5
		상장애외					668	5,921	-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93.2.27)		소계		1,063	1,449	62	7,853	24,301	-
		수원수산	’93.2.27			30	2,976	10,491	3.5
남부수협공판장		’93.2.27			32	4,877	13,810	4.5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88.11.10)		청주수산	’88.11.10	2,315	840	9	1,744	5,266	3~5.5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96.1.1)		안산수산	’96.11.1	2,147	2,148	39	3,062	9,471	5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93.10.29)		소계		4,755	2,334	41	2,920	12,731	-
		전주수산	’93.10		1,167	26	1,571	5,859	5
		수협공판장	’93.10		1,167	15	1,349	6,872	4.5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97.9.6)		안양평촌수산	’06.3.31	5,899	2,276	56	7,601	30,053	4.5~5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95.11.15)		충주수산	’95.7.28	537	865	8	646	2,411	5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98. 1. 5)	이리수산	’97.12.30	1,155	1,601	17	1,209	4,051	3~6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04.4.20)	수협공판장	’04.3.29	3,333	3,907	37	4,585	27,097	4.5	
포항수산물도매시장(’68.9.20)	포항수산	’68.9.20	729	546	26	5,439	10,878	5	
단 독 공판장	소계(2)	2		12,508	18,667	128	23,624	78,187	-
	강서수협강서공판장(’99.3.11)	수협공판장	’99.3.12	9,179	16,307	89	20,001	61,995	선.패3.5, 견
	대구수협대구공판장(’65.12)	수협공판장	’65.12	3,329	2,360	39	3,623	16,192	패.냉동(3) 선(5)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 **개장일자** : '85. 6.19

■ **시설규모** : 부지 164천평, 건평 76천평

※ 수산부문 : 부지 17천평, 건평 16천평

■ **시장관리 및 운영주체**

○ 시장관리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 노석갑)

○ 운영주체(법인)

· 수산부문 : 3개(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수협공판장)

· 청과부문 : 6개(서울, 한국, 동화, 중앙, 대아, 농협공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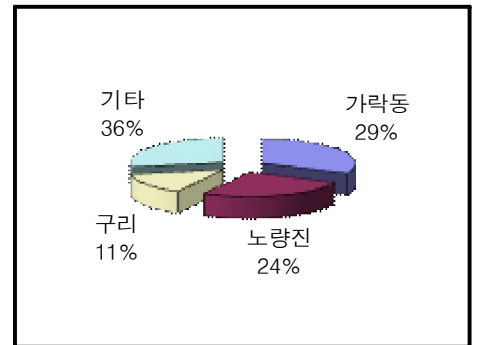
※ 축협공판장은 충북 음성공판장으로 이전('11.2.28)

- 유통종사자 : 4,817명(중도매인, 경매사, 관련 상인 등)

※ 수산부문 : 1,315명(임직원 117, 임대상인 392, 중도매인 523, 하역노조 249 등)

■ **수산물 거래현황**

총 계	수도권지역 도매시장				기타지역 (13개 시장)
	소 계	가락	노량진	구리	
417천톤	268	119	102	47	149
100%	64	29	24	11	36
	100%	44	38	18	



※ 전국 도매시장의 29%, 수도권지역 도매시장의 44% 점유

■ 관리운영 주체현황

구 분	서울시농수산물 공사	수산부문 도매시장(공판장)법인 현황			
		강동수산(주)	서울건해산물(주)	수협공판장	
입주일자	'84. 4(설립)	'85. 6(입주)	'85. 6(입주)	'85. 6(입주)	
대 표 자	김주수(사장)	홍중표(사장)	오정근(사장)	이수용(장장)	
임직원수	293명	· 임직원 : 64 · 중도매인 : 195	· 임직원 : 38 · 중도매인 : 220 · 매매참가인 : 4	· 임직원 : 20 · 중도매인 : 73 · 매매참가인 : 2	
기 능	시장관리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수산물을 위탁받아 매매를 대행하는 법인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징수 : 거래액의 4%)			
자 본 금	8,577억	30억 (운전자금 80억)	35억 (운전자금 59억)	- (운전자금 31억)	
실적 ('10년)	물량	119천톤*	59	20	30
	금액	4,762억원*	1,834	1,605	863

○ 상장 예외품목(물량 10천톤, 금액 461억원) 거래실적 합산

* 수요증가 등 시장주변 환경변화(출입차량 79천대/일, 이용인원 120천명/일)로 도매시장
기능 수행에 한계

목포 Sea-food Town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서남해권 수산물을 집산 처리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을 마련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항만관광지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총사업비 : '07~'10, 150억원
- 부지 22,319m², 연면적 6,996.46m²
- 주요시설 : 위판장, 직판장, 복합공간(해양수산물전시관 및 관련시설, 편익시설 등)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계	'07까지	'08	'09	'10
계	15,000	1,928	5,000	3,800	4,272
국비	7,500	964	2,500	2,000	2,036
지방비	7,500	964	2,500	1,800	2,236

<목포 Sea-food town 조감도>



2-14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노후화(건립된지 40년)로 안전사고 위험과 공간 협소로 사용자와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시장기능 유지에 한계
 - 기존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추진
 - * 물류·유통정보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수산시장, HACCP·콜드체인시스템 등 국제적수산물 관광명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시장으로 변모

<사업 개요>

- ◆ 총 사업부지/기간 : 38,432㎡(11,626평) / '07~'15(9년간)
 - 수협부지 66,636㎡(20,157평) 중 28,161㎡(8,519평)
 - 농식품부 비축기지 부지 22,146㎡(6,699평) 중 10,271㎡(3,107평)
- ◆ 건축규모 : 118,346㎡(35,862평), 지하2층·지상8층
- ◆ 총사업비 : 2,024억원(국비 70% 약 1,417억원, 자담 30%)
 - '71.6월 개장, 연면적 68천㎡, 종사자 2천여명, 1일 평균 3만여명 이용

나 추진실적

- '05.12.28~'06.9.26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인정
- '07. 8 : 인접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제공 협약 체결(농림부 ↔ 해수부)
- '07.10. 2 ~'08. 5.30 (8개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08.9.10 : 총사업비 조정(당초 1,882억원 → 변경 2,024억원)
- '08. 11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조달청)
- '09. 2 : 입찰서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대우, 삼성, 현대)



- * 시장상인의 복층구조 현대화 반대 민원제기에 따라 당초 '09. 3. 19 예정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일시 중단

■ '09. 7 : 수협과 시장상인간 MOU 체결

- * 사업부지 약 6,612㎡(2,000평) 확대하여 현대화 추진
 - (당초) 31,820㎡(9,626평) → (변경) 38,432㎡(11,626평)

■ '09. 7. 27 : 실시설계업체 선정(현대건설, 낙찰가액 182,750백만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최근 비축기지 전체를 활용하는 이전(代土)방안 유관기관 원칙적 합의(7.25)
 - 현대화사업 소요 부지확보,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 행정적절차를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 추진
- 추진 일정
 - '11. 8월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 재제출(수협 → 동작구)
 - '11. 9~10월 : 동작구청 사전환경성검토,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 '11. 10월 :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1. 11월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신청(동작구 → 서울시)
 - '12. 3월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 '12. 4~11월 : 실시설계 및 심의
 - '12. 12월 : 착공 예정
- 시설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한계극복, 물류시설 현대화 등의 유통선진화를 위해 '15년까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참고자료

노량진수산물시장 현황

연혁

- '71. 6 : 한국냉장(주)에서 도매시장 건설
- '98. 8 :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노량진수산물(주) 민영화 결정
- '02. 2 : 수협중앙회에서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 운영
 - * 인수가격 : 1,494억원(감정가액 1,760억의 85%수준)

■ 시설규모 : 대지 66,636㎡(20,157평), 연면적 68,375㎡(20,68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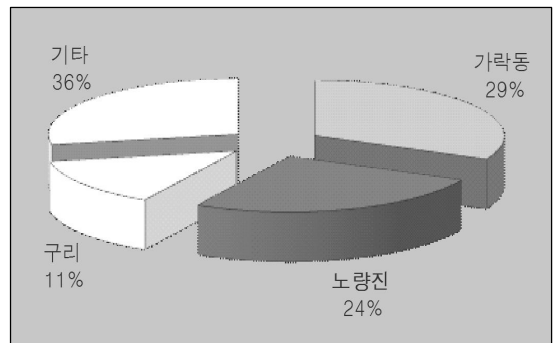
■ 종사자 : 약 2,000명(임직원 101, 중도매인 188, 판매상인 1,478, 항운노조원 200 등)

■ 이용인원(1일) : 약 3만명(출입차량 5,000대)

■ 거래현황('10) : 102천톤, 3,471억원

○ 전국 도매시장의 24%, 수도권지역 도매시장의 38% 점유

총 계	수도권지역 도매시장				기타지역 (13개 시장)
	소 계	가락	노량진	구리	
417천톤	268	119	102	47	149
100%	64	29	24	11	36
	100%	44	38	19	



* 가락시장은 건어물(20천톤)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노량진이 점유율이 높음

* 18개 수산물시장 거래실적(417천톤, 1조 4,414억원)

- 16개 수산물부류 도매시장 거래량(393천톤) 및 2개 단독공판장(강서 및 대구공판장) 거래량 24천톤

경영수지('06~'1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입			지출(B)	순이익(A-B)
	소계(A)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2006년	25,207	13,642	11,565	25,201(12,540)	6
2007년	26,010	13,824	12,186	25,860(12,540)	150
2008년	26,371	14,200	12,171	25,886(12,540)	485
2009년	26,964	14,713	12,251	26,062(12,000)	902
2010년	27,198	14,877	12,321	26,222(12,000)	976

* ()안 시장사용료 부담분으로 수협중앙회에 납입하는 금액임.

* 영업수익(상장수수료), 영업외수익(임대, 주차료, 냉장료, 제빙 등)

2-15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현황 및 문제점**

-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은 '08. 9월 개장이후 상장물량 부족 및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시장기능 침체
 - * ('08년) 7천톤/94억 → ('09년) 51천톤/1,272억 → ('10년) 69천톤/1,925억
- WTO, FTA 등 수산무역 환경변화에 부응, 국제수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집산 중심지 기능에 맞는 국제적 통합물류 시스템 및 동북아 수산 물류·무역 중심 기능 확보

<시 설 현 황>

- ◆ 규모 : 부지 112천 m², 건물 연면적 112천 m²(항만시설 15,000 m²)
 - 주요시설 : 시장회관동, 도매장동, 냉동창고동, 활어양육동 등
 - * 3개법인 : 연근해(부산수산물공판장), 원양 국제수산물 부산수산물공판장 삼성FM)
- ◆ 총사업비 : 2,090억원(국비 70% 1,463억원, 시비 30%)
 - '08.9월 개장, 종사자 550여명(중도매인 156명), '10년 거래실적(69천톤, 1,925억원)

나 추진실적

- '08. 4. 28 : 중앙도매시장 개설(우리부 → 부산시)
- '08. 4. 30 : 도매시장 건물 준공 및 시범운영 개시
- '08. 9. 18 : 개장
- '08.12. : 연근해선 사매매 근절(우리부 고시 개정)
- '09. 6. 27 : 시장밖 보관 수산물 견본거래 및 도매시장 통관 수입 수산물 정가수의매매(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09. 9.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 '08. 4. 28 : 중앙도매시장 개설(우리부 ⇨ 부산시)
- '08. 4. 30 : 도매시장 건물 준공 및 시범운영 개시
- '08. 9. 18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08. 12. : 연근해선 사매매 근절(우리부 고시 개정)
- '09. 6. 27 : 시장밖 보관 수산물 견본거래 및 도매시장 통관 수입 수산물 정가수의매매(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09. 9.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 '10. 5.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통합추진 MOU체결(농수부, 부산시, 5개수협 공동어시장)
- '10. 9. : 한·러 관세감면 냉동명태 도매시장 상장개시(물가안정기여)
- '11. 6.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통합추진 자문용역 시행('11.6~'12.1)

다 향후 추진계획

- 원양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도매시장 공개상장 정착
 - 원양선사의 인센티브 등 도매시장 참여 확대방안 강구
- 전국 수산부류 소비지 도매시장과 연계한 산지도매시장 역량강화로 물량 대량공급 시스템 마련
 - 소비자에게 고품질 수산물 제공 등 식품안정성 확보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과 통합 추진
 - '12년 1월 통합추진 자문용역 완료후 결과에 따라 2016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협의 추진



참고자료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현황

개요

-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 무역 중심기능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FTA 등)에 능동대처 및 국제경쟁력 제고

<시 설 현 황>

- ◆ 사업기간 : '95~'08('01년 착공~'08.4 준공)
- ◆ 사업규모 : 부지 112천㎡, 건물 112천㎡
- ◆ 총사업비 : 2,090억원(국비 70% 1,463억원, 시비 30%)

- '08. 4. 28 : 중앙도매시장 개설(우리부 → 부산시)
- '08. 4. 30 : 도매시장 건물 준공 및 시범운영 개시
- '08. 9. 18 : 개장식 개최(장관님외 1,000명 참석)

주요시설

- 규모 : 부지 112천㎡, 건물 연면적 112천㎡
- 조직인력 : 2팀 23명(무기계약직 상장지도원 6명 별도)
- 주요시설 : 회관동, 도매장동, 냉동창고동, 활어양육동, 주차장동 등
- 법인·중도매인 : 3개 법인, 중도매인 156명
 - 연근해(1) : (주)부산수산물공판장
 - 원양·국제수산물(2) :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 (주)삼성IFM

거래실적

(단위 : 천톤, 억원)

법인별	'08년		'09년		'10년		'11.7월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7	94	51	1,272	69	1,925	35	823	
감천법인	2	52	23	714	30	847	19	410	
삼성IFM	-	-	-	-	13	143	11	157	'10.1.22지정
공판장	5	39	27	537	26	935	5	256	
PW수산	-	3	1	21	-	-	-	-	'09.9.30취소

■ 사업추진경위

- '95. 6. 23 : 기본계획용역 완료
- '00. 2. 10 : 기본설계용역 완료
- '00. 7. 20 : 시공사로 (주)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 '01. 1. 2 : 공사착공
- '06. 1. 17 : 감천국제수산물기지 활성화방안 수립(해수부)
- '06. 5. 4 : 총사업비 변경 승인(1,996억→2,049억원, 증 53억원)
- '06. 8. 28 : 사업기간 변경('95~'06 → '95~'08, 2년 연장)
- '06. 9. 22 : 총사업비 변경 승인(2,049억→2,072억원, 증 23억원)
- '07. 3. 30 : 총사업비 변경 승인(2,072억→2,090억원, 증 18억원)
- '07. 7. 20 : 총사업비 변경 승인(지출항목 조정 : 감리비 1,165백만원 증)
- '08. 4. 30 : 준공
- '09. 7. 16 : 사업정산 및 마감(총사업비 2,089백만원, 국고 1,453, 지방비 636)

■ 연차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06까지	'07실적	'08예산	비 고
감천항 도매시장 건설		2,089	1,545	285	259	
국 비 (70%)		1,453	1,065	229	159	
지 방 비 (30%)	소계	636	480	55	100	
	기금	427	314	52	61	
	시비	209	166	4	39	

<감천항 공영도매시장 조감도>



2-16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설치된 수산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 '01년 운용을 개시
 - 설치 당시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였으나, 자체재원 확충을 통해 '10년 말 기준 8,127억원의 기금 조성
 -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01. 7월부터 기금운용 개시
 - ※ 현재 수산업법 제76조 기금의 설치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WTO/DDA,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및 부담가중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성 증대
 - '01년 이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통해 어업인 및 관련 단체에 총 33,712억원('10년도까지 총 사업비 누계)을 지원,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나 추진실적

- 자체재원 확대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기반 조성
 - 시장 개방화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자체재원 발굴을 통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 * '03. 1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기금편입
 - * '05. 1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 이관(3,694억원)
 - * '06. 1 :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금편입
 - * '07. 9 : 수산물공매납입금 기금편입
 - * '08. 8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기금편입
- 기금운용체계 확대를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
 - '01년 기금설치 당시 5개 사업이 '12년 현재 9개 경상사업과 10개

용자사업으로 확대하여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운용규모(억원) : ('09) 5,996 → ('10) 5,756 → ('11계획) 6,426 → ('12계획) 6,790억원

-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비 / 기간 : 49백만원 / '11.12~'12.5(6개월)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용역추진계획 수립 및 수의계약 발주('11.11)

다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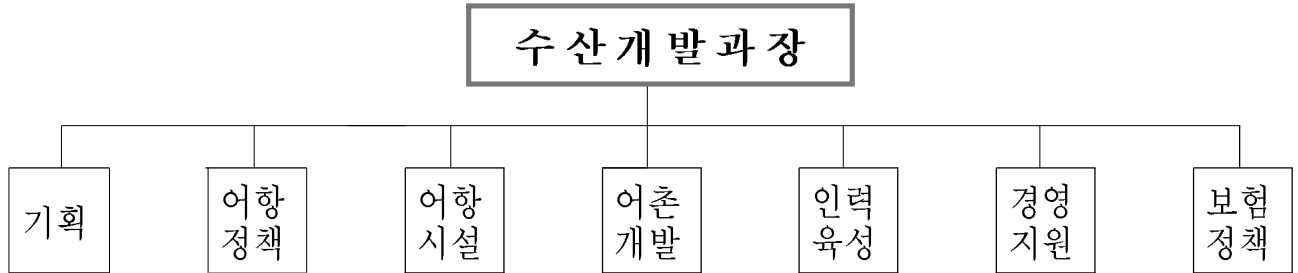
-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기금사업의 중장기 목표를 구체화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기금의 중장기 발전전략 검토
-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체제 확립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산운용체제를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성과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체제 강화
- 성과관리예산체제와 연계한 지출 분야 구조조정 추진
 -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기금 용자지출 항목 개편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 통·폐합 추진
- 수산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기금 조성규모 확대
 - 지속적인 자체재원 발굴 및 정부출연금 지원을 통해 '16년까지 기금의 조성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충
 - * 조성규모(억원) : ('08) 7,852 → ('09) 7,988 → ('10) 8,127 → ('16) 10,000
- WTO/DDA 협상, FTA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기금의 운용방식과 지원내용을 시장개방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수 산 개 발 과

1. 일반현황	107
2. 주요업무현황	107
2-1. 다양한 어촌 개발수요에 부응한 어항인프라 확충	71
2-2. 재해예방을 위한 어항시설(방파제) 안전성 평가	111
2-3. 솔로몬군도 어항개발 협력사업 추진	3
2-4.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방안 마련	5
2-5. 도시와 어촌의 교류촉진 사업	17
2-6.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10
2-7.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18
2-8.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추진	15
2-9.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2
2-10.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 운영	9
2-11. 어업인 경영 및 복지 지원 확대	11
2-12. 어업정책보험사업 확대로 안정적 어업경영기반 조성	61
2-13. 수산업경쟁력 제고와 어촌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91
2-14. 수산계 학교 교육의 특성화 추진	16
2-15. FTA/DDA 등 개방확대에 대응, 수산분야 직불제 확충	9
2-16. 미래지향적 수산연구기술개발(R&D) 추진	11

1. 일반 현황

▣ 조직



▣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어항 등 예산 및 국회 자료 등 총괄 어촌어항법령 개정 및 도시·어촌간의 교류 촉진
어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국가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 기본계획 변경 및 조사계획
어항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어항 건설, 공정관리 및 지방어항 개발 등 협의 어항재해 방지·안전관리 및 피해복구
어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어촌체험마을 및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후계인력 및 수산경영인단체 육성, 지원 수산계 학교(고교·대학) 지원 및 인력 양성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어업인 복지정책 수립 추진 어선원 고용·복지 등 정책개발 및 제도 도입
보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 관리 수산공제업무 지도·감독 및 수산연구기술개발

▣ 소관법령(소관 2개, 공통 10개)

법 률 명	주요 내용	관련 제도
어촌·어항법 (법률 제1084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어항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사용 승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및 신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제97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심사위원회 운영 재해보상보험사업 위탁(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 국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보상보험사업계획 승인 기준임금 고시 보험규약 등 관련규정 승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 1048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사업의 중복성검토 및 사업의 조정 공동연구사업 및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 기 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성과 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사업 및 산학협동사업 지원



2. 주요 업무 현황

2-1 다양한 어촌 개발수요에 부응한 어항인프라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10년말 현재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완공률이 저조하고 지역별 어선안전수용률 편차가 심하고 불균형
 - * 국가어항 84%(지정어항 109개항중 92개항 완공), 지방어항 56%(285개항중 160개항)
 - * 어선안전수용률(평균 74%) : 동해안 92%, 서해안 78%, 남해안 69%
- 최근 어항개발 수요가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
 - 단순 어업생산기지에서 유통 및 여가장소로 변모, 기본시설 이외에 친수공간 등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의 중요성 부각

나 추진실적

- 국가 및 지방어항 개발
 - 국가어항 109개 중 92개 완공/'10년까지 28,024억원 투자(완공률84%)
 - 지방어항 285개 중 160개 완공/'10년까지 11,840억원 투자(완공률56%)

구 분	대 상 항	완 공	미 완 공	완 공 률
계	394	252	142	64%
국가어항	109	92	17	84%
지방어항	285	160	125	56%

* 어선안전수용률 : ('00)62%→('06)67%→('07)68%→('08)71%→('09)73%→('10)74%

- 다기능어항 개발 및 국가어항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
 - 다기능 어항 개발 : 대포항 등 13개소/'10년까지 1,855억원
 - 유지보수사업 : '10년 어유정항 등 13개항에 368억원 투자 2개항 완공

다 '11년 추진계획

- 기존 국가·지방어항의 완공률 제고
 - 국가어항(10개)에 526억원 투입, 2개항 완공(완공률 : 84 → 86%)
 - 지방어항(48개)에 577억원 지원, 9개항 완공(완공률 : 56 → 59%)
- 신규지정 국가어항의 개발계획 수립
 - 항별 적정 시설규모 판단 등 기본설계 완료('09.12~'10.12)
 - * 대상항(6개항) : 천성항(부산 강서), 궁평항(경기 화성), 장고항(충남 당진), 이목항(전남 완도), 노량항(경남 하동), 남포항(경남 고성)
- 다기능 어항사업 추진
 - 다기능어항 시설공사 4개소에 278억원을 투입, 이중 1개소(대포항) 완공
 - * 다기능어항 13개소 중 8개소(마량, 양포, 강릉, 정자, 모슬포, 격포, 홍원, 맥전포) 완공, 4개소(대포, 대변, 지세포, 국동) 추진중, 1개소 미착공(어유정)
- 기존 국가어항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어항기능 유지 및 친수 공간 제공
 - 경남 미조항 등 14개 어항/441억원
- 기존의 국가어항(잔여 11개항)은 '14년까지 완공(95%)하고 어선의 안전수용을 제고를 위해 추가 지정('08.12월)한 6개항 개발 추진
 - 지방어항(잔여 125개항)도 2034년까지 개발 완료



참고자료

국가 · 지방 · 어촌정주어항 현황

어항의 종류 및 관리주체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법적근거
정 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촌어항법 제2조
지정권자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16조
개발주체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23조
관 리 청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35조
예 산	국비 100%	국비 80% 지방비 20%	국비 80% 지방비 20%	어촌어항법 제49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어항 수	109개항	285개항	576개항	

완공현황

항 종 별	항 수	완공어항수 ('10까지)	완공률	미완공 어항수
계	970	394	41%	576
국 가 어 항	109	92	84%	17
지 방 어 항	285	160	56%	125
어촌정주어항	576	142	25%	434

투자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총계획	'10까지	투자율	잔여 사업비
계	71,864	48,209	67%	23,655
국 가 어 항	38,467	28,024	73%	10,443
지 방 어 항	20,148	11,840	59%	8,308
어촌정주어항	13,249	8,345	63%	4,904

2-2 재해예방을 위한 어항시설(방파제) 안전성 평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強度)가 증가추세에 있어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전 해역 심해설계과」를 재산정('05.12월) 하여 공표
 - * 국토해양부에서는 '0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안전성평가 추진
- 어항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산정된 심해파고를 근거로 설계파고(천해파)를 재추정하고 어항시설의 안전성 평가 불가피
 - 대상항은 '09까지 완공된 90개항중 기히 신 심해 파고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외곽시설이 없는 9개항을 제외한 81개항으로 함
- 동 결과에 따라 어항시설(방파제) 보수보강대책이 수립되면 어항시설 안전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 * 어항시설의 생애주기(生涯週期) 연장 등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감소

나 추진실적

-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설계과 검토 및 안전성평가」 추진 중
 - 전체사업 : 대상 81개항, 사업비 2,406백만원
 - 용역사 : (주)헤인이엔씨외 2개사, 사업기간 : '10.6 ~ '12.12
- '10년도(1차)에는 사업비 4억원으로 제주도 위미항 등 태풍진로권 13개항 우선 시행
 - 기타 어항은 그 동안의 피해사례 또는 민원(건의)발생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안전성 평가



- '11년(2차)에는 사업비 15억원으로 전국 51개항 안전성 평가 추진
- 1차년도 평가 결과 시급을 요하는 어항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우선 시행
 - 죽변항(경북 울진) : '11.2
 - 축산항(경북 영덕, 3억원) : '11.3
 - 장호항(강원 삼척, 7억원) : '11.4
- 2차년도('11년) 안전성 평가사업 추진
 - 어항시설물 현지조사 완료 및 설계파고 검토(전문가 자문 실시, '11.8)

다 향후 추진계획

- 2차년도('11년) 안전성 평가사업 추진
 - 설계파고 확정후 어항별 시설물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계획 수립
- 보수·보강사업 추진
 - 시설물 보강을 위한 항별 우선순위 결정
 - 소요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보수·보강 사업 추진

2-2

솔로몬군도 어항개발 협력사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출기지 개발을 위해 주요 연안국과 협력관계 구축 필요
 - 솔로몬군도가 위치한 중서부태평양(PNA수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중심지로 참치생산의 98%(약 7,000억원)를 차지
 - PNA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는 조업권 부여 제외, 향후 조업척수 감축시 우선 감축 표명 ('10.2.25 PNA 정상회담)
 - *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 중서부태평양 참치생산 주요 연안국 연합체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등 8개국)
- 국내기업의 참치가공공장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솔로몬정부에서 어항개발사업 ODA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요청('10.4.13)
 -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어항개발사업 ODA 지원하기로 잠정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10.10.15 보고)
 - 사업내용 : 어항개발(정부지원)/2,518만불(선박접안시설 160m)
 - * 재원구성 : (EDCF) 265억원 (부두시공 + 감리), (KOICA) 12억원(설계)
 - * 민간투자 : 8,100만불 (어항배후 참치가공공장 등)

나 추진실적

-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조사.
 - 수행자 : (주)헤인이앤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비/기간 : 573백만원 / '10.12.23 ~ '11.12.24 (12개월)
 - * 솔로몬정부 사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 (당초) '10.12.23 ~ '11.6.24(6개월)



다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F/S)를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완료
 - F/S 추진과정에서 솔로몬정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 어항시설계획 및 공사비 산정,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어항 운영을 위한 SPC 구성 및 운영방안 등
 -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관련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EDCF차관 지원상의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해소
- 솔로몬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솔로몬정부와 대화 창구는 KOICA 현지사무소 활용('11.8월 개소)
 - 타당성조사 완료시 총리실 주관으로 솔로몬정부와 협의회를 개최
 - 타당성조사 결과 및 EDCF에 대한 추가 설명

2-4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항개발이 대부분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 결과가 낮게 나타남
- 최근 어선 감척, 어업인 감소, WTO/FTA협상 진전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어항기능의 다양화 요구가 점증되면서,
 - '04년부터 관광기능을 겸비한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변 사업과 연계부족 및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기대효과 미흡
- 수산·어촌·어장·관광 및 배후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로 어항의 개발효과 증대 필요
- 어항개발에 국가,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여 공동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투자재원의 다양화
 - 정부는 어항 기본시설, 지자체는 비수익 기능·복지시설, 민간은 수익형 또는 상업시설에 투자

⇒ 어선 안전정박 위주의 어항정책을 미래수요에 대응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대두

나 추진실적

-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대상항 선정은 시·도별 1개소씩 어항 기능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안)을 제출받아 우리부에서 평가하여 선정 추진
 -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유도



-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은 전문용역사에 의뢰하여 추진('12년)

다 향후 추진계획

■ '12년도 예산안에 소요사업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어항기능활성화를 위한 “어항이용고도화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12년도 우리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나, 기재부의 예산심사(1차, 2차)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외
 - 문제사업으로 제기하여 소요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 설명
- ⇒ 시범사업 대상지 지역구 의원 및 해당 지자체를 통해 소요예산 반영 지원 협조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

■ 어항이 생산·유통·가공 및 문화·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겸비한 수산분야 6차 산업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

- 특정 어촌 또는 지역단위의 어항 개발을 어촌·어항·어장 및 배후 지역을 연계한 개발방식으로 전환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및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어항내 수산물 위판·가공·유통·판매 등 종합처리시스템(FPC) 구축
- 효율적인 어항개발·관리를 위해 지자체, 민간 참여 적극 유도

2-5

도시와 어촌의 교류촉진 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 5일 근무, 웰빙 문화의 확산,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국민 관광패턴이 단순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어촌이 휴식·휴양 등 도시민의 관광 거점지역으로 역할 증대

나 추진실적

- 도시와 어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상생의 기반구축을 위해 “100사 100촌 자매결연 행사” 개최('05.5.24)
 - 체결실적(누계) : ('05)214 → ('06)439 → ('07)553 → ('08)662 → ('09)772 → ('10)967
 - * 자매결연을 통한 어촌 소득증대 효과('10년까지) : 641억원
 - 수산물직거래 368억원, 봉사활동 99억원, 어촌체험 109억원, 공동물품 지원 등 65억
- '05년부터 도⇔어 교류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
 - * '10년도 20명 포상(국표 2, 농식품부장관 표창 9, 수협중앙회장 표창 9)
- 자매결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연중)
 - 기업체 간담회 및 어촌 찾아가기 행사('10.3~12), 어촌사랑·그림 공모 시상('10.10), KBS 6시 내고향 “어화둥둥 우리바다” 18회 방송



다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어촌 교류 홍보 및 활동 강화
 - 어촌사랑 자매결연 홍보 및 도시·어촌 상호 방문 행사 지원
 - 어촌사랑 여행지원 및 어촌사랑 초등학생 글·그림 공모전 개최
 - 어촌사랑 자매결연 신규 80건 체결 및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
 - 자매결연 대상을 학교로 확대하여 1교1촌 운동 전개

- 도시-어촌 교류프로그램 개발 등
 -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등 결연체간 교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참고자료

도시어촌 자매결연 현황

연도별 체결 실적 및 계획

연도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획	'12년 이후	비고
건수	순증	1,262	214	225	114	109	110	195	80	215	
	누계	1,262	214	439	553	662	772	967	1,047	1,262	

자매결연 체결 현황

○ 기업(단체) 유형

구분	계	기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공사,공단	해양수산	기타
결연(건)	967	467	91	155	64	31	159
비율(%)	100	48.5	9.3	15.9	6.6	3.2	16.5

○ 체결 형태

구분	계	1사1촌	1사多촌	多사1촌	비고
건수	967	360	188	419	

○ 지역별 체결분포(어촌계 기준)

구분	계	경인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전체어촌 계수(A)	1,993	106	77	154	64	852	155	444	41	100
자매결연 어촌계수(B)	403	45	23	50	19	99	41	85	18	23
자매결연 참여율(B/A, %)	20.2	42.5	29.8	32.5	29.6	11.6	26.4	19.1	43.9	23.0
체결건수(C)	967	232	65	220	33	166	45	144	24	38
체결율(C/A, %)	48.4	217.9	84.4	142.2	51.6	19.5	29.0	32.2	58.5	38.0

※ 지역별 어촌계수는 “2009년 어촌계 분류평정” 기준

2-6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낙후어촌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94년부터 전국을 총230개 권역으로 설정,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그 동안 지역숙원사항 위주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 특화개발 및 어업인들의 가시적인 소득증대 미흡하였으나 중심 어촌계에 집중투자형식으로 개선
 - 특히, 정형화된 사업계획이 하향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창의적인 어촌개발 여지가 미흡함에 따라 지역민과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나 추진실적

- 전체 230개 권역 중 183개 권역에 대한 사업 추진
 - '10년까지 총사업비 8,795억원 중 6,531억원(74%) 투자
 - * 사업물량으로는 1 단계 160개 권역 완료, 2단계 13권역 완료, 17개 권역 추진 중
 - * 1단계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KMI, '06낙후지역개발사업 심층평가)
 - 생산유발효과 1조 1,065억원, 부가가치유발 4,634억원, 고용유발효과 11,524명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마련('07.12.)
 - 어촌지역의 특성 및 여건이 반영된 선택과 어촌특화 테마중심의 집중투자를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개편
 - 지자체에서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개편
 -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테마)의 어촌공간 정비 추진

- 어촌의 다양한 관광 잠재자원 중 특성화가 가능한 유형(테마)를 설정, 도시민과 지역민이 교류하는 생산·휴양지역으로 조성
 - * 테마유형(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어촌관광레저형, 어촌문화학습형)
- 그 외 어촌계는 최소 필요한의 범위내에서 정주기반시설을 지원
- 대상권역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총사업비(8,795억원) 범위내에서 권역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권역내 어촌계 수(계원 수 포함)를 기준으로 대(50억이하)·중(40억이하)·소(30억이하) 권역으로 구분, 사업비 차등 지원(국고 70%, 지방비 25%, 자부담 5%)

다 향후 추진계획

- II단계사업 신규 16개 사업과 계속 16개 사업 등 32개 사업비 지원
 - 부산1, 울산1, 경기1, 강원2, 충남1, 전북1, 전남15, 경남8, 제주2
- 지역주민이 원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복지시설 건립
 - 어선계류시설 : 선착장, 물양장, 외곽시설
 - 해안시설 :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 육상수산시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 유통시설 : 간이위판장 등
 - 어촌환경시설 : 급수, 상하수도, 공동화장실 등
 - 복지시설 : 어업인 회관, 경노당, 해안소공원
-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연내에 집행토록 지자체 독려
 -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12년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
 - 사업별 집행 점검 및 독려 실시
- 2013년까지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어촌을 생산과 휴양이 가능한 『어촌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



참고자료

어촌종합개발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개요							
어촌종합 개발사업	'94~2013	· 어촌종합개발사업(1단계) : 160권역(권역당 35억원) · 어촌종합개발사업(2단계) : 70권역(권역당 대 (50여) · 중 (40여) · 소 (30여) 차등 · 지원조건 : 국고70%, 지방비25%, 자담5% ('03년까지 : 국고50,지방비45,자담5, '08년까지 : 국고80,지방비15, 자담)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향후투자
	권역수	230	152	(24)	8(12)	10(13)	3(16)	7(25)	50
	계	879,531	526,531	35,531	38,789	25,833	26,457	39,384	187,006
	국비	568,254	285,854	28,480	31,031	18,082	17,900	26,789	160,118
	지방비	268,648	217,216	6,932	6,895	6,488	7,496	10,821	12,800
민자등	42,629	23,461	119	863	1,263	1,061	1,774	14,088	

※ ()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시·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권역, 백만원)

시·도	총 계획		실적 ('94~2010)		계 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11		'12 ~ '13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30	879,531	190	653,138	32	39,384	24	185,243
부산	3	11,528	3	7,728	1	1,200		2,600
인천	7	22,417	6	19,417	-	0	1	3,000
울산	4	14,577	4	11,377	1	1,100		2,100
경기	4	18,270	3	11,370	1	1,600	1	3,534
강원	17	60,972	15	50,563	2	1,000		9,409
충남	13	49,257	11	40,257	1	3,000	1	6,000
전북	10	38,487	9	29,987	1	3,500	1	5,000
전남	87	336,103	68	235,345	15	17,383	10	83,375
경북	22	82,573	18	65,520			4	17,053
경남	47	185,899	38	131,869	8	9,444	5	44,586
제주	16	59,448	15	49,705	2	1,157	1	8,586

※ 국토부(도심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편성예산 포함

2-7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학생 등의 현장학습 및 웰빙 붐에 따른 어촌체험 수요는 증대
 - * 어촌체험마을 이용객수 '10년 783천명, 직접소득 179억원
- 어촌체험마을 운영으로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로 인하여 전체사업에 부정적 이미지 표출
 - 기존 운영중인 체험마을 일제조사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낮은 마을 정비
 - 105개 마을 중 1차('10.8) 7개마을 퇴출, 2차('11.8) 8개마을 퇴출

나 추진실적

- '01년부터 '13년까지 112개 마을을 목표로 “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10까지 105개소 완료)
- II단계 체험마을 조성사업 계획 수립·추진(추가 29개소)
- 어촌체험마을 신규 조성('11.8~12) : 경주 연동어촌체험 마을(5억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어촌체험마을 신규 조성('11.12~'12.10) : 포항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5억원)
-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지속적인 평가로 질적 성장 도모
 -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3단계(성공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로 분류하고 부실마을 퇴출시키는 등 정비
- 어촌체험마을 지원 및 4계절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70개소) 및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지원(20개소)



참고자료

1단계 어촌체험마을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까지	105	2	5	9	9	9	5	31	8	18	9
2011계획	2								2		
장래조성계획	5	-	-	1		2	1				1
합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연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1	1	1	1		8	1	4	1
2007	11				1			6		4	
2008	8		1	1	1			3		2	
2009	7				1	1		2			3
2010	3					1	1		1		
2011계획	2								2		
계	107	2	5	9	9	9	5	31	10	18	9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시행(연도별)											'11년	'12년 이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까지			
사업량	112	9	8	11	12	18	18	11	8	7	3	105	2	5	
사업비	계	73,110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8,100	5,988	4,300	2,100	70,210	1,400	1,500
	보 조	36,555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4,050	2,994	2,150	1,050	35,105	700	750
	지방비	32,900	4,240	1,800	2,475	2,700	4,950	6,210	3,645	2,695	1,935	945	31,595	630	675
	자부담	3,655	471	200	275	300	550	690	405	299	215	105	3,510	70	75

2-8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촌과 어항을 단순한 수산물 생산기지 기능에서 유통·레저·관광 기능으로 확대하여 국민 휴식공간 및 어업의 소득시설로 활용
- 어촌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어항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나 추진실적

-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 수립('04.5.1) 시행
 - I 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 어촌·어항을 연계한 통합적 개발(7개소)
 - II 모델(다기능어항) : 어항에 레저·관광기능 부여(6개소)
 - III 모델(어촌관광단지) : 어촌주변 관광지로 정비(11개소)
 - * 개소당 50~60억원 투입(국고 50%, 지방비 50%)
- '10년까지 복합공간 4(경북 대진 등), 관광단지 5(강원 대진 충남 무창포 등) 완공
- 어촌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연계한 신규 어촌개발사업 발굴
 - * '11년에 농어촌공사에 4억원을 지원하여 인문, 역사, 자연 등 어촌자원조사

다 향후 추진계획

- 복합공간 2개소, 관광단지 3개소 조성사업 계속
 - '11년중 복합공간 경남(맥전포항), 관광단지 경북(전촌), 경남(학림) 완료
 - * 다기능 어항은 수산III-1에서 관리
- 어촌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연계한 신규 어촌개발사업 발굴
 - 어촌 자원발굴로 어메니티 증진 및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 '13년까지 24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12년에 사업효과 검증 절차를 거쳐 계속확대 여부 결정



참고자료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구 분	I 형(복합공간)	II 형(다기능어항)	III 형(어촌관광단지)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대상지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6개소('04.10.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재 원	◦ 어항부문 : 농특회계 ◦ 어촌부문 : 균특회계	◦ 농특회계 - 필요시 민자유치	◦ 균특회계
사업기간	◦ 6개년('04~'09)	◦ 6개년('04~'09)	◦ 6개년('04~'09)
사업규모	◦ 총 1,089억원 -개소당 150억원 · 어항부문:100억원 (어항건설사업비) · 어촌부문:50억원 (Matching Fund)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29억원	◦ 총 2,932억원 - 개소당 500억원 · 국가어항부문:300억원 · 민자유치부문:200억원 ※ 대포항 372억원 - 기본및실시설계비 60억원	◦ 총 702억원 -개소당 60억원 · 어촌부문:60억원 (Matching Fund) ·)국비:30억원 ·)도비:30억원 - 기본설계및홍보비등 36억원
주요내용	◦ 배후어촌과 연계되는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어항과 어촌의 특색을 연계하여 통합개발	◦ 어항자체로 관광수요가 높은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관광기능을 보강	◦ 어촌 자체만으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개발

2-9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 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 5일 근무, 웰빙문화의 확산,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있어 체험중심의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홍보 정책 추진 필요
-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해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오프라인 및 대중화된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극적 정보 제공
- 또한, 어촌지역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포상금 지급, 컨설팅 제공, 도시-어촌교류축진 및 어촌전통문화재현(체험) 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

나 추진실적

- 체험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주민교육 등 체험마을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지원('10년 70명)
* 마을당 최고 5년간 월 120만원 지급(국고 50%, 지방 40%, 자담 10%)
- 마을주민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요인 해소, 마을에 적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전문가) 제공('10년 20명)
-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 및 여타 마을에 운영기법을 제공
*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10개마을 선정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 어촌체험마을별 종합적인 안내 및 예약 등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10년까지 92개 마을)
-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추진(연중)
 - '아름다운 어촌 100선', '어촌체험 안내책자', '어촌 찾아가기 행사'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로 어촌관광 Boom-Up 조성
 - TV, 신문 등을 통한 어촌 및 체험마을 홍보(연중)
 - 어촌을 배경으로 "소설"을 창작하여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산
 - "해안선 자전거 자전거 대행진" 개최
 -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 개최 및 우수마을 포상금 지급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전문가) 제공(20명)
 - 초·중등학생 체험학교 개설 및 바다관광 해설사 육성
 - 바다콘서트 등 축제 및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지원
 - 도시-어촌 자매결연체결 및 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 추진
 - 어촌 1박2일 여행코스 소개 및 우수어촌체험마을 QR코드 제작
 - 어촌홍보 캐릭터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어촌체험 미관특화 시범사업 추진
 - 도시지역 어촌홍보 놀이관 운영 등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

2-10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어항의 기본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 취약시설의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내구연안 증진 및 사전 재해예방
- 국가(지방)어항내 침적폐기물 및 부유물질을 수거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유지 및 어선입출항 안전성 제고로 어업활동 지원

나 추진실적

■ 국가어항시설 안전점검

- 국가어항 기본시설물 안전점검은 '05부터 「어촌·어항법」 제 56조 및 제58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위탁관리
 - 정기검사는 상·하반기 국가어항(109개)의 방파제·안벽·물양장 등 기본 시설물에 대한 육안검사 등 외관조사 실시
 - 정기검사결과 노후화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시설물에 대한 수상·수중조사, 멀티빔 측량조사 등 정밀검사
- 점검대상 시설물(국가어항 109개항 기본시설물, 2011. 10월말 기준)

계	외곽시설						계류시설								기타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도제	호안	돌제	물양장	안벽	선양장	선착장	부두*	도선장	선류장	부잔교	도로	기타
742	197	17	18	8	123	23	169	3	68	25	18	12	5	24	24	8



■ 어항청소선 운영

- '95년부터 「어촌·어항법」 제35조, 제58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항청소선 9척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운영
 - 어항청소선 9척에 대하여 5년 단위로 계약 갱신
 - * 운영현황(총9척) : 15톤급 7척, 99톤급 1척, 134톤급 1척
 - 원거리 어항간 정화 및 관리를 위해 다목적 어항관리선(134톤) 1척 건조 완료('11.5)

다 향후 추진계획

- 이동거리가 멀고 수심이 깊은 동해안의 원거리 어항간 정화 및 관리를 위해 다목적 어항관리선 1척 추가 건조 : '11~'12년(2개년)
 - 주요제원 : 120톤급 바지형, 엔진 500마력 2기, 최대속력 12노트, 승무원 6명
 - 건조, 시공 사업비는 43억64백만원 예상
 - * 120톤급 선박 총 건조비 : 4,364백만원 = 1차년도 900 + 2차년도 3,464
 - 건조 완료 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관리(동해안 배치예정)

참고자료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현황

■ 개 요

- 설립일 : 1987. 6. 3
- 설립목적 :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홍보 등의 효율적인 수행
- 근거 : 어촌·어항법 제57조
- 대표자 : 방기혁('11.8.8~'14.8.7), 직원수 64명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5,943	23,969	21,232	28,922	34,700
자체예산	12,856	20,218	17,457	25,119	29,539
국고보조금	3,087	3,751	3,775	3,803	5,161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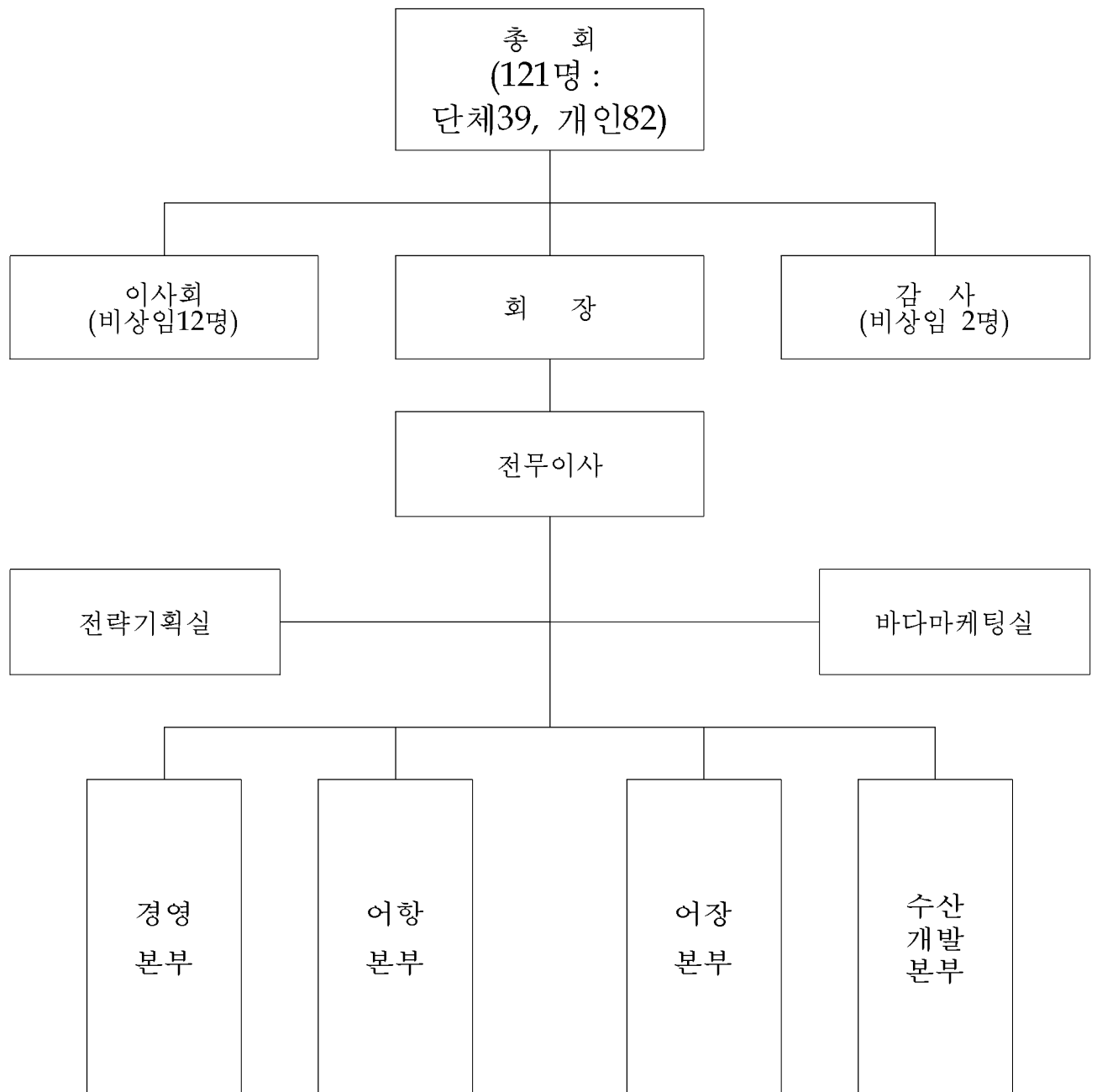
-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술용역
- 어항 및 연안 어장 등 정화·정비·조사
- 바다 관광 진흥 및 문화 창달



▣ 정부위탁사업(국고보조)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청향업무를 위해 어항청소선(9척) 관리운영
- 109개 국가어항 시설물(742개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기구 및 조직 : 4본부 2실



어항청소선 운영현황

■ 목 적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수역내 폐기물 정화로 어항환경 개선 및 어선입출항 안전성 제고로 어업활동 지원

■ 위탁근거 : 「어촌·어항법」 제35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제2항

■ 선박 제원

○ 척수(규모) : 15톤급 7척, 99톤급 1척
134톤급 1척(총 9척)

○ 수탁일

- 15톤급 : '95. 7.10(3척), '96. 7.10(4척)
- 99톤급 : '03. 12.31
- 134톤급 : '11. 5.2

○ 주요장비

- 씨크레인(침전물 수거)
- 다관절크레인(침전물 수거)
- 메쉬스코프(부유물 수거)
- 끌 계(해저 폐어구 수거)
- 바 지(수거쓰레기 운반)



<15톤>



<99톤>



<134톤>

■ 주요 기능

- 어항내 부유물 수거 및 어항내 침전 폐기물 수거
- 어항내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제거

■ 선별 청소구역(9척)

선 명	정박항	인수일	건조일	청소관할구역	재산등재
크린오션1호(99톤급)	인 천	'03.12	'03.10	서해안 어항	서해어업 관리단
크린오션2호(134톤급)	여 수	'11. 5	'11. 4	남해안 어항	
어항901호(15톤급)	군 산	'96. 7	'94.10	충남 - 전북	
어항902호(15톤급)	목 포	'95. 7	'95. 3	전남 영광 - 해남군	
어항903호(15톤급)	고 흥	'96. 7	'94.10	전남 강진 - 고흥군	
어항904호(15톤급)	완 도	'96. 7	'94.10	전남 여수 - 경남 사천	
어항905호(15톤급)	통 영	'95. 7	'95. 3	경남 통영 - 거제시	동해어업 관리단
어항906호(15톤급)	포 항	'96. 7	'94.10	부산 다대포 - 경북	
어항907호(15톤급)	주문진	'95. 7	'95. 3	강원	



2-11

어업인 경영 및 복지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어촌은 탈 어업, 탈 어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
 - 어가인구 감소 및 초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어촌 공동화
 - * 어가 인구가 '09년말 기준 184천명으로 '95년 370천명에 비해 50% 감소
 - 40세 미만 경영주는 급감, 60세 이상 경영주는 점차 증가
 - * 고령화 : ('09)전체 69,379어가, 40세미만 3.4%(2,359), 60세 이상 51%(35,374)
- 생산시설 규모화, 양식어업 성장, 어업 구조조정 적응과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진행
 - 대형 어선주 및 대규모 양식어업을 운영하는 고소득 어업인 등장
 - * 대형선망, 권현망 어업발달, 제주지역 육상 수조식 넓치 양식의 경우 연간 평균 10억원 이상 매출
 - 어업의 구조조정이 어가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어업소득 계층 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 고령어업인은 타 직업 전환보다는 단순 채취어업으로 생계유지할 가능성
 - * 청장년층은 이전보다 규모화된 생산시설 경영으로 전업어가 성장 전망
 - 입지유형별로는 도시 근교형과 연안 촌락형에 비해 취약지역형의 소득 불평등이 큰 것으로 보임

나 추진실적

- FTA 및 DDA 협상 등으로 어업소득기반 악화,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수산업 특성을 반영한 어업인 복지정책 추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추진

- ('08)432백만원(16개소) ⇒ ('09)810백만원(30개소) ⇒ ('10)900백만원(30개소) ⇒ ('11)987백만원(47개소)
- 어업인 복지포털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일자리, 교육, 복지)를 제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어업인 복지포털 시스템("행복海") 구축 완료 ('08.12.29)
- 오프라인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개설 ('09.3.23)
 - * 본부 1개소(서울), 지역 3개소(부산, 목포, 강릉)

다 향후 추진계획

■ 어업인 복지포털 시스템 운영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열악한 어업인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정보(일자리, 교육, 복지)를 제공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온라인시스템(행복海 안정적 운영, 시스템운용 활성화, 대외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운영 극대화
-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역할확대
 - 지역센터 4개소(부산, 목포, 강릉)활용·홍보, 귀어·귀촌사업 연계

■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인 기자재 이동 수리소 확대 운영

전문 수리업체가 취약 어촌을 직접 방문, 기자재 정기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수산사무소 등)에서 이동수리소 운영

- '08년부터 시작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의 호응도가 좋고 동 사업의 확대요구에 따라 '12년도 57개소 유지
- ###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맞춤형 어촌복지정책 지속추진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

2-12

어업정책보험사업 확대로 안정적 어업경영기반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04년부터 시행해 온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 보험재정 적자 누적, 영세어업인의 낮은 가입률 등의 문제 노정

* 보험재정수지 악화 : '10. 12월말현재 699억 적자상태

나 추진실적

-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 제도개선
 - 연체금 부과단위 계산방법 개선 및 연체요율 인하 등('09.5)
 - * 제도개선내용 : 연체금 계산방법(분기별 → 월별), 연체요율(30.0% → 28.8%)
 - 어선원보험 단체가입할인제도 도입('10.4) 및 휴향환급금 산정방식 개선 등('10.10)
 - * 제도개선내용 : 휴향환급금 산정방식 개선(월할 → 일할), 단체가입 할인(2~5%)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률 증가
 - 보험가입 실적('11.10) : 가입대상 71,659척(선원수 121,303명)중
 - * 어선원 보험 : (5톤이상 당연가입) 78.4%('10년말 76.9%), (5톤미만 임의가입) 5.3%
 - * 어선 보험(임의가입) : 11.7%('10년말 9.7%)

다 향후 추진계획

-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서비스 강화 등 어선원 보험 내실화

- 소형어선 국고지원 및 당연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률 제고 추진
 - 5톤미만 소형어선 국고지원을 확대(70% → 80%) 및 누적결손금 분할 지원('10년부터 누적결손금 연차별 지원)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 추진(5톤이상 → 1톤이상)
- 소형어선 전용 어선보험상품 개발 및 어선보험 선외기 실손보상 특약 가입 허용 추진
- 보험수지상등을 위한 적정 보험요율 인상 추진(산출된 적정요율 반영)
- 장기요양환자 및 어선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점검 등 대어업인 서비스 강화



참고자료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현황

어선원 보험

(단위 : 척, %)

톤급별	'10. 12			'11. 10			보험료 연체액(자담분) ('10.12.31현재, 백만원)		
	대상 ('08.12 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8.12 기준)	가입	가입률 (%)	계 (자담분)	'10년분	과년도분
5톤미만	65,882	3,013	4.6	62,959	3,362	5.3	402	122	280
10톤미만	5,662	4,043	71.4	5,703	4,046	70.9	3,385	541	2,844
30톤미만	1,607	1,436	89.3	1,621	14,46	89.2	2,434	424	2,010
50톤미만	431	372	86.3	376	377	100.0	1,511	228	1,283
100톤미만	843	717	85.1	741	718	96.9	4,414	857	3,557
100톤이상	293	228	77.8	259	235	90.7	1,097	293	804
계 (5톤이상)	74,718 (8,836)	9,809 (6,796)	13.1 (76.9)	71,659 (8,700)	10,184 (6,822)	14.2 (78.4)	13,243 (12,841)	2,465 (2,343)	10,778 (10,498)

- 주) 1. 가입대상 : 수산통계연보상 어선등록척수 (지도단속, 시험실습, 내수면, 원양어선 등은 제외)
 2. () : 당연가입대상 및 가입율
 3. 가입 어선원수(명) : ('08.12) 33,999(31,138) → ('09.12) 33,674(29,642) → ('10.12) 34,899(30,221) → ('11.10) 36,670(31,344)

어선 보험

(단위 : 척, %)

톤급별	'10. 12			'11. 10			보험료 연체액 ('10.12.31현재, 백만원)		
	대상 ('08.12 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8.12 기준)	가입	가입률 (%)	계	'10년분	과년도분
계	74,718	7,233	9.7	71,659	8,399	11.7	-	-	-
10톤미만	71,544	4,971	6.9	68,662	6,075	8.8	-	-	-
20톤미만	806	429	53.2	812	447	55.0	-	-	-
20톤이상	2,368	1,833	77.4	2,185	1,877	85.9	-	-	-

2-13 수산업경쟁력 제고와 어촌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촌후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1981~2011년까지 수산업경영인 19,735명을 선발, 5,202억원 지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계		1981~2010		2011계획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9,735	520,211	18,750	469,741	985	50,470
일반후계자	16,479	339,447	15,753	307,677	726	31,770
전업경영인	3,066	162,759	2,850	148,309	216	14,450
선도우수경영인	190	18,005	147	13,755	43	4,250

* 어업인후계자(1981~) → 전업 경영인(1992~) → 선도 경영인(1995~)

* 인원비율 : 어업인후계자 84%, 전업경영인 15%, 선도경영인 1%이내 차지

* 지원액 : 어업인후계자 66%, 전업경영인 33%, 선도경영인 1%이내 차지

- 어가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력의 양적·질적 저하

- 어가인구가 '95년 370천명에서 '10년 171천명으로 약 54% 감소
- 40세미만 경영주는 급감하는 반면, 60세이상 경영주는 급증
 - * ('95) 40세 미만 14.5%(15,174), 60세 이상 25.6%(26,710), 전체 104,480 가구
 - * ('09) 40세 미만 3.4%(2,359), 60세 이상 51.0%(35,374), 전체 69,379 가구

- 그러나, 현행 수산전문인력 양성체제는 과거 증산과 정부주도 위주의 틀 안에서 큰 변화 없이 미세조정만 하여 답습

- 주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지식과 수산시책 홍보위주로 운영



나 추진실적

- 수산업경영인 단체 중심의 교육훈련지원으로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 '09년부터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주관의 임원 리더십교육과 지역별 현장실용화 교육을 추진(2억원)
- 신지식인 어업인 관리강화를 통해 우수 어업인 양성 기반 마련
 - '07. 5월 신지식어업인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고 '08년부터 지원 예산확보(1억원), 학술대회 개최, 현장 교육 강사 활용 등 추진
- 경쟁력 있는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 수산계 대학에서 현장 중심의 업종별 단기전문교육 추진
 - * 지원대학 : 전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군산대학교, 한동대학교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3.29)
 - 하위법령인 시행령(9.30), 시행규칙(10.4) 시행

< 수산업 진입 이전단계 >

- 수산전문인력 조기양성을 위한 수산계고교 특성화(예산 20억원) 및 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과 홍보지원(0.7억원)

'08년부터 완도 수산고 등 9개교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 현장연수, 기자재 확충, 자격증 취득 등을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 800백만원(학교별 특성화 사업)
- 공통프로그램 운영 : 1,200백만원(승선실습훈련, 현장훈련, 잠수자격취득)
- 사업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워크숍 개최 : '11. 11월

< 수산업 진입 단계 >

- **젊은층 어촌유입을 위해 신지식어업인, 선도경영인 등을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20명)와 창업지원센터(5개품목)에 대한 지속지원**
* (창업어가후견인제) '09)1.2 → '10)1.2억원, (창업지원센터) 국립수산과학원
- **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관리 강화**
 - 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관리 업무를 시·도로 이관('09. 5월~)
 - '11년도 수산업 경영인(985명)에 505억원의 사업육성자금 지원('11. 3월~)
- **귀어·귀촌 정책 추진으로 신규인력 유입(수산사무소, 참고자료3)**
 - 인원 및 지원규모 : ('10) 60명, 68억원 → ('11) 40, 44
* 1인당 : 창업자금(2억한도), 주택구입비(4천만한도) 융자지원

< 본격 경영단계 >

- **수산업경영인 자질함양 교육지원(2억원) : '11. 4~11월**
 - 수산업경영인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실용화 교육 등 자체 교육프로그램 추진(12회, 1,000명)
- **신지식어업인 등 우수 어업인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1억원) : '11.11월**
 - 신지식인 학술대회 지원 등 포함
- **어촌지역 개발리더 육성사업을 새로 추진(예산 0.8억원)**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와 어촌 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어촌지역 개발리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Pool 구축

* 어촌지역개발리더로 양성후 어촌지역 정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역할 부여

 - 단계별(3단계)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40명) : '11. 8~11월
 - 과정 우수 수료자에 대해 해외 선진지 연수(20명) : '11.11월



■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운영지원(예산 1.35억원)

지자체, 대학측과 협의하여 교과과정 개선, 대상학교 확대(3개교→4개교), 엄정한 대상자 선발, 사후평가절차 도입 등 운영방안을 개선

-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지원지침 마련 및 시행 : '11. 2월~

■ 최고 수산업전문가과정 운영지원(예산 1억원)

지역거점 대학에 지역별 차별화된 품종별 단기(2개월) 전문가과정을 운영하여 정예 전문인력 양성

- 최고 수산업전문가과정 지침마련 및 사업승인 : '11. 3~8월
- 4개교 사업 추진 및 점검 : '11. 9~11월

다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한국 수산업 발전 목표(생산 18.1조원, 수출 100억불) 달성 등을 소수정예의 인력이 주도

- 전략품목 생산에 46천명 새로운 국내외 일자리 창출 예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의 수산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우리 농수산업의 글로벌화 견인

- (경영체) : 1만명을 정예화하여 생산의 70%(12.7조원) 담당
* 신규인력 7천, 기존인력 3천명, 연 생산 1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기술 인력 18천명 육성 및 현장 투입 시스템 구축
- (산업인력) : 산업인력 52천명 교육 및 수급 시스템 구축
* 국내 인력 19천명, 외국인 인력 33천명

참고자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현황**개 요**

- 설립 일 : 1991. 10. 22.
- 설립목적 : 수산업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영어기술의 과학화·경영의 합리화·유통의 선진화·어민의 권익신장·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도시와 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에 기여
- 근 거 : 민법 제32조
- 대표자 : 김장현('10. 1. ~ '12. 1.), 직원수 5명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2,666	1,186	1,223	1,142	1,300
자체예산	216	936	973	502	620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250	250	200	560	560
기타지원금	2,200(회관)		50(마사회)	80(마사회)	120(마사회)

주요기능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어업기술 교류
- 수산업 유통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어업의 여론조사와 봉사사업
- 수산에 관한 강습, 강연 및 전시회 개최

회원자격

- 어촌후계인력(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확정된 자로서 회원으로 등록된 수산업 경영인



■ 한수연 지역별 회원현황

< 조직 현황 : 12개 도연합회 13,990여명 >

도연합회	회원수	시군연합회(회원수)			
· 부산광역시	328	· 동 부	66	· 남 부	70
		· 서 부	67	· 기 장 군	125
· 인천광역시	365	· 용 진 군	222	· 강 화 군	143
· 울산광역시	102	· 울 산 시	102		
· 경 기 도	183	· 평 택 시	46	· 화 성 시	100
		· 김 포 시	37		
· 강 원 도	938	· 속 초 시	148	· 강 릉 시	177
		· 삼 척 시	141	· 동 해 시	100
		· 고 성 군	262	· 양 양 군	110
· 충청북도	64	· 북 부	37	· 남 부	27
· 충청남도	984	· 당 진 군	27	· 서 산 시	103
		· 보 령 시	314	· 홍 성 군	57
		· 부 여 군	28	· 서 천 군	152
		· 태 안 군	286	· 논 산 시	17
· 전라북도	800	· 고 창 군	287	· 군 산 시	150
		· 부 안 군	338	· 정 읍 시	25
· 전라남도	5,858	· 목 포 시	105	· 장 흥 군	295
		· 강 진 군	87	· 진 도 군	399
		· 고 흥 군	585	· 함 평 군	63
		· 무 안 군	147	· 해 남 군	483
		· 보 성 군	91	· 여 수 시	566
		· 순 천 시	77	· 영 광 군	264
		· 신 안 군	782	· 영 암 군	26
		· 완 도 군	1,888		
· 경상북도	737	· 영 덕 군	163	· 울 릉 군	141
		· 경 주 시	86	· 울 진 군	151
		· 포 향 시	196		
· 경상남도	2,831	· 진 해 시	222	· 거 제 시	468
		· 통 영 시	968	· 고 성 군	230
		· 마 산 시	312	· 남 해 군	360
		· 하 동 군	75	· 사 천 시	169
		· 창 원 시	27		
· 제 주 도	800	· 제주동부	62	· 제주서부	364
		· 서귀포동부	89	· 서귀포서부	285
계		13,990			

참고자료

수산 신지식인 선정현황

연도별 선정 현황

(단위 : 명)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0명	20	36	14	(미선정)	9	10	11	12	9	10	11	8

시 · 도별

(단위 : 명, %)

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0명 (100%)	2 (1)	10 (7)	2 (1)	10 (7)	10 (7)	5 (3)	3 (2)	11 (7)	15 (10)	37 (25)	9 (5)	29 (19)	7 (5)

※ 전남 · 경남이 44% 점유

분야별

(단위 : 명, %)

계	유통 · 가공	해면 증양식	내수면 양식	어구 · 어법	해운 · 항만	제도 개선	비고
150명 (100%)	33 (22)	72 (49)	15 (10)	24 (16)	4 (3)	2 (1)	

※ 해면증양식 · 유통가공 분야가 73% 점유

연령별

(단위 : 명, %)

계	30대미만	31~40	41~50	51~60	60이상	비고
150명 (100%)	2 (1)	48 (32)	66 (44)	32 (21)	2 (1)	

※ 30~40대 연령층이 77% 점유

2-14 수산계 학교 교육의 특성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계학교 취학학생 대부분이 양적·질적 수준 저하
 - 희망에 의한 취학율이 아닌, 인문계학교 취학 미달 자가 대부분으로 수산전문교과에 대한 집중력 및 이해능력 저하
- 일반대학에서 수산관련 학과(5개 대학)를 두고 있으나 학문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은 전무
 - 농업분야는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등 다양한 전문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산분야는 전무한 실정

나 추진실적

- 2008년부터 어촌을 선도 해 나갈 정예인력 구축방안의 하나로 수산계 고등학교(전국 9개교)에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지원
 - * 연도별 지원현황 : ('08) 2,200백만원 → ('11) 2,000백만원
 - 현장중심의 공통프로그램 12억원, 학교자체프로그램 8억원 지원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
 - 통합프로그램 : 승선실습, 산업잠수, 산업체 근무 등
 - 학교자체프로그램 : 현장체험, 해외연수, 수상레저프로그램 등

-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명칭변경, '10년부터 수산양식학과(정원 30명) 시범운영
 - 신입생 모집홍보를 위한 마사회자금 확보 : 7천만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창업 및 취업 등과 연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육성
 - 승선예비역 제도도입, 산업체별 취업설명회를 통한 취업알선, 창업 희망 시 자금지원 등으로 어촌에 조기 정착 유도
- '12년 한국농수산대학 이전(전주시), 수산분야 현장실습 등 연계성을 감안하여 수산과학원에 분교 형태로 수산학과 증설 검토
 - 연차적으로 어업학과, 수산가공학과 등 전문학과 증설 운영 예정
 - * 수산양식학과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여 학과증설 방향 조정
 - '12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제반사항 추진(상반기)
 - 입학생(20~30명) 전문교육에 필요한 교원확보 및 현장실습 등에 대해 한국농수산대학 측과 협의 및 지원
- 정부부처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계획에 따라 완도수고 등 수산계고교 9개교에 대한 부처중심의 특성화 학교로 운영 검토



참고자료

수산계고교 취업률

(단위 : 명)

학과 졸업년도	졸업생	취업		진학		군입대	기타 (미취업등)
		수산계	비수산	수산계	비수산		
계	970	83	89	230	454	15	99
완도 수고	131	10	1	43	69		8
포항해과고	315	21	17	78	153	2	44
인천해과고	289	27	57	70	132	0	3
충남해과고	97	4	4	20	40	5	24
경남해과고	39	12	1	11	5		10
구룡포중고	58	4	6	2	36	6	4
울릉 중고	11	2		2	5	2	
여천 실고	7	1	1		3		2
압해고	23	2	2	4	11		4

- '10년도 졸업생 970명중 수산계 취업인원은 83명, 수산계 진학인원은 230명으로 32.3% 취업하였음
 -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추진으로 졸업생은 '09년도 867명에서 '10년도 9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 수산계 취업은 '09년도 57명에서 '10년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2-15

FTA/DDA 등 개방 확대에 대응, 수산분야 직불제 확충**가 현황 및 문제점**

- WTO/DDA 협상결과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일부감축 또는 폐지에 따른 직접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및 국정과제로 선정('07.12)
- 농업분야는 UR이후 소득감소 충격 완화를 위하여 '97년부터 직불제를 도입하여 현재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통합·개편 추진하고 있음으로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직불제 확대에 준하는 지원대책 마련 필요
- '10년도 수산직불제현황(65억)
 - FTA 피해보전직불 15억(한미FTA 비준시)
 - 한미FTA 이행으로 수입 수산물이 급증하여 국내산 수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품목의 85% 보전
 - FTA 폐업지원직불 50억(한미FTA 비준시)
 - 한미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한 수산물의 국내 가격이 기준 가격으로 하락하는 경우, 잔존가치 등을 계산, 폐업자금 지원

나 추진실적

- 수산보전제 방안마련('07.6.28)
 - 생분해성 어구, 친환경배합사료, 친환경부표, 폐어구수거,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추진('08~'10)
 - '08년 : 조건불리지역 실태 기초조사(개념, 대상, 외국사례 등)



- '09년 : 어업경영체 선행연구,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 * 수산직불제 추진 : 新 수산정책 30대 프로젝트로 선정('10.1)
- '10년 : 어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
- 농어업경영체 등록 법적근거 마련(법 제4조)
 - 법('09.4.1), 시행령('09.10.8), 시행규칙('09.12.9) 제정 · 공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시행
 - 농수산물 · 식품 안정적 공급, 농어촌사회 안정 및 국가발전
-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법적근거 마련(법 제12조)
 -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 * 법 개정 완료('11.3.9) 및 시행일('11. 9.10)

다 향후 추진계획

- 어업분야 경영체등록제 조기추진('12년~)
 - 등록대상 : 70,400(어가 69,400 + 법인1,000) / 소요비용 : 24억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기추진
 - 시범사업('12-'14) : 46개도서, 51개어촌계, 4,415어가(18억)
 - 본 사업('15~) : 345개도서, 461개어촌계, 2만7천어가(110억)
-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 · 추진하되, 특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우선 시행하고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는 현재 실시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효과 등을 평가한 후 추진

2-16

미래지향적 수산연구기술개발(R&D) 추진**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기업 육성 추진
 - 수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특정수산기술개발 추진('94년)
 -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00년)
- 수산특정연구과제(어장환경, 어업자원기술, 수산증양식, 수산가공유통 분야)와 중소·벤처기술개발 과제로 분류 추진
 - 수산특정과제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50~75% 이내 지원 ('10년 : 74억원)
 - 중소·벤처기술 :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75%이내 지원 ('10년 : 25억원)
- 그 동안 사업지원을 소규모 분배지원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에는 한계 노출

나 추진실적

- 수산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10까지) : 1,282과제, 1,032억원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 1,118과제, 868억원
 - 수산중소벤처지원사업 : 164과제, 164억원
- 주요성과
 - 기술이전 : 45건, 특허출원/등록 : 316건/183건, 논문발표 : 1,251건



다 향후 추진계획

-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산물의 세계 일류상품화
 -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원가절감 기술 및 고소득 품목의 양식기술 개발, 양식종묘산업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 등
 - * 10대 품목 : 넙치, 참치, 해삼, 뱀장어, 전복, 굴, 김, 미역, 다시마, 천일염
- 고부가가치의 첨단 생명공학 산업으로서 수산생물 종자산업을 신수산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전복·넙치 등 전략품종 중심의 신품종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수산업 육성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가절감 및 자동화 기술 개발
 -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어선설비의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장치 개발
- 수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 수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소재, 화장품 소재, 의약품 소재 및 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
- 생산중심에서 수산식품산업 및 친환경 녹색성장 중심의 신성장동력 육성 기술개발 확대·지원
 -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신기술 개발이 미흡함에 따라 새로운 신성장동력 전략품목 육성 필요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등과 연계,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 R&D 투자계획 수립

수산기술개발사업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수산기술개발 과제 추진현황('94~'10)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94~'04	'05	'06	'07	'08	'09	'10	계
합계	과제수	신규	292	25	26	41	35	24	34	477
		계속	548	48	51	40	34	43	29	793
		소계	840	73	77	81	69	67	63	1,270
	예산	57306	5,650	6,150	7,150	8,000	9,000	9,900	103,156	
수산특정	과제수	신규	331	25	19	28	21	17	29	470
		계속	422	48	51	35	34	30	26	646
		소계	753	73	70	63	55	47	55	1,116
	예산	50406	5,650	5,650	5,650	5,500	6,500	7,400	86,756	
중소벤처	과제수	신규	45	-	7	13	14	7	5	91
		계속	42	-	-	5	-	13	3	63
		소계	87	5	7	18	14	20	8	159
	예산	6900	-	500	1,500	2,500	2,500	2,500	16,400	

* '11년 사업비(114억원, 포기사업비 5억원 포함) : 신규 15개(26억원), 계속 개(84), 관리비 등(11)

수산기술개발 사업 추진성과

구 분	논문	특허출원	특허등록	학술대회	기술이전	기술료(원)
합 계	1,251	316	183	2,171	45	755,209,577
수산특정	1,232	292	165	2,127	45	76,261,563
중소벤처	19	24	18	44	-	678,948,014

수산기술개발 연도별 선정 비율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접수과제	160	90	118	133	130	65	79
	선정과제	46	25	26	28	35	24	34
	비율(%)	28.8	27.8	22.0	21.1	26.9	36.9	43.0
수산특정	접수과제	120	90	92	133	92	51	66
	선정과제	40	25	19	28	21	17	29
	비율(%)	33.3	27.8	20.7	21.1	22.8	33.3	43.9
중소벤처	접수과제	40	-	26	-	38	14	13
	선정과제	6	-	7	13	14	7	5
	비율(%)	15.0	-	26.9	-	36.8	50.0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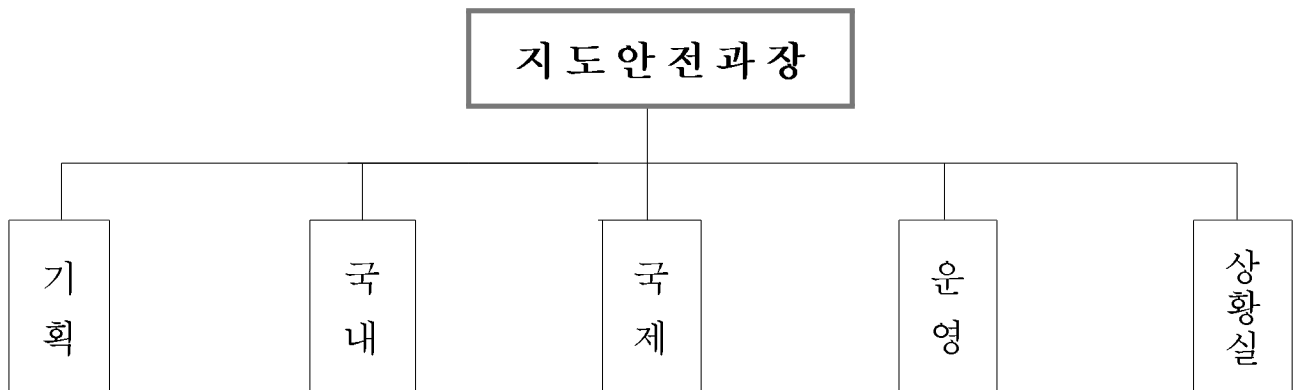
주) 1. 2007년 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접수

지 도 안 전 과

1. 일반현황	157
2. 주요업무현황	158
2-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18
2-2. 어업질서 확립 수단 확대 및 자율어업질서 유도	19
2-3.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 안전조업대책 추진	19
2-4. EEZ 조업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21
2-5.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예방대책	18
2-6. 국가 어업지도선 확충 및 현대화	21
2-7.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28
2-8. 과징금 부과 제도개선 추진	29
2-9. 중복 승선조사 방지 「OK 스티커」 시행	191
2-10.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12
2-11. 어선안전점검요원 폐지	15
2-12. 종합상황실 운영	18

1. 일반 현황

□ 조직



□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 획	국회, 예산 및 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국 내	불법어업 지도·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 어업관리단 지도 감독
국 제	한·중/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단속, 접경해역 어로보호
운 영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상황실	연근해 출어선 안전조업지도, 수산관련 재해업무 총괄

□ 정 원

구 분	계	고공단	3·4~4급	4·5~5급	6~7급	실무관
정 원	14	-	1	5	7	1
현 원	14	-	1	5	7	1

2. 주요 업무 현황

2-1 어업지도 단속 내실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강력한 단속에도 무허가, 어구어법 위반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 지속 증가
 - 불법 유형으로는 무허가, 어구어법, 허가사항 등이 대부분이며, 업종으로는 연안자망, 연안통발의 위반이 많음
 - * 단속실적 : ('08) 4,449 → ('09) 4,868 → ('10) 5,085 → ('11.9) 2,458
- 한·일간의 조업질서는 정착되어가는 반면, 중국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지속적으로 자행
 - 일본은 자국 어업인 보호 이유로 우리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강화
 - * 우리어선 일본피랍 현황 : ('08) 18척 → ('09) 12 → ('10) 13 → ('11.10) 10
 - 중국어선은 우리의 단속과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내 위반조업 성행
 - * 중국어선 단속현황 : ('08) 432척 → ('09) 381 → ('10) 370 → ('11.10) 294

나 추진실적

- 「2011년 어업질서 확립대책」 수립·시달('11. 1)
 -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 자원남획형,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형 어업에 대한 집중단속
 - 주요 수산정책 기능 지원 및 어업지도·단속 체제 개편

-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및 대국민 홍보('11. 5, 10월)
 - 봄철(5월), 가을철(10월) 각 한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 불법어업 일제단속 대국민 홍보포스터 등 제작 배포(각 3,000부, '11.10)
- 지도단속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
 - 전국 어업질서확립 평가 및 대책회의('11. 3)
 - 전국 어업감독공무원 합동워크숍 개최('11. 8)
-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체제 개편
 - 어업지도사무소를 어업관리단으로 명칭 변경('11.6.15)
 - 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역·업종간 조업분쟁 적극 해소, 불법 양식 등 단속공무원의 역할 및 기능 확대
- 불법어업 행정처분제도를 여건변화 등에 맞게 정비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어업의 1.5배 과중)을 어업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등 규제완화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개정('11.10.28)

다 향후 추진계획

- 불법어업 행정처분제도를 여건변화 등에 맞게 정비
 - 어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어업소득,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현행 최저 1만원, 최고 19만원)

* 연구용역(5~9월)결과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12년)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질서 확립
 - 일본 EEZ 입어하는 어업인 대상 교육 강화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활용한 입어절차 등 제반 준수사항 이행 지도

2-2 어업질서 확립수단의 확대 및 자율어업질서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어업은 강력한 단속에도 감소하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이며, 어업인 자율적인 어업질서는 정착되지 못함
 - 불법어업 단속실적 : ('09년) 4,868건 → ('10년) 5,085건 → ('11.9) 2,458건
- 자율 어업질서 유도 프로그램에 대한 어업인 참여율 저조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신고실적('10년 23건)
 -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단속 참여(700척의 20%인 143척)
- 불법어업의 일률적인 단속 및 단속과정의 중복 승선조사로 어업인 조업불편
 - 불법어업 적발시 현장상황(긴급피항, 기관고장, 긴급후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단속 실시
 -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어업인 조업 불편 초래
 - 최근 3년간 중복조사는 약 580척으로 전체 3,489척의 17% 차지
-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제도 미흡
 - 포상대상에 어선어업분야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제외, 불법어업 적발단체 감점처리 등 평가항목 불합리

나 추진실적

-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시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단속반 참여
 -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민간자율 감시기능의 실질화 및 자율 어업질서 의식제고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확대(사범처분 → 행정처분 포함), 관계기관 및 어업인 홍보('11.5.6, 고시개정)
- 해역특성에 맞는 불법어업예방 홍보포스터 제작·배포(각 3,000부)

■ 불법어업 단속과정의 어업인 조업불편 해소방안 강구

- 중복 승선조사 방지 「OK 스티커」제도 운영으로 1개월 승선조사 면제(8.1일 시행)
- 생계형 어업자(1톤 미만)의 경미한 위반사항 1차 경고제 도입, 긴급 사유 발생시 해당 어업인에게 조사장소·시간 등 사건조사를 어업인이 선택토록 하여 불편 해소
 - *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농식품부 훈령) 개정(8.19)

■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발굴·선정 및 포상계획 수립('11. 5)

-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1억원)을 통한 어업질서 정착

다 향후 추진계획

■ 불법어업예방을 위한 대어업인 계도 및 홍보 서비스 활동 강화

- 어한기 지역별 집중교육(시·도, 수협 안전조업교육 시 병행실시)
- 홍보동영상 제작(12월까지), 어촌계 및 관련기관 배포·홍보

■ 민간자율의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 프로그램 운영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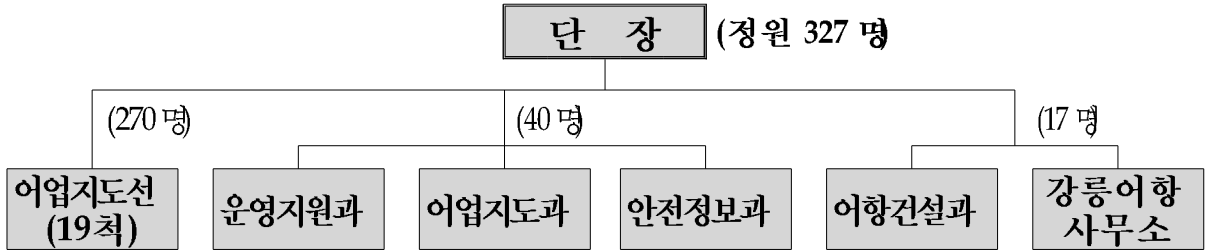
-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자율 감시기능 정착
 - 합동단속 참여확대, 활동성과에 따른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1억원)을 통한 어업질서 정착
 - 불법어업 적발건수가 있는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어선어업 자율관리우수공동체 포함 등 평가항목 현실화
 - 현지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12월)



참고자료

동·서해 어업관리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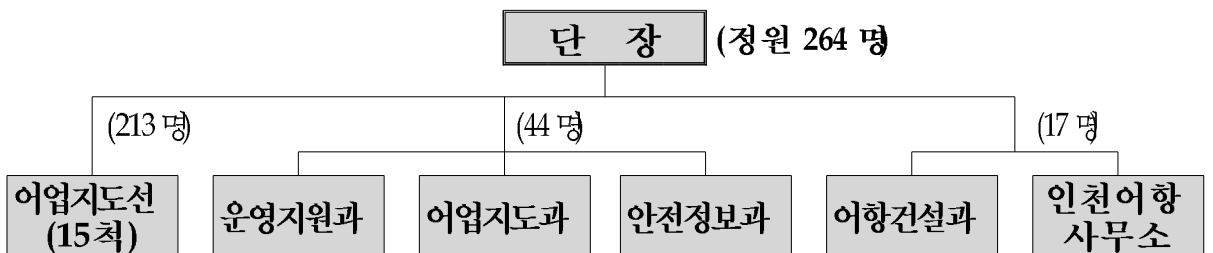
동해어업관리단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327	161	1	2	17	141	166
현원	325	158	1	1	18	138	167
과부족	△2	△3	-	△1	1	△3	1

구분	계	100톤급	200톤급	300톤급	400톤급	500톤급	1,000톤급	2,000톤급
척수	19	2	3	2	1	7	3	1

서해어업관리단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264	132	1	1	16	114	132
현원	262	130	1	1	15	113	132
과부족	△2	△2	-	-	△1	△1	-

구분	계	100톤급	200톤급	300톤급	400톤급	500톤급	1,000톤급	2,000톤급
척수	15	-	2	1	1	9	2	-

국가어업지도선 현황

구 분	선 명	톤수 (톤)	주기관 (HP/개)	진수 년월	시운전속력 (k't)	연 락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위 성 전 화
동 해 관리단 (19척)	무 1호	1,058	2,000×2	'80.04	17.0	0130-523-0101	001-870-762631277
	무 3호	499	3,155×2	'08.10	19.5	0130-523-0103	001-870-762631283
	무 6호	311	1,305×2	'94.11	16.8	0130-523-0106	001-870-763088035
	무 7호	311	1,305×2	'94.11	16.8	0130-523-0107	001-870-763088039
	무 9호	168	3,195×2	'10.04	30.0	0130-523-0109	001-870-763088047
	무11호	168	3,195×2	'10.04	30.0	0130-523-0111	001-870-763088051
	무12호	410	600×2	'88.11	13.5	0130-523-0112	001-870-762631295
	무16호	499	1,100×2	'92.07	14.9	0130-523-0116	001-870-762631318
	무17호	1,208	3,020×2	'92.08	18.5	0130-523-0117	001-870-764036839
	무18호	1,208	3,020×2	'93.08	18.7	0130-523-0118	001-870-761138488
	무20호	499	1,305×2	'97.09	16.4	0130-523-0120	001-870-761137434
	무21호	181	1,415×1	'95.08	14.0	0130-523-0121	001-870-763088055
	무22호	182	1,305×1	'93.09	14.0	0130-523-0122	001-870-763088059
	무24호	183	1,100×1	'91.06	14.0	0130-523-0124	001-870-763721445
	무26호	499	3,155×2	'03.09	19.5	0130-523-0126	001-870-763940834
	무28호	499	3,155×2	'03.09	19.5	0130-523-0128	001-870-763940840
	무30호	499	3,155×2	'04.10	19.5	0130-523-0130	001-870-764136840
	무32호	499	3,155×2	'05.10	19.5	0130-523-0132	001-870-764571071
	무34호	2,180	3,750×2	'98.04	14.5	0130-523-0134	011-870-764681367
서 해 관리단 (15척)	무 2호	1,058	2,000×2	'80.08	17.0	011-1700-8902	001-870-762631279
	무 4호	499	1,100×2	'90.03	15.5	011-1700-8904	001-870-762631287
	무 5호	499	1,600×2	'10.12	16.0	011-1700-8905	001-870-762631291
	무 8호	311	1,305×2	'94.11	16.9	011-1700-8908	001-870-763088043
	무10호	499	1,305×2	'99.06	16.4	011-1700-8910	001-870-644067710
	무13호	403	600×2	'89.07	13.5	011-1700-8913	001-870-762631310
	무14호	499	1,100×2	'90.11	15.0	010-4713-8914	001-870-762631314
	무15호	1,208	3,020×2	'91.08	19.1	011-1700-8915	001-870-764716911
	무19호	507	1,305×2	'96.04	17.2	011-1700-8919	001-870-762631322
	무23호	181	1,470×1	'92.06	14.0	011-1700-8923	001-870-763088063
	무25호	183	1,100×1	'91.05	14.0	011-1700-8925	001-870-763913444
	무27호	499	3,155×2	'03.09	19.5	011-1700-8927	001-870-763940837
	무29호	499	3,155×2	'04.11	19.5	010-4629-8929	001-870-600531285
	무31호	499	3,155×2	'05.10	19.5	010-4731-8931	001-870-764574281
	무33호	499	3,155×2	'06.10	19.5	010-4713-8933	001-870-764678811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업무비교

구 분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관리단 - 동해어업관리단(부산소재) - 서해어업관리단(전남 목포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 3개 지방본부(동·서·남해지방해양경찰청) -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정비창 ○ 해양경찰서 : 13개 ○ 파출소 : 74개 ○ 출장소 : 245개
인 원	○ 591여명	○ 5,830여명(경찰관)
세 력	○ 어업지도선 34척	○ 함정 278척 및 항공기 19대
주 요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나포 등) ○ 해난사고 방지지도(조난선 구조 등) ○ 대어선에 대한 보급(청수·유류 등) 지원 ○ 어업현장의 어업분쟁 조정 ○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승선조사 및 위반사항 확인) ○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사항 이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구난업무 ○ 해상교통안전관리 ○ 해상오염방제 ○ 해양환경보전 ○ 해상치안업무 ○ 국제교류협력
업무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안수역, 동·서해 특정해역, 대화퇴, 한·일 중간수역 및 한 중 잠정조치수역 동중국해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측의 근해어업의 조업해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수역(관할 경비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동·서해 특정해역 ※ 주로 12마일 내측 위주 활동을 하나 <u>어업지도선은 오징어 성어기에는 동해 대화퇴와 동해중간수역에서 우리어선의 타국 배타적경제수역침범 방지 및 나포 예방을 위해 활동</u>
신 분	○ 어업감독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 경찰공무원 및 일반사법경찰관
관할구역	○ 전국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 관할경찰서 권역별 경비구역
연간 출동기간	○ 150-160일정도(해상 2교대)	○ 120일정도(해상 3교대)

어업지도선, 해경경비정, 해군함정의 역할

구분	어업지도선	해경경비정	해군함정
보유현황	○ 104척(본부 34, 시도 70) (250톤 이상 27, 이하 77)	○ 278척 (250톤 이상 53, 이하 228)	○ 보유척수 : 보안사함
주활동해역	○ 현행조업유지수역 -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동중국해 ○ 배타적경제수역(EEZ) - 동·서·남해 EEZ전역 * 시·도지도선 : 연안관할수역	○ 연안수역 - 영해 및 EEZ내측 수역 ○ 항·포구	○ 작전인가구역 - 제1함대사령부(동해) - 제2함대사령부(서해) - 제3함대사령부(남해)
기본업무	○ 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 해상치안 유지	○ 국토(해양영토)방위
업무한계	○ 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어선의 상선등 단속불가)	○ 경찰업무(EEZ법 규정상 외국어선 승선조사 불가)	○ 국토 방위(평시 민간선박 통제 곤란)
주요역할	○ 외국어선의 어획량 확인 등 우리 EEZ 입어조건 등 이행 여부를 위한 승선조사 ○ 주변국 인근수역 우리어선어로보호 및 나포예방 지도 ○ 외국어선과의 어구 및 어업 분쟁 예방, 조정 지도 ○ 원해 출어선에 대한 유류·식수 보급 및 의료지원등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무허가 침범어선 감시 및 나포 ○ 한일/한중어업협정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홍보 ○ 불법어업 지도·단속	○ 영해에서의 밀입국, 선상 폭력, 강절도범 검거 ○ 선박·선원실종사고 수색 ○ 수난구호 및 해상방제업무 ○ 영해, EEZ 경비 및 EEZ 무허가 침범조업 외국어선 나포 ○ 남북 접접해역의 동·서해 특정해역 및 어로한계선 월선 예방	○ 국토방위를 위한 활동 - 관할구역내의 적침투 공격·방어임무 수행 ○ 간첩 및 불순분자 침입 방지
특징	○ 비무장(협정업무수행 원활)	○ 무장(협정업무수행 제한)	○ 무장



불법어업 단속실적

연도별·기관별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 기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9
계	3,102	2,067	3,673	4,054	3,015	3,773	4,449	4,868	5,085	2,458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606	527	416	723	637	954	1,106	875	610	544
해양경찰청	495	234	2,132	2,427	1,624	1,950	2,502	2,948	3,743	1,346
지방자치단체	1,125	904	754	869	841	869	841	1,045	732	568
- 부산광역시	201	117	111	98	116	111	108	88	64	56
- 인천광역시	44	19	19	2	23	11	29	47	27	26
- 울산광역시	3	29	13	21	9	9	8	12	54	9
- 경기도	70	95	66	62	24	34	17	34	31	25
- 강원도	39	49	85	26	14	5	11	46	7	1
- 충청남도	73	103	131	85	80	132	74	50	56	51
- 전북도	168	97	114	120	57	68	79	100	93	72
- 전남도	920	359	303	305	248	141	155	167	203	178
- 경북도	32	61	60	28	23	34	24	22	18	22
- 경남도	397	347	201	137	151	309	305	459	161	114
- 제주도	54	30	22	20	9	15	31	20	18	14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건)

연도 \ 유형	'04	'05	'06	'07	'08	'09	'10	'11.9
계	3,673	4,054	3,015	3,773	4,449	4,868	5,085	2,458
무허가	1,172	1,194	825	1,018	1,288	1,507	2,096	516
조업구역	361	441	261	280	315	441	274	223
허가사항	306	514	361	583	444	275	388	115
어구위반	1,145	1,289	956	833	1,104	984	597	644
기타	689	616	612	1,059	1,298	1,661	1,730	960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지정현황

(단위 : 척)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분	2011년 10월
계	400	600	710	709	계	686
부산	28	38	46	49	부산	49
인천	19	28	37	36	인천	36
울산	14	18	18	18	울산	18
경기	17	21	23	22	경기	22
강원	37	50	54	57	강원	55
충남	41	57	59	67	충북	7
					충남	67
전북	25	40	62	52	전북	52
전남	73	125	144	150	전남	176
경북	42	59	70	65	경북	65
경남	79	128	153	154	경남	94
제주	25	36	44	39	제주	45

* 전남의 경우 여수지역에서 대거 신규 신청, 경남의 경우 연초에 대폭적인 어선 매도·매입으로 관리선을 일부 정리함

* 충북의 경우 올해 7대(내수면)가 신규 지정되었음



2011년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단체 선정 현황

기관별	어촌계·단체명	대표자	비고
계	10개소		
인천 (1)	삼목선주협회	장영문	
강원 (2)	안인어촌계	이원규	
	속초시연승연합회	차상철	
전북 (1)	어청도어촌계	이종관	
전남 (2)	곡지어촌계	김재환	우수
	하도어촌계	김재원	
경남 (2)	초양어촌계	박영환	우수
	창도어촌계	이용조	
제주 (2)	서귀포어선주협회	홍주방	최우수
	한림어선주협회	김상문	

* 선정기준 (시·도지사 추천 → 현장실사 → 심의·의결)

- 40호 이상 어촌계로서 50% 이상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40척 이상으로 구성된 특정지역, 광역단위 자생협회 등의 단체

2-3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 안전조업대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평어장은 서해 접경지역(NLL)과 인접한 국방상 민감한 지역으로 안전조업질서 유지 필요
 -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10.11월)
 - 연평도 NLL 인근 수역에 포사격('11.8월)
 - 꽃게 조업시기(봄·가을)에는 일부 어선들의 경쟁 조업에 따라 조업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는 사례 발생
- 접경수역은 남북한 긴장관계로 인한 지리적 특성상 피랍 등 우리 어선의 안전 우려
 - 대화퇴 수역에서 오징어채낚기어선 '55대승호' 북측에 피랍('10. 8. 8)
- 서해 5도 수역 등 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의 조업질서 확립 및 동해 대화퇴 수역 오징어 성어기에 어로활동 보호 필요
 - 특정해역을 비롯한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면적이 한정되어 어업인 사이에 어장 선점 등 조업경쟁 심화
 - 꽃게 조업시기(봄·가을)에는 일부 어선들이 경쟁 조업에 따른 조업 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는 사례 발생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화퇴 수역에서는 어업지도선 배치 공백기를 틈타 채낚기어선의 조업자제선 이탈 가능성 상존
 - '07년 이후 대화퇴 수역 오징어 어황(漁況)이 저조해 조업어선이 많은 울릉도 수역을 중심으로 지도선 배치
 -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특히 7월~10월) 중국어선 관리를 위해 북한어업감시정 활동 강화가 예상되어 피랍예방 대책이 필요



나 추진실적

■ 성어기간 중 국가 어업지도선 접경수역 배치 안전조업지도

- 꽃게 및 오징어 성어기에 동·서해 접경어장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우리 어선 조업 지도

- 서해 특정해역 저인망 조업기간(9월~익년 5월) : 1척
- 연평어장 꽃게 조업기간(4~6월, 9~11월) : 1척
- 동해 특정해역 오징어 성어기(6. 15~12. 31) : 1척

* 55대승호 피랍 이후 대화퇴 수역에 어업지도선 1척 긴급 배치('10. 8. 8)

■ 접경수역 어장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북한 접경수역 조업어선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 '11. 7. 14 어선법 개정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화(하위법령 개정 중)

■ 연평어장 현지합동 안전조업대책반(T/F) 구성·운영

- 운영기간 : 봄어기(4.1-6.30), 가을어기(9.1-11.30)
- 참여기관 : 인천시, 옹진군, 해군, 해병, 해경, 수협 등 7개 기관
- 주요임무

- 연평어장 출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 유사사태 대비,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

* 수협과 협조, 별도 사무실 마련 추진(금년 가을어기부터 운영)

■ 관계기관 공조체제 강화로 우리어선 보호 및 조업구역 이탈 예방

- 해군, 해경 및 어업지도선 등 경비 세력 간 업무협조를 통해 조업구역 이탈 사전 차단 및 우발사태 발생 대비

다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접경어장에는 어로보호를 위한 국가 어업지도선 배치
 - 특정해역 및 대화퇴 수역에는 성어기별 국가어업지도선 배치로 군·경합정과 협조로 우리어선 월선·피랍 방지활동 강화
- 접경수역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및 월선피랍 예방 강화
 - 서해 5도 등 접경 및 대화퇴 수역에 어로 보호활동을 위한 어업지도선 적정 배치로 조업구역 이탈방지 등 어업질서 확립
 - 서해 연평어장 및 특정해역 : 각 1척
 - 동해 특정해역 오징어 성어기(6.15~12.30) : 1척
 - 대화퇴 수역 오징어 성어기(7.1~10.30) : 1척
 - 특정해역 등 접경수역 출어 어선에 대해 선단 조업과 위치보고 시행 등 조업상황 철저 관리
 - 접경수역 인근 통제소(15개소)를 통한 특정해역,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점검 및 월선방지 현장교육 실시
- * 조업어선 위치 관리(특정해역 1일 3회, 조업자제해역 1일 2회 파악)
- NLL수역 우발사태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이행
 - 국방부에서 발령하는 위기경보에 따라 접경수역 조업어선 긴급철수 등 조업어선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 단계별 위기경보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참고자료

어로한계선 이북수역 어장 현황

어장명칭	설정일/면적	조업조건	비 고
저도어장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제1항제1호)	- 설정 : '73. 4. 21 / 저도300m내 - 1차 : '92. 9. 5 / 저도 800m내 - 2차 : '99. 7. 5 / 저도 1,300m내 (단, 북쪽은 300m내) - 3차 : '06. 4. 7 / 13.9km ² → 총 15.6km ²	- 고성군어선 (근해트롤 근해 통발·중형기선저인망어선 제외) - 4. 1~11. 30 조업	※'06.4.7이전 고성수협 대진 지소 소속어선 (대진·초도어선)
동해북방어장 (제5조제1항제2호)	- 설정 : '01. 7. 2 / 68km ² - 1차 : '04. 2. 18 / 34km ² - 2차 : '05. 11. 2 / 102km ² → 총 204km ²	- 강원도어선 (근해트롤, 중형기선저인망 제외) - 10. 1~익년 3. 31 조업	
연평도주변어장 (제5조제1항제2호)	- 설정 : '69. 2. 25 / 280km ² - 1차 : '89. 4. 13 / 140km ² - 2차 : '92. 9. 5 / 280km ² - 3차 : '04. 2. 18 / 50km ² - 4차 : '05. 5. 21 / 14km ² → 총 764km ²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제5조제1항제3호)	- 설정 : '64. 6. 29 / 275km ² - 1차 : '05. 5. 21 / 93km ² → 총 368km ²		
강화도 서방어장 (제5조제1항제4호)	- 설정 : '92.9.5 / 70km ²	- 3. 1~11. 30 조업	
A어장 (제5조제1항제5호)	- 설정 : '98.6.2 / 12km ² - 1차 : '01.7.2 / 32km ² - 2차 : '11.11.25 / 13km ² → 총 57km ²	- 백령도어선 - 월 15일아내 용진군 어업 지도선 인솔하에 어로	
B어장 (제5조제1항제6호)	- 설정 : '98.6.2 / 10km ² - 1차 : '01.7.2 / 31km ² - 2차 : '04.2.18 / 41km ² - 3차 : '10.1.14 / 51km ² → 총 133km ²	- 대청·소청도어선 - 월 15일아내 용진군 어업 지도선 인솔하에 어로	
C어장 (제5조제1항제7호)	- 설정 : '94.11.11 / 10km ² - 1차 : '05. 5.21 / 47km ² - 2차 : '10. 1.14 / 45km ² → 총 102km ²	- 대청·소청도어선 - 월 15일아내 용진군 어업 지도선 인솔하에 어로	
분지골어장 (제5조제1항제8호)	- 설정 : '01.7.2 / 13km ²	- 주문·불음 아차 서검도어선 - 강화군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	

* 공통사항(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제2항) : 주간에 한하여 출어 허용

접경수역 주요 명칭

구 분	설정배경	법적근거	비고(특징)	
북 한 또 는 러 시 아 와 의 관 계	북방한계선(NLL) <동·서 2개소>	○ 남북한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어선의 보호를 위해 설정한 해상 경계선 ○ '53. 8.30 유엔사령관 <서해 NLL> ○ 정전협정시 <동해 NLL>	○ '53. 8. 30설정 ○ 국방상 경계선	
	어로한계선 <동·서 2개소>	○ 동·서해에 있어서 어로를 할 수 있는 한계선 - 북한과의 인접수역에서 피랍방지를 위해 설정	○ '64. 6. 29 설정 ○ 국내어선 피랍방지	
	특정해역 <동·서 2개소>	○ 국방상 경비 및 어선안전 조업 필요성에 의해 설정 - 어로한계선과 연결하여 정한 일정한 해역	○ '68. 11. 25 설정 ○ 국방, 피랍방지 - 선단편성 조업 - 출어등록 - 위치보고 : 1일 3회 - 어로보호본부 주관 특별교육 이수 의무 <연 1회 2시간>	
	조업자제선 <동·서 2개소>	○ 서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대화퇴해역에서 어로 또는 항해금지를 표시하는 선 - 어로한계선 외측에 북한, 러시아 및 중국 인접수역에서 피랍방지를 위해 설정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의2 ○ 어선안전조업규정 제2조	○ '75. 1. 28 설정 ○ 국내어선 피랍방지 <북한, 러시아, 중국>
	조업자제해역 <동·서 2개소>	○ 어로한계선 외측에 북한과 러시아 인접수역에서 피랍방지를 위해 설정 - 조업자제선과 연결하여 정한 일정한 해역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제3항 ○ 어선안전조업규정 제3조	○ '75. 1. 28 설정 ○ 국내어선 피랍방지 - 선단편성 조업 - 출어등록 - 위치보고 : 1일 2회
외 국 과 의 관 계	특정금지구역 <동·서·남 3개소>	○ 배타적 경제수역중 어업 자원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어업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설정	○ '97. 8. 7 설정 ○ 외국어선 조업금지 ○ 동·서해, 대한해협	

연도별 꽃게 어획량

(단위 : 톤)

연도	전국(A)	서해	인천(B)	연평도	비율(B/A, %)
1970	2,700	2,567	-	-	-
1980	19,734	13,595	-	-	-
1985	23,960	14,488	8,710	-	36.4
1990	23,004	15,298	8,523	188	37.1
1995	17,651	10,591	8,555	465	48.5
2000	12,842	11,532	9,538	3,063	74.3
2001	13,016	12,115	9,918	2,281	76.2
2002	18,659	18,159	14,281	1,649	76.5
2003	9,478	9,076	6,547	1,837	69.1
2004	2,683	2,295	1,390	281	51.8
2005	3,714	3,174	1,587	271	42.7
2006	6,894	4,763	1,989	141	28.9
2007	13,606	11,758	6,209	631	45.6
2008	17,849	15,457	8,163	1,775	45.7
2009	31,302	30,136	14,675	2,767	46.9
2010	33,193	30,528	14,077	2,179	42.9
2011.10	6,092	5,336	1,856	224	30.5

* 자료제공 : 서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

2-4

EEZ 조업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협정 발효이후 한·일간에는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불법조업 개선 미흡

○ 일본 EEZ 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측의 강화되는 조업규제와 단속으로 매년 10여척이 일본에 피랍

* 연간 피랍척수 : ('06) 10 → ('07) 15 → ('08) 18 → ('09) 12 → ('10) 13 → ('11.11) 11

(※ 위반내용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 중국어선은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EEZ 조업을 선호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자행

* 연간 나포척수 : ('06) 522 → ('07) 494 → ('08) 432 → ('09) 381 → ('10) 370 → ('11.11) 396

○ 한·중 양국어선 '11년도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 우리어선 중국수역 입어 : 1,600척 / 64,000톤

- 중국어선 우리수역 입어 : 1,700척 / 65,000톤

○ 한·일 양국어선 '11년도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 우리어선 및 일본어선 입어 : 870척 / 60,000톤(척수와 할당량 동일)

■ 특히, 서해 NLL 주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자원 남획으로 우리 어업인 불만 야기

○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 용인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으로 단속 어려움 상존

- 우리경비정 접근시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등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교묘히 악용



나 추진실적

■ 우리어선의 일본 EEZ 위반조업 예방지도 강화

- 일본 EEZ 조업조건 등 위반방지를 위한 어업인 교육 지속 실시
 -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위반조업 예방을 위한 홍보방송 등
- EEZ 경계수역 침범 방지를 위한 어업지도선 활동 강화
 - 동해 중간수역에 어업지도선 1척을 상시 배치하고, 시기별 조업 실태를 감안, 추가 배치하여 중간수역 관리 강화

■ 중국어선의 서해 NLL 및 EEZ수역 불법조업 적극 대응

- 경비세력 전진 배치를 통한 NLL 침범 중국어선 강력단속
 - 관계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군·경 합정 등을 활용, 침범 조업시 즉시 나포 및 강력 대응
-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수산 관계 회담시 중국 측에 불법조업 근절 촉구
 - 양국 어업지도단속공무원간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 교류('11.5)
 - 양국 지도단속 실무회의('11.5) 및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회의개최('11.9)

다 향후 추진계획

■ 일본 EEZ 입어 우리어선에 대한 위반조업 예방활동 강화

- 시·도 및 수협을 통해 위반 사례가 많은 업종의 어업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필요시 간담회 개최
-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입어 허가어선에 대해 어선별 점검표를 비치하여 입어 신청시 사전 확인

- EEZ 경계수역 침범 방지를 위한 어업지도선 활동 강화
 - 동해 중간수역에는 어업지도선 1척을 상시 배치하고, 시기별 조업실태를 감안하여 추가 배치하여 중간수역 관리 강화
 - 일본 EEZ 조업허가가 없는 자망과 통발어선이 일본 EEZ를 침범, 어구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홍보
-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간 교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협력 유도
 -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 불법 사례 확인
 -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채증자료 제시 중국정부 압박
- 지능화, 집단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적 대응
 - 무허가 조업, 폭력 사용 등 중대 위반어선은 우리 사법부의 처벌 종료 후 중국 어정선에 인계, 중국법에 의거 처벌토록 조치
 - 기상 악화로 인한 중국어선 긴급 피난 시 경비정을 이용한 감시로 우리어선 어구피해 예방(해경청 협조)
 - * '10.10 백령·소청 주변해역 중국어선 피난 시 우리어선 어구훼손 피해발생
 - 피해내용 : 336백만 원(통발 225틀 329백만원, 주낙 160바퀴 7백만원)
- 중장기적으로는 서해 NLL 주변수역 중국어선 침범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중국어선의 북측수역 입어 차단을 위해 남북한 수산협력사업 등 경제적 지원책 제시로 북측의 호응 유도



참고자료

중국어선 나포 실적

(단위 : 척)

	계	영해 침범 (특정금지 구역)	특정금지 구역	EEZ위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 계	무허가	망목 위반	조업수역 및 방법	조업일지관련 어창용적도	기타
'01 (6.30~12.31)	125	4(-)	8	113	62	9	6	18	18
'02	175	30(5)	10	135	108	19	7	1	-
'03	240	32(29)	86	122	88	14	11	4	5
'04	437	47(47)	49	341	101	8	5	217	10
'05	584	41(38)	47	496	146	8	4	310	28
'06	522	23(21)	38	461	133	6	8	246	68
'07	494	26(23)	47	421	70	7	20	260	64
'08	432	12(9)	32	388	76	36	4	233	39
'09	381	27(18)	34	320	91	21	7	154	47
'10	370	53(22)	30	287	91	30	15	122	29
'11.11	396	25(4)	16	355	125	42	11	175	2
○ 협정발효 이후	4,156	320(216)	397	3,439	1,091	200	98	1,740	310

우리어선 중국 피랍 현황

(단위 : 척)

	계	영해 침범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위반							비 고
				소계	망목 위반	조업 수역	조업 방법	조업일지 관련 위반 어창용적 도미비치	입역 미통보	조기 입역	
'01	-	-	-	-	-	-	-	-	-	-	
'02	1	-	-	1	-	1	-	-	-	-	조업수역 위반 및 입역 미통보
'03	2	-	-	2	-	2	-	-	-	-	조업수역 위반
'04	-	-	-	-	-	-	-	-	-	-	
'05	1	-	-	1	-	-	-	1	-	-	조업일지 부실기재
'06	1	-	-	1	-	-	-	1	-	-	
'07	-	-	-	-	-	-	-	-	-	-	
'08	-	-	-	-	-	-	-	-	-	-	
'09	-	-	-	-	-	-	-	-	-	-	
'10	-	-	-	-	-	-	-	-	-	-	
'11.11	-	-	-	-	-	-	-	-	-	-	
협정발효 이후	5			5		3		2			

우리어선 일본 피랍 현황

(단위 : 척)

	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기 타
			금지구역	조업구역	어구위반	허가장 미소지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어창용적도 미소지	표지판 미부착	어획물 위 반	
'99	20	12	4	2	-	1	-	-	1
'00	22	4	7	2	3	2	-	-	4
'01	24	5	3	3	4	5	1	-	3
'02	32	4	1	2	-	23	1	-	1
'03	27	5	1	2	1	10	4	-	4
'04	19	3	2	1	-	11	-	-	2
'05	15	8	1	2	-	3	-	-	1
'06	10	1	1	1	-	7	-	-	-
'07	15	4	1	-	-	8	-	-	2
'08	18	1	1	2	-	14	-	-	-
'09	12	-	-	-	2	10	-	-	-
'10	13	2	-	2	-	8	1	-	-
'11.11	11	1	1	-	-	9	-	-	-
계	246	50	23	19	10	111	7	-	18

일본어선 나포 실적

(단위 : 척)

	합계	영해 침범	EEZ 위반		
			소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망목위반 조업일지 위반 등)
'99	4	-	4	3	1
'00	1	-	1	1	-
'01	3	-	3	-	3
'02	1	-	1	1	-
'03	-	-	-	-	-
'04	6	-	6	-	6
'05	-	-	-	-	-
'06	-	-	-	-	-
'07	-	-	-	-	-
'08	-	-	-	-	-
'09	-	-	-	-	-
'10	-	-	-	-	-
'11.11	-	-	-	-	-
계	15	-	15	5	10



2-5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예방대책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선 등록 척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인명피해 : ('06) 136명 → ('08) 126 → ('10) 132 → ('11.10) 106
 - * 도로교통은 자동차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지속 감소
 - 1만대 당 사망자수 ('06) 3.25명 → ('08) 2.86명 → ('10) 2.57

- 자동차 및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계속 증가
 -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선은 인명피해를 경시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함
 - * 연도별 사고척수 및 인명피해

	'06	'07	'08	'09	'10	'11.10
해난사고 척수	457	479	464	519	485	438
인명피해(명)	136	119	126	151	132	106

- 어선사고 대부분이 선체불량이며 정비점검 소홀로 발생
 - 어선은 대부분 조업기간이 길고 쉬지 않고 출항하며, 어항 호전시 정비점검을 하지 못한 채 급히 출어하는 사례 빈번
 - 조업일수가 1항차 당 15일 → 30일, 계절조업은 1~2개월 → 2~3개월로 증가
 - 도서지역 등 정비업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정비점검이 어렵고, 기관 상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발생

- 출어하기 전에 상시 점검을 하여야 하나 정비점검을 하지 않고 출항하고 있으며, 조업시 기관을 양망하는 등 다용도로 무리하게 사용

* 사고종류별 현황

	'06	'07	'08	'09	'10	'11.10
계	457	479	464	519	485	438
선체불량	279	312	255	303	285	257
운항과실	172	159	198	209	193	170
기상악화	6	8	11	7	7	11

■ 인명사고는 대부분 견시 소홀 등 안일한 대응에 따른 운항과실과 해상추락으로 발생

○ 견시 소홀에 따른 충돌사고 발생

- 항해중 조업준비 또는 어획물 선별, 어장에서는 어로에 몰두
- 야간조업 후 피곤한 상태로 새벽에 졸음 운항

○ 조업시 해상추락 가능성이 상존하나 구명조끼 미착용

- 특히 해상 추락시 체온저하로 인명피해 발생

○ 어로작업의 미숙과 인권무시에 따른 폭력사고도 발생

* 사고종류별 인명피해 현황

	'06	'07	'08	'09	'10	'11.10
계	136	119	126	151	132	106
조업중	60	72	89	88	61	78
운항과실	49	31	36	47	53	26
선체불량 등	27	16	1	16	18	2

■ 어선사고 증가는 어선 정책보험의 전손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수지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정부 재정부담 증가

- '11년 9월말 현재 정책보험 가입 어선은 전체어선의 12%에 불과하며 698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나 향후 추진계획

- 어선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가칭 「어선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 노후어선 등 사고위험이 높은 어선 출항금지 근거 마련
 - 선박안전조업규칙 관련규정을 법률로 제정
 - 위치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우리부, 해경 및 수협과 위치정보 연계, 이탈 경보시스템 마련 등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구입비용 지원근거 마련 등
 - * 일본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에 따라 1인승선 선박 및 소형 선박에 구명조끼를 상시착용하도록 하고 위반시는 2년 이내의 면허정지
- “어선법”관련기준 보완 및 검사강화
 - 어선법 개정
 - 5톤미만 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 전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확대 및 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시 벌칙 신설(조진래의원 입법안 본회의 통과)
 - * 해양경찰청에서 '11년 9,000척, '12~'15년까지 전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
 - 중고기관 사용 제한 및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검사기준 강화
 - 사고 다발 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강화
- 정부지원을 통해 안전성 강화
 - 노후어선 대체지원으로 어선의 안전성 강화

- 신조시 기관구입자금 지원 및 자동차용 기관을 선박용으로 개조하여 설치한 어선에 대한 선박용 기관보급자금 지원
- 착용성이 좋은 구명조끼 및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개발·보급
 - 구명뗏목은 소형선박용 구명뗏목 개발 후 보급 추진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해난사고 예방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 보급 및 계도
 - 어업정보방송, 홍보용 전광판 등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홍보
 -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시험조사선 등에 대하여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구명조끼 상시착용 솔선수범으로 어업인 동참 유도
- 우리부 어선 안전관리 기능 일원화
 - 어선등록·검사, 어선 및 어선원 보험, 어선 안전조업 지도 기능 통합으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어선 등록·검사(어선법), 어선원 재해보상(어선원 재해보험법) 및 안전조업 교육(선박안전조업규칙) 업무 등 일원화

2-6

국가 어업지도선 확충 및 현대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 100~2,000톤급 34척(동해 19, 서해 15)
- 선령 25년 이상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지도선 2척 대체 건조 시급 및 대형 지도선 추가 확충 필요
 - 선저외판, 각종 배관장치 등 부식 심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어업지도선 34척 중 선령 30년 1척(1,000톤급), 선령 31년 1척(1,000톤급)
 - 우리 EEZ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대형지도선 확충 필요
 - 불법어업 등으로 나포되는 중국어선이 연간 400척 수준임
 -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대부분 해상기상 악화시에도 조업하고 있어 효과적 단속을 위해 2,000톤급 대형 지도선 건조 필요
- 지자체 어업지도선 활동 미흡으로 국가 어업지도선 활동 영역 확대
 - 특정해역, NLL 등 접경수역 출어선에 대한 조업관리 수요 증가
 - '10년 동해상에서 대성호 납북, 서해안 연평도 포격사건 등 우리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
 - * 인천시, 강원도는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어업지도선 건조 곤란

나 향후 추진계획

- 노후 어업지도선 조기 대체 건조로 지도선의 안전성 제고 및 우리 EEZ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확충 추진

- 선령 30년 이상 지도선은 선체외판, 각종 배관설비 등이 부식되어 대체건조 우선 추진

* '12년까지 노후 어업지도선 2척 대체건조 완료 목표

- 우리 EEZ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접경수역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신규건조 추진(4척)

* 현재 34척에서 '18년까지 38척으로 확충(2,000톤급 4척)

■ 지도선 신조시 레이더, GPS 등 첨단 장비 설치로 지도단속 효율화 도모

- 고속단속정에 레이더, GPS, 위치추적장치 및 지도선에 야간 감시시스템 설치 추진

* 단속장비(야간감시시스템 등), 신변보호장비(단속복, 헬멧 등 5종) 및 주요 항해장비(전자해도표시시스템 등 5종)

< 연도별 건조추진 계획 >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금액(억원)	1,359	219	237	197	246	460
물량(척)	6	1000톤급 (준공 1, 착공 1)	1000톤급 (준공 1), 500톤급(착공 1)	500톤급(준공 1, 착공1)	500톤급 (준공 1, 착공2)	500톤급 준공2) 300톤급 착공2) 1,500톤급 착공

* 건조비(척당) : 150톤 100억원, 500톤 163억원, 1,000톤 235억원, 2,000톤 300억원

참고자료

국가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단위 : 척)

구 분		계	100~300톤	300~500톤	1,000~2,000톤	2,000톤 이상
합계	계	34	7	21	5	1
	10년이하	12	2	10	-	-
	11~20년	18	5	9	3	1
	21~24년	2	-	2	-	-
	25년이상	2	-	-	2	-
동해	소계	19	5	10	3	1
	10년이하	7	2	5	-	-
	11~20년	10	3	4	2	1
	21~24년	1	-	1	-	-
	25년이상	1	-	-	1	-
서해	소계	15	2	11	2	-
	10년이하	5	-	5	-	-
	11~20년	8	2	5	1	-
	21~24년	1	-	1	-	-
	25년이상	1	-	-	1	-

2-7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도입배경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업인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업인이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토록 제도화('07. 8. 14)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소형기저어선 정리 사업 이후 재진입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08년부터 예산배정)

■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포상방법과 절차)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수산업법 제92조(포상)

- 이 법 또는 이 법에 다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신고대상, 시기 및 방법

-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61종)
- 시기/방법 : 신고센터(어업관리단, 해경, 지자체)로부터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은행계좌 입금)

■ 포상금 지급기준

<사법처분> : 법원의 1심 선고기준

- 징역형 :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 벌금형 : 벌금액의 10%(100만원 범위내 지급하되, 하한액 20만원)
-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행정처분>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어업등행정처분 : 10만원

<불법무기산> : 수사기관의 확인물량기준

- 2,000ℓ 이상 30만원, 1,000~2,000ℓ 미만 20만원,
- 200~1,000ℓ 미만 15만원, 200ℓ 미만 1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액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08년	30,000	150	29,850	1건, 무기산
'09년	30,000	500	29,500	1건, 소형기저
'10년	30,000	1,620	28,380	16건, 금지구역·기간 위반 등

2-8

과징금 부과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

- 과징금은 업종별, 어선 규모별로 어업정지 1일당 1~19만원으로 어업소득에 비해 너무 낮음
 - 위반조업 적발시 과징금만 납부하면 조업 가능(면세유류 공급) 하다는 의식 팽배로 준법정신 결여
 - * 연도별 과징금 대체률 : ('08) 41% → ('09) 48% → ('10) 53%
- 과징금 부과제도를 물가상승률, 어업소득, 업종 및 어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9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별표 5 (과징금 부과기준)

■ 연구용역

- 연구기간 / 수행기관 : '11.4.26 ~ 9.23(5개월)/ 한국법제연구원
- 소요예산 : 27백만원('11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 연구내용 :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 추진일정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초안 마련('11.12월), 의견수렴('12.1~2월) 및 개정·공포('12년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별표 5)

구 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근해어업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근해트롤(대형트롤) 근해선망(대형선망),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어업정지 1일 : 19만원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서남해구) 근해트롤(동해구트롤), 근해안강망	어업정지 1일 : 13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어업정지 1일 : 6만원
연안어업	모든 연안어업	어업정지 1일 : 4만원
구획어업	정치성·이동성 구획어업	어업정지 1일 : 4만원
신고어업	모든 신고어업	어업정지 1일 : 1만원
어획물 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정지 1일 : 13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미만	정지 1일 : 9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미만	정지 1일 : 6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정지 1일 : 3만원

2-9 중복 승선조사 방지 「OK 스티커」 시행

■ **목적** : 불법어업 단속과정의 중복 승선조사 방지 「OK 스티커」
 제도운영으로 어업인 조업불편 해소

■ **승선조사 현황**

- 최근 3개년 평균 3,500여척 승선조사 중, 약 17% 수준인 580여척 중복조사, 승선조사 1~2시간 소요로 조업중단 등 불편 초래

< 연도별 중복 승선조사 현황 >

(단위 : 건)

구분	평균			2008			2009			2010		
	승선조사	중복조사	%	승선조사	중복조사	%	승선조사	중복조사	%	승선조사	중복조사	%
계	3,489	580	16.6	4,277	748	17.5	3,252	520	16.0	2,937	471	16.6
동해	1,877	78	4.2	2,229	112	5.0	1,745	59	3.3	1,658	64	3.8
서해	1,612	501	31.1	2,048	636	31.0	1,507	461	30.6	1,279	407	31.8

■ **중복 승선조사 방지 「OK 스티커」 운영(8월부터 시행)**

- 시행기관 : 어업관리단(어업지도선 34척)
- 유효기간 : 1개월
- 부착장소 : 육안 식별이 가능한 장소(조타실 등)
- 부착방법 : 1차 스티커 발부시 훼손방지용 투명케이스 동시배부
- 규격 및 주요내용
 - 규격 : 10 x 20cm(4종 : 분기별 각 1종)
 - 내용 : (앞면) 취지, 조사일자 및 조사자, 신고센터 운영현황
 (뒷면)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체장,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등 정책 및 어업인 준수사항

* 스티커 부착어선 중복조사 제외하되, 불법어업 의심어선 재조사 가능



2-10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전국 17개소에 어업정보통신국 설치·운영
 - 무선교신 가입어선 10,768척, 운영요원 : 170명
- 어업정보통신국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68%)와 운영비(22%)로 구성
 - '11년도 국고보조 12,811백만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11,70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 차지

나 향후 추진계획

- 어업정보통신국 현대화 및 광역 집중화로 인력 감축 및 소요예산 절감
 - 어선에 설치된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를 활용한 위치수신시스템 설치로 어업인 안전확보 및 위치보고 자동화 추진
 - * 현재 어업정보통신국 16개국 중 1개국에 대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12년 예산으로 6억원 확보
 -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 및 업무 등 개편
 - 전국 주요 항포구 16개소에 설치된 어업정보통신국 광역 집중화
 - 어업정보통신국 가입어선 척수, 통신국간 거리 및 어업인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집중국 선정, 나머지는 주간국화

- 광역화를 위한 어업정보통신 시설 투자계획
- 업무분석을 통한 최적의 인력 배치로 인건비 절감
- 어업정보통신국 대 어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
- 전파통신 관련 민원업무 대행 등 업무 신설 등

*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11.6.17~11.15)

■ 노후 어업정보통신국 시설 현대화

-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소로 이전, 어업인 안전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후 인천통신국 신축 이설('11년)
 - 사업비 : 385백만원(국고 308, 수협 77)
- 어업인 방문이 곤란한 포항통신국 이설 부지 매입('11.7~10월)
 - 사업비 : 585백만원(국고 468, 수협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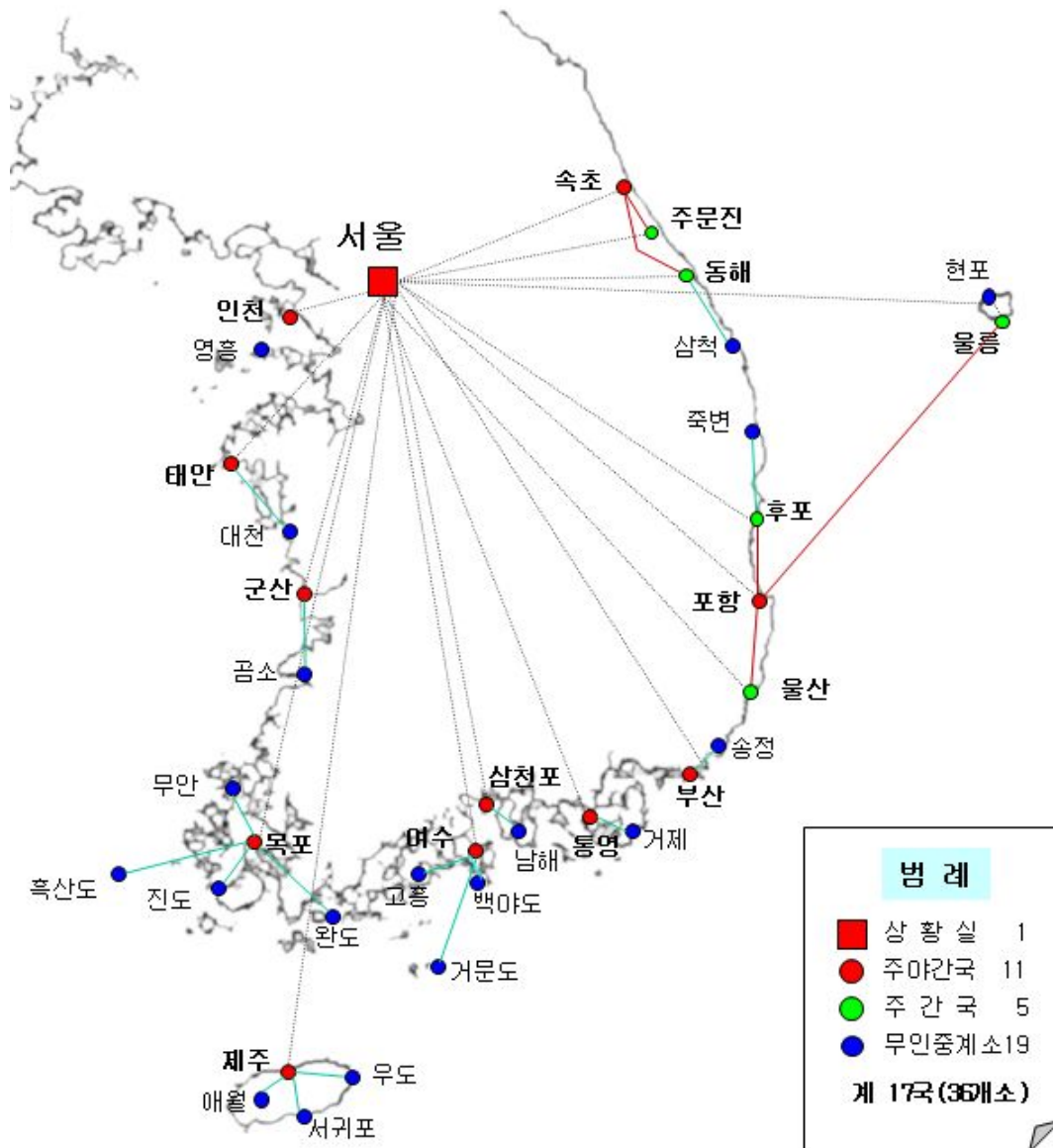
■ 통영어업 정보통신국 송신소 이설 및 태안어업 정보통신국 이원 중계소 신설('10.1~10)

- 통영송신소 부지 일대의 도시개발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소로 이전하여 어업인 안전조업 기여
 - 사업비 : 438백만원(국고 167, 수협 271)
- 태안지역의 대규모 방조제공사 등에 의한 조업어장 이동으로 통신불감지역이 발생하여 어업인 안전조업을 위하여 중계소 신설
 - 사업비 : 50백만원(국고 43, 수협 7)



참고자료

어업정보통신국 위치도



2-11

어선안전점검요원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 지구별 수협장의 지속적인 어선안전점검제도 폐지 건의에 따라 구조조정방안 수립('08.5.12) 시행
 - 어업인은 출어지연, 지구별 수협은 일부 비용부담으로 불만
- 국민권익위에서 “수협 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점검제도 폐지”를 국토해양부 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08.8.5)
 - 어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칙개선 과제로 발굴('08) 및 우리부에 처리이관('10.8)[해경청]
- 해경은 천안함 폭침, 북한의 연평도피격 등의 이유를 들어 현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 국민권익위의 “어선안전점검요원제도 폐지” 의견에 동의했을 뿐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 제시(해경)
- 고성군 수협은 NLL수역이라는 특수성을 들어 저도 및 북방어장 안전조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지 시 특별퇴직금 정부 예산 지원 필요
 - 현 근무자 중 고용승계 12, 승계불가 13명, 계약해지 2명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퇴직금 지급
 - * '08 합동신고소에 근무하던 안전점검요원(23명) 구조조정 시 잔여자는 '10년 이후 재검토하기로 방침 결정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원 28명 중 12명은 해당수협에서 승계, 13명은 구조조정
 - 어선안전점검요원 전원을 폐지시킨 후 12명은 해당수협에서 고용 승계, 13명은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정리
 - 특별퇴직금 예산 약 4.5억원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
-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협요원 근무조항 삭제
 - 국민권익위는 2010. 8월 해경이 우리부와 이 과제에 대해 이관 협의한 점을 감안, '12. 9월까지 폐지토록 1년 연기

어선안전점검요원 배치현황

지역	소속수협	통제소	정원
계	12개소	15개소	31명
경인	인 천	인 천	1
	안강망		1
	경인북부	강 화	1
	용 진	덕 적	2
		연 평	2
		대 청	2
		장 봉	1
강원	고성군	대 진	2
		거 진	2
	속초시	속 초	6
	강릉시	주문진	2
	동해시	동 해	2
	삼척	삼 척	2
경북	후 포	후 포	1
	구룡포	구룡포	2
	울릉군	울 릉	2

2-12 종합상황실 운영

가 현황

- 연중 무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위기 발생 또는 예상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보고체제 확립
 - 태풍, 풍랑, 호우, 대설 등 각종 재난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기시 신속한 상황 대처
 - 연근해어선 조업상황 관리를 통한 안전조업지도 및 동·서해 접경수역 우발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

나 추진실적 및 계획

- 태풍 내습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및 기상특보 등 관련정보 신속 전파
 - 농어업인 행동요령 집중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 5호 태풍 메아리('11.6) 및 9호 태풍 무이파('11.8) 우리나라 영향
- 북한 인접수역 조업어선 월선·피랍방지 지도
 - 동·서 특정해역과 서해5도서 등 접경수역에 출어하는 우리어선 조업상황을 1일 3회 파악
 - 언론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을 통한 북측 이상동향 정보 입수시 어업정보통신국 등을 이용 조업어선에 전파 등 안전조치 강화
- 출어상황 관리 및 기상악화 예상시 안전조치 등을 통한 사고 예방
 - 어업정보통신국과 협조하여 해역별 출어상황을 매일 파악
 - 해상기상 악화 예상 시에는 어업인 사전 점검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어선과 어업정보통신국 간 상시 통신체제 유지

Ⅲ. 주요 수산통계

[주요 수산통계]

1. 어가 및 어가인구	202
2. 연도별 어가 현황	202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203
4. 보유 어선 톤수별 어가 현황	203
5. 연도별·지역별 어업인구	204
6.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205
7. 어업가구	206
8. 어가소득	207
9. 어가자산	208
10. 어가부채 추이	209
11.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211
12. 영어자금 공급 현황	212
13.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213
14.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214
15. 어업용면세유 공급 실적	215
16.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216
17. 연도별 수산물 가공생산 및 지원 현황	217
18.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218
19.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금액	219
20.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220
21.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221
22. 수산물 수급 현황	222
2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223
24.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224
25. 국가어항 건설 추진 현황	225
26. 시·도별 어항 건설 추진 현황	226
27. 지방어항 현황	227
28. 국가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228
29. 지방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229
30. 어촌 정주어항 지정 현황	230
31. 수산물 생산현황	233
32. 2010년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금액 순위	246
33. 수산업의 분류(수산업법)	250
34. 기타 참고	251



1 어가 및 어가인구

(단위 : 가구, 명, %)

연 도	어 가	증감률	어가인구	증감률
'90	121,525	-9.4	496,089	-31.6
'95	104,480	-14.0	347,210	-30.0
'01	77,717	-4.7	234,464	-6.7
'02	73,124	-5.9	215,174	-8.2
'03	72,760	-0.5	212,104	-1.4
'04	72,513	-0.3	209,855	-1.1
'05	79,942	10.3	221,132	5.4
'06	77,001	-3.7	211,610	-4.3
'07	73,934	-4	201,512	-4.8
'08	71,046	-3.9	192,341	-4.8
'09	69,379	-2.3	183,710	-4.5
'10	65,775	-5.1	171,191	-6.8

※ 전수조사년도 : 끝자리가 0, 5로 시작되는 년도임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042-481-2297)

2 연도별 어가 현황(전·겸업별)

(단위 : 가구, %)

연 도	총어가	구성비	전업어가	구성비	겸업어가	구성비
'70	149,107	100.0	22,739	15.3	126,368	84.7
'80	134,109	100.0	20,813	15.5	113,296	84.5
'90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95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00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06	77,001	100.0	23,932	31.1	53,068	68.9
'07	73,934	100.0	22,407	30.3	51,527	69.7
'08	71,046	100.0	20,983	29.5	50,062	70.5
'09	69,379	100.0	20,923	30.0	48,455	69.8
'10	65,775	100.0	19,323	29.4	46,452	70.6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042-481-2297)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

연도	총어가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소 계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70	149,107 (100.0)	45,037 (30.2)	104,070 (69.8)	33,784 (22.7)	70,2861 (47.1)
'80	134,109 (100.0)	55,902 (41.7)	78,207 (58.3)	31,844 (23.7)	46,3631 (34.6)
'90	121,525 (100.0)	49,727 (40.9)	71,798 (59.1)	39,170 (32.3)	32,6281 (26.8)
'95	104,480 (100.0)	34,009 (32.6)	70,471 (67.4)	37,109 (35.5)	33,3621 (31.9)
'00	81,571 (100.0)	24,810 (30.4)	56,761 (69.6)	38,968 (47.8)	17,793 (21.8)
'06	77,001 (100.0)	23,989 (31.2)	53,012 (68.8)	36,088 (46.9)	16,924 (22.0)
'07	73,934 (100.0)	23,356 (31.6)	50,577 (68.4)	34,691 (40.9)	15,886 (21.5)
'08	71,046 (100.0)	22,101 (31.1)	48,945 (68.9)	32,481 (45.7)	16,464 (23.2)
'09	69,379 (100.0)	22,592 (32.5)	46,787 (67.4)	30,569 (44.0)	16,218 (23.3)
'10	65,775 (100.0)	17,386 (26.4)	48,389 (73.6)	29,062 (60.1)	19,327 (39.9)

1) 남의 어선 승선가가 '95년까지는 어선 비사용 가구에 포함되었으나, '00년부터는 어선 사용가구에 포함되었음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042-481-2297)

4 보유 어선 톤수별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

연도	총어가	어선없는 어가	보유 어선 톤수별						
			소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20톤	20~50톤	50톤이상
'95	104,480 (100.0)	47,864 (45.8)	56,616 (54.2)	33,465 (32.0)	15,448 (14.8)	4,672 (4.5)	1,062 (1.0)	1,008 (1.0)	961 (0.9)
'00	81,571 (100.0)	34,387 (42.2)	47,184 (57.8)	25,032 (30.7)	14,916 (18.3)	4,845 (5.9)	1,045 (1.3)	746 (0.9)	600 (0.7)
'06	77,001 (100.0)	31,465 (40.9)	45,536 (59.1)	25,770 (33.5)	12,687 (16.5)	4,792 (6.2)	773 (1.0)	919 (1.2)	595 (0.8)
'07	73,934 (100.0)	30,345 (41.0)	43,589 (59.0)	25,180 (34.1)	11,720 (15.9)	4,575 (6.2)	699 (0.9)	817 (1.1)	598 (0.8)
'08	71,046 (100.0)	28,955 (40.8)	42,091 (59.2)	24,572 (34.6)	10,866 (15.3)	4,568 (6.4)	736 (1.0)	720 (1.0)	629 (0.9)
'09	69,379 (100.0)	29,225 (42.1)	40,154 (57.8)	23,340 (33.6)	10,529 (15.1)	4,177 (6.0)	828 (1.1)	709 (1.0)	572 (0.8)
'10	65,775 (100.0)	28,968 (44.0)	36,422 (55.4)	18,086 (27.5)	11,479 (17.5)	4,896 (7.4)	840 (1.3)	720 (1.1)	401 (0.6)

자료 : 어업총조사 및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042-481-2297)



5 연도별·지역별 어업인구



(단위 : 명)

연도	합계	시·도 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	912,612	8,751	-	-	52,842	106,189	66,562	26,713	413,514	50,063	109,500	78,478
'75	751,353	5,996	-	-	39,144	89,714	60,267	19,656	310,259	65,612	111,656	49,049
'80	725,314	11,459	11,326	-	29,781	61,974	73,754	20,596	304,575	56,942	112,529	42,378
'85	602,237	10,839	9,119	-	31,649	52,659	55,567	21,770	253,344	34,849	96,094	36,347
'90	496,089	21,527	10,099	-	21,889	28,918	54,158	23,478	186,198	29,363	87,031	33,428
'95	347,210	19,694	13,868	-	7,841	21,302	39,519	16,855	116,904	22,326	62,467	26,434
'96	330,464	18,803	12,546	-	7,508	20,197	38,736	15,153	109,953	20,630	60,966	25,972
'97	323,383	18,524	12,539	5,511	6,938	19,804	37,647	14,759	105,420	20,969	54,519	26,752
'98	322,229	19,361	13,132	5,374	7,619	19,460	37,918	14,955	102,962	20,906	55,857	24,685
'99	315,198	18,854	13,227	5,494	7,688	19,872	37,373	14,667	100,432	20,175	53,252	24,163
'01	234,434	11,546	8,111	3,732	5,800	14,499	25,927	12,853	74,952	16,373	41,154	19,487
'02	215,174	9,398	6,877	3,387	4,544	14,096	25,869	11,152	66,111	14,873	38,476	20,390
'03	212,104	8,902	7,371	3,449	4,533	13,641	26,814	10,937	65,866	14,865	36,345	19,381
'04	209,855	9,471	6,525	3,312	4,551	12,895	26,267	10,902	65,391	14,551	36,253	19,737
'05	221,132)	10,800	8,803	3,462	3,868	12,605	27,309	10,182	68,603	14,998	41,811	18,617
'06	211,610	9,794	8,478	3,424	4,740	13,021	26,898	11,494	64,610	14,369	35,393	19,388
'07	201,512	9,061	7,861	3,331	4,529	12,201	26,943	10,346	61,843	13,886	32,307	19,186
'08	192,341	8,196	7,767	3,083	4,328	10,619	26,182	9,501	61,631	12,386	30,184	18,464
'09	183,710	6,530	7,275	2,862	4,208	9,202	28,537	9,336	58,843	11,105	27,018	18,793
'10	171,191	7,408	6,983	2,932	2,475	8,320	27,302	6,771	54,981	10,422	28,916	14,573

1) 합계수치에 서울 25명, 대구 29명, 광주 37명, 대전 17명이 포함됨

1980년대 이후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어 왔으며, 2008년도 어업인구는 2000년 대비 23.5% 감소한 것으로 외환 금융위기이후 어촌경제침체의 누증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도시 취업 및 도시전출 등에 기인함.

6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단위 : 명)

연도	성별 어업인구			어업종사자 가구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70	912,612	465,529	447,083	307,627	174,257	33,370
'75	751,353	394,543	356,810	282,923	168,163	114,760
'80	725,314	371,287	354,027	294,928	168,303	126,625
'85	602,237	301,701	300,536	236,237	135,826	100,811
'90	496,089	248,839	247,250	211,753	118,648	93,105
'95	347,210	171,793	175,417	176,123	94,136	81,987
'96	330,464	160,901	169,563	171,822	87,309	84,513
'97	323,383	158,016	165,367	173,743	89,603	84,140
'98	322,229	158,091	164,138	172,701	89,112	83,589
'99	315,198	155,636	159,562	170,590	89,026	81,564
'00	251,349	126,775	124,574	139,837	76,188	63,649
'02	215,174	107,688	107,486	127,694	69,666	58,027
'03	212,104	106,384	105,720	125,023	67,870	57,153
'04	209,855	105,362	104,493	122,384	66,380	56,004
'05	221,132	110,658	110,474	130,589	70,307	60,282
'06	211,610	106,340	105,270	128,047	68,244	59,803
'07	201,512	100,985	100,527	122,916	65,520	57,396
'08	192,341	95,856	96,485	118,879	63,037	55,843
'09	183,710	91,573	92,136	115,532	60,790	54,742
'10	171,191	85,590	85,601	114,975	62,984	51,973

1970년도에 어업인구의 남·여의 구성비율이 각각 51%, 49%였으나, 어촌경제의 침체로 남성 어업인들의 어촌 이탈, 남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인구고령화로 평균수명이 짧은 남성 어업인들의 자연사 등의 사유로 1991년 이후 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어촌사회가 여성화 현상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 남·여의 구성 비율이 50%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10년 현재 남·녀 어업인구의 비율은 54.7 vs 45.3%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7 어업인구

연도별 · 지역별 어업가구

(단위 : 가구)

연도	계	시 · 도 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90	121,525	4,901	2,530	-	6,286	12,934	5,623	45,566	7,451	20,843	7,208	8,183
'95	104,480	5,097	4,678	-	2,398	12,357	5,056	36,647	6,723	17,728	5,997	7,799
'96	101,677	4,982	4,249	-	2,307	12,251	4,654	35,546	6,458	17,713	5,790	7,727
'97	99,912	5,012	4,207	1,595	2,224	12,188	4,686	34,208	6,551	16,323	5,512	7,406
'98	98,972	5,119	4,262	1,527	2,410	12,148	4,686	33,411	6,561	16,533	5,546	6,769
'99	97,754	5,082	4,309	1,518	2,438	11,972	4,665	32,731	6,375	16,197	5,723	6,744
'00	81,571	3,591	3,035	1,165	1,807	9,450	4,275	26,932	5,778	14,009	4,814	6,715
'02	73,124	2,856	2,438	1,058	1,524	9,178	3,943	23,281	4,874	12,721	4,638	6,613
'03	72,760	2,756	2,449	1,082	1,520	9,311	3,999	23,235	4,988	12,240	4,481	6,699
'04	72,513	2,834	2,315	1,014	1,543	9,322	3,979	23,286	5,006	12,124	4,352	6,738
'05	79,942	3,216	3,320	1,137	1,295	10,505	3,695	25,489	5,517	14,827	4,221	6,698
'06	77,001	3,014	3,135	1,136	1,558	4,358	9,992	3,984	23,935	5,316	13,631	6,942
'07	73,934	2,818	2,885	1,123	1,484	10,094	3,568	22,939	5,173	12,567	4,237	7,046
'08	71,046	2,689	2,777	1,083	1,466	9,871	3,504	22,827	4,633	11,688	3,866	6,642
'09	69,379	2,291	2,630	1,013	1,420	11,132	3,463	22,181	4,207	10,523	3,470	7,049
'10	65,775	2,469	2,678	1,021	844	11,021	2,633	21,809	4,069	10,768	3,039	5,393

- 1) 합계수치는 서울 7가구, 대구 8가구, 광주 12, 대전 4가구가 포함된 수
- * 전수조사 시기 : '0', '5'로 시작되는 년도
- * 표본조사 시기 : 전수조사 년도 외

1980년대 이후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2010년도 어업가구는 2000년 대비 19.4% 감소하였고 전년보다 5.2% 감소함. 외환금융위기 이후 어촌경제침체의 누증에 따라 많은 어업가구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도시취업 및 도시전출 등에 기인함.

8 어가소득

(단위 : 천원)

연 도	어 가 소 득					
	전 체	어업소득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수입
'80	2,596	1,752	314	79	451	-
'90	10,023	5,218	1,897	302	992	1,614
'95	18,780	9,437	3,184	791	2,100	3,268
'96	19,039	10,526	2,394	1,000	2,016	3,103
'97	20,331	11,768	2,761	1,061	1,998	2,743
'98	16,794	9,524	2,307	918	1,706	2,339
'99	18,428	10,322	2,557	697	1,629	3,223
'00	18,875	10,078	2,583	798	1,932	3,484
'01	22,252	11,087	2,757	1,083	2,664	4,661
'02	21,816	10,165	2,286	1,260	2,920	5,185

*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사업외소득은 2003년부터 “어업외소득”으로 발표(통계청)

연 도	어가소득(천원)			
	전체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04	26,159	11,959	9,168	5,032
'05	28,028	11,950	9,399	6,679
'06	30,006	11,603	10,361	8,043
'07	30,668	11,975	10,981	2,913
'08	31,176	13,801	10,120	2,423
'09	33,945	16,220	11,136	2,857
'10	35,696	16,607	11,931	3,191

2010년도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연간 35,696천원으로 전년(33,945천원)에 비해 5.2% (1,751천원) 증가

어가소득중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어업의존도)은 46.5%임

전년에 비해 어업소득 2.4%, 어업외소득 7.1%, 이전소득(비경상소득 포함) 11.7% 각각 증가



9 어가자산

(단위 : 천원)

연 도	어 가 자 산			
	계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90	61,274	51,265	4,508	5,501
'94	108,568	92,698	5,140	10,730
'95	97,125	76,345	5,057	15,723
'96	102,908	79,309	5,284	18,315
'97	113,348	84,039	5,580	23,729
'98	112,035	79,757	4,868	27,410
'99	116,995	76,922	5,145	34,928
'00	121,074	76,484	5,201	39,389
'01	132,226	96,457	6,897	28,872
'03	140,477	100,400	40,077	-
'04	160,698	111,870	48,828	-
'05	183,841	127,397	56,444	-
'06	209,644	147,274	62,369	-
'07	225,992	153,483	72,509	-
'08	221,066	161,720	59,346	-
'09	257,094	186,102	70,992	-
'10	258,872	178,364	80,508	-

1) 기존 유통자산과 유동자산을 '03년부터 유동자산으로 통합

2010년도 어가자산은 258,872천원으로 전년(257,095천원)에 비해 0.7%(1,778천원) 증가하였음

어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도에는 고정자산이 84%, 유동자산이 16%였으나, 1995년도에는 고정자산 78%, 유동자산 22%, 2003년도에는 고정자산이 72%, 2010년도에는 고정자산이 69%로 고정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유동자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어가부채 추이

차입처별

(단위 : 천원)

연도	부채액	차 입 처 별						
		금 용 기 관				사 채		
		계	수협	농(축)협	기타	계	농어가	기 타
'80	564	-	-	-	-	-	-	-
'90	5,926	4,515	2,059	2,147	309	1,411	801	609
'94	9,293	7,892	3,426	4,010	456	1,401	713	688
'95	11,035	9,110	4,275	4,353	481	1,925	875	1,049
'96	12,342	10,378	5,097	4,744	536	1,964	786	1,178
'97	11,906	10,282	4,872	4,773	637	1,624	809	815
'98	11,319	9,588	4,636	4,513	438	1,731	703	1,028
'99	11,555	9,451	4,269	4,751	431	2,104	695	1,410
'00	13,635	11,094	5,112	5,477	504	2,541	744	1,798
'01	15,466	12,755	5,862	6,039	854	2,711	817	1,894
'02	17,495	14,031	6,785	6,658	588	3,464	925	2,539

* '03년도부터 어업용부채와 어업용이의 부채로 발표(통계청 자료)

연 도	부 채 액	어업용 부채	어업용이의 부채
'03	29,836	16,696	13,140
'04	32,545	17,665	14,880
'05	34,531	18,560	15,971
'06	34,422	17,275	17,147
'07	34,407	16,690	17,716
'08	33,587	18,207	15,380
'09	35,864	19,038	16,826
'10	35,640	18,277	17,363

2010년도 어가부채는 35,640천원으로 전년(35,864천원)에 비해 0.6%(224천원) 감소하였으며, 어업용부채는 4.0% 감소하였고, 어업용이의 부채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80년 이후 어가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처별로 비율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액과 사채의 비율은 각각 1990년도 76%, 24%, 1995년도 83%, 17%, 2005년도에 83%, 17%로 나타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고, 금융기관 중 농·수협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용도별 어가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계	생 산 성 부 채			가계성부채	채무상환용
		계	어 업	겸 업		
'80	564	363	311	52	178	23
'90	5,926	4,738	3,281	1,457	871	317
'94	9,293	7,553	4,842	2,712	1,382	357
'95	11,035	8,928	5,924	3,004	1,726	381
'96	12,342	9,848	5,826	4,022	1,845	649
'97	11,906	9,513	5,512	4,000	1,763	631
'98	11,319	9,056	4,733	4,324	1,793	469
'99	11,555	8,294	4,165	4,129	2,097	1,164
'00	13,635	9,709	4,950	4,759	2,552	1,374
'01	15,466	10,923	5,859	5,064	3,179	1,364
'02	17,495	12,653	7,090	5,563	3,783	1,059

* '03년부터 생산성부채와 기타부채로 발표(통계청 자료)

연 도	계	생산성부채	기타용 부채
'03	29,836	20,729	9,107
'04	32,545	22,181	10,364
'05	34,531	23,051	11,480
'06	34,422	22,521	11,902
'07	34,407	22,133	11,693
'08	33,587	22,962	10,369
'09	35,864	23,636	11,341
'10	35,640	23,303	12,337

* 생산성부채는 어업용 + 겸업용, 기타용부채는 가계용 + 기타용 부채임

어가부채 중 용도별 비중은 1990년도에는 생산성부채 80%, 가계성부채 15%, 채무상환용 부채가 5%이며, 1995년도에는 생산성부채 81%, 가계성부채 16%, 채무상환용부채가 3%였으나, 2010년도에는 생산성부채가 65%로 생산성부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특히, 채무상환용 부채의 비율이 1999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1999년도부터 본격 시작된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른 부채대책자금의 지원에 기인함

11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단위 : 개, 명)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계(70)	1,874	154,084						
경인계(5)	107	11,348	부안	19	4,972	고성군	25	1,922
경인북부	20	1,184	고창군	13	1,765	마산	21	1,932
용진	35	3,969	전남계(14)	732	49,555	삼천포	23	1,645
경기남부	28	3,002	강진군	29	1,982	울산	33	3,341
인천	18	2,272	목포	49	2,752	의창	13	2,401
영흥	6	921	신안군	72	3,561	진해	14	1,474
강원계(9)	76	5,681	영광군	13	1,864	통영	80	4,700
고성군	10	1,438	완도금일	19	2,850	하동군	25	2,110
동해시	6	672	완도소안	62	2,311	남해군	94	4,534
삼척시	13	679	진도군	49	3,128	육지	18	451
원덕	8	371	해남군	70	3,101	사천	9	684
속초시	5	493	거문도	11	641	사량	14	536
양양군	13	501	고흥군	162	11,972	창원서부	8	460
강릉시	13	974	나로도	20	1,542	부산계(2)	41	4,526
대포	3	245	여수	104	8,919	부산시	23	2,786
죽왕	5	308	장흥군	42	2,979	부산동부	18	1,740
충청계(8)	153	17,486	전남동부	30	1,953	제주계(6)	100	14,673
당진군	8	2,203	경북계(8)	153	9,309	서귀포	19	2,164
보령	26	3,812	경주시	17	1,030	모슬포	12	1,707
서산	46	5,269	강구	17	1,050	성산포	13	2,803
서천군	7	1,189	구룡포	32	2,322	제주시	33	5,171
서천서부	10	800	울릉군	11	627	추자도	5	340
태안남면	11	987	죽변	18	851	한림	18	2,488
안면도	43	2,544	영덕북부	13	1,196			
대천서부	2	682	포항	30	1,314			
전북계(4)	64	11,667	후포	15	919			
군산시	20	3,503	경남계(14)	448	29,839			
김제	12	1,427	거제	68	3,649			

2010년말 현재 어촌계수는 전국 70개 지구별 조합에 1,874개이며 소속된 조합원은 154,084명으로 어업인구(171천명)의 90%가 어촌계원으로 가입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음.



12 영어자금 공급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70	'75	'80	'85	'90	'95	'00	'05	'08	'09	'10			
합	소 요 액	-	895	2,955	5,789	9,110	18,805	29,749	38,920	41,199	44,223	46,837		
	공 급 액	31	200	1,200	2,870	6,000	7,500	12,050	14,050	15,050	19,050	19,050		
	공급율 (%)	-	22	41	50	66	40	41	36	36	43	41		
	계	재원	재정자금	26	25	90	301	765	2,393	5,814	5,636	5,636	5,636	5,525
			한은차입	5	37	465	1,070	2,617	1,723	-	-	-	-	-
수협자금			-	138	460	1,499	2,618	3,084	4,796	3,933	4,433	8,433	9,544	
상호금융			-	-	185	-	-	300	1,440	4,481	4,981	4,981	3,981	
연	소 요 액	-	436	1,951	4,328	7,287	14,098	24,931	33,854	36,364	39,210	40,973		
	공 급 액	31	127	950	2,400	5,190	6,500	10,900	13,400	14,250	17,850	17,850		
	공급율 (%)	-	29	49	56	71	46	44	40	39	46	44		
	계	재원	재정자금	26	22	90	301	765	2,393	5,814	5,636	5,636	5,636	5,525
			한은차입	5	23	345	855	2,212	1,365	-	-	-	-	-
수협자금			-	82	330	1,244	2,213	2,442	3,646	2,783	3,633	7,233	8,344	
상호금융			-	-	185	-	-	300	1,440	4,481	4,981	4,981	4,981	
원	소 요 액	-	459	1,004	1,461	1,823	4,707	4,818	5,066	4,934	5,013	5,864		
	공 급 액	-	73	250	470	810	1,000	1,150	650	800	1,200	1,200		
	공급율 (%)	-	16	25	32	44	21	24	13	16	24	21		
	양	재원	재정자금	-	3	-	-	-	-	-	-	-	-	
			한은차입	-	14	120	215	405	358	-	-	-	-	
수협자금			-	56	130	255	405	642	1,150	650	800	1,200		
상호금융			-	-	-	-	-	-	-	-	-	-		

1963년 이후 영어자금의 공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률은 199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1990년도 이후 영어자금 공급액 증가율이 소요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서 공급률은 계속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01	'03	'04	'05	'06	'07	'08	'09	'10
계	35,917 ^r	36,718 ^r	38,068	36,452	35,000	32,442	31,480	33,770	32,885
영 어 자 금	12,050	14,050	14,050	14,050	15,050	15,050	15,050	19,050	19,050
원양어업경영자금	3,310	2,590	2,070	1,480	1,480	1,480	1,480	1,480	1,480
농어촌구조개선자금	8,726	7,644 ^r	6,395 ^r	4,620	3,462	2,485	1,989	959	1,325
농 안 기 금	3,517	3,612	3,337	-	-	-	-	-	-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7,109	6,654	9,173	9,687	8,352	6,970	5,760	4,577	3,353
수 산 발 전 기 금	110 ^r	1,072 ^r	1,324	4,967	5,080	4,874	4,877	5,139	5,139
피해복구지원자금	572	875	1,461	1,428	1,420	1,440	1,406	1,269	1,098
양식어가배합사료자금							771	1,125	1,117
어업질서확립자금	59	17	6	4	3	2	2	1	1
국 민 투 자 기 금	55	9	1	-	-	2	2	2	-
귀 어 가 창 업 자 금	77	35	18	11	5	4	3	2	1
기 타 자 금	332	160	233	205	148	135	140	188	321

* 영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농안기금, 수산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운용규모를 기준으로, 외는 당해연도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작성

* ^r 표시는 수정치임

1995년 이후 수산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영어자금은 2009에 1조 9천50억원으로 1995년 대비 1조 1,5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어가부채 경감대책자금은 1995년 대비 4,440억원이 증가

특히,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은 2000년 이후 어가부채 경감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상환으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



14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기금총운용규모	해양환경분야	수산어업분야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01	26,190	-	5,030	-	21,160
'02	83,732	-	58,653	91	24,988
'03	156,086	742	56,128	1,337	97,879
'04	241,559	1,460	93,773	2,863	143,463
'05	627,225	6,948	504,472	807	114,998
'06	627,964	9,688	533,161	1,233	83,882
'07	604,856	15,039	504,933	1,236	83,648
'08	590,994	17,481	509,540	1,306	62,667
'09	599,576	52,703	498,811	1,299	46,763
'10	575,580	15,780	483,685	1,243	74,872
'11	642,611	15,900	542,401	1,546	82,764
'12	678,968	15,692	563,151	1,458	98,667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설치 당시 운용규모가 262억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사업(3,694억원)이 이관, 2006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금 편입 등에 따라 2011년도 현재 운용규모는 6,426억원 수준

2011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해양환경분야가 2.5%, 수산어업분야가 84.4%, 기금운영비가 0.2%, 여유자금운용이 12.9%임

15 어업용면세유 공급 실적



(단위 : 드럼, 억원)

유종별	'07			'08			'09			'10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합계	6,266	6,355	7,542	4,843	7,665	5,816	5,488	6,541	7,321	5,373	7,540	6,816
경유	5,206	5,229	6,398	3,920	6,250	4,805	4,502	5,291	6,256	4,473	6,204	5,824
고유황유	4,003	3,926	4,918	2,939	4,673	3,595	3,477	4,039	4,648	3,513	4,825	4,569
저유황유	1,203	1,303	1,480	981	1,577	1,210	1,025	1,252	1,607	960	1,379	1,255
중질유	365	334	50	291	384	51	377	415	57	341	454	60
B-A유	203	205	29	147	215	28	207	245	332	202	276	36
B-B유	27	24	4	28	40	5	30	33	5	28	36	5
B-C유	135	105	17	116	129	18	140	137	19	111	141	19
MF-30	55	48	31	35	50	20	11	11	7	5	7	3
휘발유	605	632	1,053	561	857	928	560	372	987	515	720	914
윤활유	35	112	10	36	124	12	37	152	15	39	156	16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점유율을 보면, 경유가 대부분(82%이상)이며, 휘발유, 중유, 윤활유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197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01년을 기점으로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다만, '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에 의거 경유, 휘발유의 세금부과액 (교통세, 주행세, 특소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액의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음.



16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81~'95	8,527	120,575	7,979	93,200	543	27,150	5	225
1996	1,036	31,675	783	18,725	243	12,150	10	800
1997	1,117	38,728	848	22,928	254	14,600	15	1,200
1998	1,193	40,642	927	25,440	260	14,602	6	600
1999	784	25,890	608	15,900	173	9,690	3	300
2000	794	24,600	625	15,900	166	8,400	3	300
2001	696	21,870	547	14,310	149	7,560		
2002	732	21,870	581	14,310	151	7,560		
2003	673	20,500	534	13,500	139	7,000		
2004	477	14,350	379	9,450	98	4,900		
2005	526	18,350	399	11,950	127	6,400		
2006	437	15,350	328	9,450	98	4,900	11	1,000
2007	388	15,700	291	10,463	89	4,437	8	800
2008	424	15,699	350	11,749	69	3,450	5	500
2009	442	20,000	234	7,600	168	8,400	40	4,000
2010	504	23,942	340	12,802	123	7,110	41	4,030
합계	18,750	469,741	15,753	307,677	2,850	148,309	147	13,755

17 연도별 수산물 가공생산 및 지원 현황

(단위 : 톤, 개소)

연 도	가공품생산량	가공업체현황	가공시설지원현황
'60	-	249	-
'70	183,791	221	-
'80	366,979	376	-
'90	1,754,887	562	101
'95	1,691,810	619	94
'96	1,727,497	1,694 ^r	113
'97	1,653,342	1,677 ^r	124
'98	1,541,249	1,912 ^r	116
'99	1,594,134	1,720 ^r	75
'00	1,465,094	1,869 ^r	126
'01	1,546,839	1,690 ^r	89
'02	1,590,000	1,630 ^r	102
'03	1,357,717	1,465	100
'04	1,528,753	1,480	131
'05	1,559,201	2,937	53
'06	1,546,784	2400 ^r	82
'07	1,384,000	2,424	48
'08	1,766,528	2,502	73
'09	1,898,135	2,580	72
'10	1,560,209	2,726	73

* ^r 표시된 수치는 수정치임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1970년대~1980년대 수산가공 기반시설 미비 등에 따라 대부분의 수산물을 미가공 상태로 유통하여 1970년대 184천톤, 1980년대 367천톤에 불과하였음.

1990년대 이후 가공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자동화에 따른 고차가공의 증가와 가공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1990년 1,750톤 생산 이후 현재까지 1,500톤 수준으로 꾸준히 생산하여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18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단위 : 톤)

연 도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353,780	155,436	172,044	-	-	26,300
'95	389,772	192,573	132,491	-	-	64,708
'96	389,470	185,955	142,397	-	-	61,118
'97	459,679	183,514	140,296	49,059	19,691	67,119
'98	445,956	162,858	127,673	69,988	12,712	72,725
'99	406,253	148,287	116,698	64,284	11,604	65,380
'00	409,006	148,491	118,732	71,013	12,981	57,789
'01	421,424	145,732	116,951	69,345	13,724	75,672
'02	379,586	127,044	108,381	64,073	14,609	65,479
'03	379,197	125,685	105,200	58,776	16,250	73,286
'04	385,851	123,928	102,191	59,847	18,481	81,404
'05	384,547	121,152	98,102	60,447	18,878	85,968
'06	382,049	124,311	98,300	55,571	13,542	90,325
'07	382,373	122,530	101,049	56,151	12,061	90,582
'08	373,613	117,781	99,336	53,718	11,166	91,612
'09	411,833	120,855	100,799	52,683	8,836	128,660
'10	417,591	119,373	102,109	46,628	7,601	141,880

도매시장 취급물량은 1997년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의 수도권 시장인 가락동, 노량진, 구리시장의 거래량이 268,110톤으로 전체 18개 도매시장(공판장 2개 포함) 거래량의 64.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19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금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462,044	248,964	182,570	-	-	30,510
'95	814,113	399,115	286,644	-	-	128,354
'96	807,664	395,509	300,140	-	-	112,015
'97	881,058	377,895	295,142	62,762	13,998	131,261
'98	894,996	352,888	281,397	91,081	25,542	144,088
'99	886,783	347,596	282,605	90,853	27,620	138,109
'00	901,355	365,375	277,024	114,383	24,936	119,637
'01	1,052,979	408,653	305,364	129,265	32,819	176,878
'02	1,024,534	390,939	315,459	125,378	36,451	156,307
'03	980,524	347,838	308,595	118,812	42,902	162,377
'04	1,093,646	385,961	330,459	126,250	50,874	200,102
'05	1,082,112	392,390	310,225	119,932	53,081	206,484
'06	1,082,561	394,242	318,138	114,438	38,067	217,676
'07	1,074,994	388,399	322,128	116,611	28,689	219,167
'08	1,128,417	404,353	331,221	128,292	26,931	237,620
'09	1,321,302	428,051	343,084	135,351	30,656	384,160
'10	1,441,452	476,244	347,087	130,601	30,053	457,467

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취급 물량의 단가상승으로 꾸준한 증가세 유지



20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연 도	물 량			금 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94	2,558,483	1,622,668	63.4	3,241,172	2,171,918	67.0
'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96	2,498,632	1,711,074	68.5	3,378,401	2,404,050	71.2
'97	2,382,540	1,485,364	62.3	3,405,168	2,119,423	62.2
'98	2,085,566	1,372,644	65.8	3,243,952	2,029,591	62.6
'99	2,101,314	1,489,351	70.9	3,111,922	2,110,737	67.8
'00	1,842,373	1,337,756	72.6	3,013,339	2,131,779	70.7
'01	1,907,926	1,446,237	75.8	3,185,471	2,286,678	71.8
'02	1,877,331	1,338,966	71.3	3,281,523	2,233,559	68.1
'03	1,922,771	1,244,003	64.7	3,571,486	2,101,975	58.9
'04	1,994,402	1,204,486	60.4	3,826,822	2,287,488	59.8
'05	2,138,115	1,181,533	55.3	4,054,362	2,251,119	55.5
'06	2,368,089	1,239,395	52.3	4,194,420	2,207,640	52.6
'07	2,538,103	1,273,907	50.2	4,538,651	2,277,467	50.2
'08	2,667,548	1,381,913	51.8	4,751,257	2,668,461	56.2
'09	2,540,289	1,324,813	52.2	5,487,249	3,051,178	56.2
'10	2,488,721	1,286,259	51.7	5,727,326	3,585,979	62.6

※ 어업생산량 :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생산량(원양어업, 내수면어업제외)

※ 어업생산액 :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생산량(원양어업, 내수면어업제외)

산지위판장 거래제도가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도부터 물량 기준으로 위판율이 감소하였으나, '05년부터 약 50% 유지

2010년의 경우 위판물량은 어업생산량 대비 51.3%, 위판대금은 어업생산액 대비 62.9%를 차지하고 있음.

21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 우리나라 1인 수산물 연간 소비량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산물 소비량 (kg/인/Yr)	38.3	36.8	42.2	44.7	44.9	49.0	49.5	56.5	55.0	54.9	49.8

※ 해산물 소비량 :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 + 해조류(Seaweeds)

※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자료

■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자급율(%)	102.2	87.7	81.7	72.1	69.4	61.6	65.1	66.4	70.8	78.5	78.2

※ 자급율 :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이며, 해조류(Seaweeds) 제외

※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자료

■ 국가별 연간 수산물 소비량

구 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어패류 소비량 (kg/인/Yr)	54.9	64.6	17.9	23.4	19.7	22.6	22.6	32.9

※ 기준(한국2008년, 타 국가 2005년)

※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자료



22 수산물 수급 현황



총괄

(단위 : 천톤)

	수요			합계	공급			자급률
	국내소비	수출	이월		생산	수입	재고	
'04년실적	3,922	1,116	531	5,739	2,519	2,477	743	61.6
'05년실적	4,169	1,121	512	5,802	2,714	2,557	531	65.1
'06년실적	4,568	1,047	575	6,190	3,032	2,646	512	66.4
'07년실적	4,621	1,211	618	6,454	3,275	2,604	575	70.8
'08년실적	4,280	1,266	567	6,113	3,360	2,135	618	78.5
'09년실적	4,071	1,336	528	5,935	3,182	2,186	567	78.2
'10년실적	3,625	1,751	603	5,979	3,112	2,339	528	85.8

주요품목별

(단위 : 톤)

		수요			합계	공급		
		국내소비	수출	차년이월		생산	수입	전년재고
명태	'08실적	351,548	18,790	40,122	410,460	27,980	306,421	76,059
	'09실적	297,797	11,760	50,699	360,256	38,862	281,272	40,122
	'10실적	321,497	38,801	100,544	460,842	46,683	363,460	50,699
오징어	'08실적	270,576	152,263	121,600	544,439	362,940	51,038	130,461
	'09실적	262,994	103,261	72,661	438,916	273,812	43,504	121,600
	'10실적	229,664	61,912	55,509	347,085	224,546	49,878	72,661
고등어	'08실적	172,107	42,212	65,002	279,321	191,537	30,472	57,312
	'09실적	143,285	56,642	71,132	271,059	176,575	29,482	65,002
	'10실적	136,289	26,029	51,193	213,511	99,819	42,560	71,132
갈치	'08실적	112,893	977	10,061	123,931	75,092	34,110	14,729
	'09실적	119,849	1,335	12,125	133,309	87,833	35,415	10,061
	'10실적	86,051	1,688	13,578	101,317	59,823	29,369	12,125
조기	'08실적	90,860	428	25,882	117,170	41,141	43,068	32,961
	'09실적	80,250	411	23,571	104,232	37,289	41,061	25,882
	'10실적	60,546	343	21,636	82,525	36,691	44,242	23,571

2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별	수산물 유통시설								산지 중도매인
	계	위판장	단독 공판장	도매 시장	해양수산 복합공간	수산물 유통물류 센터	기타	수산물 직매장	
합계	291	206	2	16	4	8	7	48	3,098
서울	3	-	1	2	-	-	-	-	-
부산	22	10	-	1	-	-	-	11	241
대구	2	-	1	1	-	-	-	-	-
인천	7	7	-	-	-	-	-	-	145
광주	1	-	-	1	-	-	-	-	-
대전	1	-	-	1	-	-	-	-	-
울산	4	2	-	1	-	1	-	-	79
경기	11	2	-	4	-	-	-	5	9
강원	33	23	-	-	-	1	-	9	121
충북	2	-	-	2	-	-	-	-	-
충남	17	15	-	-	1	1	-	-	233
전북	7	4	-	2	1	-	-	-	123
전남	71	53	-	-	2	3	7	6	761
경북	30	25	-	1	-	1	-	3	325
경남	62	54	-	-	-	1	-	7	798
제주	18	11	-	-	-	-	-	7	263

출처 : 내부행정자료

수산정책과(02-500-2318)



24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단위 : 척)

연 도	외 국 어 선				국내어선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소계	중국	일본	기타		
'90	-	-	-	-	2,862	15
'95	46	45	1	-	3,595	15
'98	39	39	-	-	3,157	18
'99	84	80	4	-	3,277	20
'00	63	62	1	-	3,161	25
'01	177	174	3	-	3,291	25
'02	176	175	1	-	3,102	25
'03	240	240	-	-	2,067	28
'04	449	437	6	-	3,673	30
'05	584	584	-	-	4,054	32
'06	522	522	-	-	3,015	33
'07	494	494	-	-	3,773	33
'08	432	432	-	-	4,449	33
'09	381	381	-	-	4,868	34
'10	370	370	-	-	5,085	34
'11.8	210	210	-	-	2,180	34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 이후 중국어선 단속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25 국가어항 건설 추진 현황

■ 투자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투자현황(시설비)			
	총 계 획	'10까지	잔사업비	투자율
계	58,615	39,864	18,751	68%
국가어항	38,467	28,024	10,443	73%
지방어항	20,148	11,840	8,308	59%

■ 완공 현황

(단위 : 개 항)

구 분	대 상 항	'10까지 완공	미 완 공	완 공 율
계	394	252	142	64%
국가어항	109	92	17	84%
지방어항	285	160	125	56%



26 시·도별 어항 건설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완공항(완공율%)	개발중인항	미개발항	
합계	계	394	252개항(64%)	49개항(12%)	93개항(24%)
	국가어항	109	92개항(84)	11개항(10)	6개항(6)
	지방어항	285	160개항(56)	38개항(13)	87개항(31)
부산	국가어항	3	다대포, 대변(67)	-	천성(33)
	지방어항	13	10개항(77)	-	3개항(23)
인천	국가어항	5	어유정, 장봉, 덕적도, 울도, 선진포(100)	-	-
	지방어항	15	10개항(67)	-	5개항(33)
울산	국가어항	2	정자, 방어진항(100)	-	-
	지방어항	4	4개항(100)	-	-
경기	국가어항	1	-	-	궁평(100)
	지방어항	5	5개항(100)	-	-
강원	국가어항	14	대진, 거진, 아야진, 대포, 남애, 사천진, 금진, 덕산, 장호, 임원, 수산, 안목, 공현진(93)	궁촌(7)	-
	지방어항	14	7개항(50)	3개항(21)	4개항(29)
충남	국가어항	8	안흥, 오천, 외연도, 흥원, 모항(63)	남당, 삼길포(25)	장고항(12)
	지방어항	29	18개항(62)	5개항(17)	6개항(21)
전북	국가어항	6	연도, 위도, 격포, 말도, 어청도(83)	구시포(17)	-
	지방어항	12	4개항(33)	3개항(25)	5개항(42)
전남	국가어항	31	국동, 돌산, 안도, 녹동, 발포, 시산, 풍남, 계마, 안마, 원평, 전장포, 서거차, 서망, 어란진, 마량, 청산도, 소안, 사동, 수품, 여서, 득암, 낭도, 초도, 여호, 소흑산도, 우이도, 보옥(87)	회진, 연도, 도창(10)	이목(3)
	지방어항	91	43개항(47)	11개항(12)	37개항(41)
경북	국가어항	14	죽변, 대진, 구계, 대보, 양포, 감포, 읍천, 저동, 사동, 축산, 현포, 오산, 구산(93)	남양(7)	-
	지방어항	23	11개항(48)	1개항(4)	11개항(48)
경남	국가어항	19	광암, 외포, 능포, 맥전포, 신수, 능양, 미조, 삼덕, 옥지, 물건, 다대포, 매물도, 지세포, 구조라, 원전(79)	대포·근포, 호두(11)	남포, 노량(10)
	지방어항	61	38개항(62)	11개항(18)	12개항(20)
제주	국가어항	6	신양, 모슬포, 위미, 도두, 김녕(83)	하효(17)	-
	지방어항	18	10개항(56)	5개항(28)	3개항(16)

27 지방어항 현황

지정·해제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최초 지정	255	3	4	-	15	16	20	11	59	36	81	10
'73이후 추가지정	254	11	33	6	24	1	22	8	107	-	28	14
'73이후 해제	224	1	22	2	34	3	13	7	75	13	48	6
2010.12현재	285	13	15	4	5	14	29	12	91	23	61	18

개발계획 현황

(단위 : 항수)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 이 전	14	1	-	-	-	3	6	-	3	1	-	-
'91 이 후	254	10	14	4	5	11	23	12	76	20	61	18
현 재	268	11	14	4	5	14	29	12	79	21	61	18

'72년도에 255개 어항을 최초로 지정하여 2005년까지 지정 506개항, 해제 222개항으로 현재 284개항임.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인 광역시장·도지사가 어촌·어항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항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협의.

'82년도에 우동항(부산시)을 최초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말 현재 265개 어항이 수립됨.



28 국가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 까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301,918	142,505	145,217	179,185	151,366	143,528	126,152	107,902	114,201	106,902	140,527	140,582
부산	32,854	6,174	6,068	21,739	6,989	5,000	5,575				8,504	11,789
인천	12,985	2,926	5,721	7,140	6,623	3,057	11,628	9,499	12,790	3,700	3,471	4,484
울산	27,895	985	5,277	3,148	2,083	886		435				
강원	124,989	18,493	19,201	13,396	12,087	15,350	19,222	14,879	12,367	13,321	14,220	13,119
충남	76,799	10,399	11,496	15,887	16,405	15,336	16,359	11,667	16,178	5,827	17,873	9,377
전북	95,935	10,741	7,392	8,846	3,519	4,570	4,213	5,942	5,999	8,202	14,775	6,693
전남	414,821	51,193	48,819	56,179	54,181	54,404	44,666	32,184	26,767	31,327	31,181	33,637
경북	222,530	22,843	24,166	23,231	24,463	18,914	9,856	14,930	16,340	13,995	17,505	27,588
경남	190,107	15,819	13,733	21,593	17,012	22,049	11,003	13,093	11,022	16,623	21,872	25,895
제주	103,003	2,932	3,344	8,026	8,004	3,962	3,630	5,273	12,738	13,907	11,126	8,000

어항시설 예산은 1994년까지 일반회계로 투자되어 왔으며, 국가재정상 투자금액이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1995년부터 농특회계의 투자로 어항시설예산이 대폭 증액되어(1990 대비 213% 증액) 본격적인 어항개발이 이루어짐

29 지방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8,200	22,750	25,000	27,400	29,454	35,313	42,786	48,757	50,977	46,926	53,741	59,657
부 산	1,260	1,420	1,489	1,498	1,316	1,300	1,300	900	900	3,000	1,700	1,000
인 천	1,250	1,380	1,465	1,500	1,384	1,450	482	600	600	1,000	1,000	2,900
울 산	-	540	576	650	662	1,000	1,000	1,096	1,200	1,200		
경 기	320	510	773	995	1,485	3,725	4,444	4,800	2,464		2,850	5,600
강 원	1,820	2,200	2,330	2,565	3,519	3,519	3,500	4,000	4,000	4,500	5,700	5,549
충 남	1,620	1,960	2,315	2,500	2,678	3,000	6,400	7,360	10,221	7,106	9,600	9,600
전 북	1,130	1,360	1,461	1,461	1,412	1,578	2,060	3,161	3,050	5,150	4,591	5,958
전 남	4,250	5,220	5,692	6,540	5,888	7,725	10,600	14,640	14,150	10,100	11,400	11,000
경 북	1,630	1,980	2,116	2,371	2,716	2,600	2,600	2,600	2,600	2,600	3,900	3,050
경 남	3,320	4,130	4,406	4,720	5,438	5,016	5,000	4,800	4,800	7,270	8,000	10,000
체 주	1,600	2,050	2,377	2,600	2,956	4,400	5,400	4,800	6,992	5,000	5,000	5,000

1994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1994~2004년 기간동안 4,500억원(지방비 50% 포함) 투자 계획에 따라, 매년 적정예산을 확보, 지원하여 2004년까지 목표 투자 계획 달성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속투자



30 어촌 정주어항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시·군·구	어촌정주어항 지정수			소규모 어항수		
		계	육지	도서	계	육지	도서
합 계	11개시·도 67개시군구	576	463	113	1,316	546	770
부 산	기 장 군	2	2		7	7	
	해운대구				2	2	
	수영구				1	1	
	남구				1	1	
	영도구				2	2	
	서구				1	1	
	사하구				4	4	
	강서구	3	3		10	10	
사상구				1	1		
	소 계 (9)	5	5	0	29	29	0
인 천	중구	5	4	1	3	3	
	서구	1		1			
	강화군	7	7		19	4	15
	용진군	18	2	16	17		17
	소 계 (4)	31	13	18	39	7	32
울 산	동구				7	7	
	북구	4	4		4	4	
	울주군	5	5		2	2	
	소 계 (3)	9	9		13	13	0
경 기	안산시				12	10	2
	평택시				1	1	
	화성시	7	4	3	1	1	
	김포시	2	2				
	시흥시				4	4	
	소 계 (5)	9	6	3	18	16	2
강 원	강릉시	3	3		3	3	
	동해시	3	3				
	속초시	2	2				
	삼척시	9	9				
	고성군	2	2		1	1	
	양양군	5	5		3	3	
	소 계 (6)	24	24		7	7	

시·도	시·군·구	어촌정주어항 지정수			소규모 어항수		
		계	육지	도서	계	육지	도서
충남	령	2	2		13	3	10
	산				4	1	3
	천				3	3	
	성				2	1	1
	안	13	13		14	12	2
	진				4	3	1
	소 계 (6)	15	15		40	23	17
전북	산	1		1	9		9
	제						
	창				1		1
	안	5	3	2	8	2	6
	소 계 (4)	6	3	3	18	2	16
전남	포				8	1	7
	수	51	26	25	121	55	66
	천	4	4		2	2	
	양				10	10	
	홍				124	67	57
	홍				27	26	1
	진				22	21	1
	남	2	2		36	30	6
	안	10	10		17	15	2
	평	1	1		4	4	
	광	2	2		16	7	9
	도				204	30	174
	안				198	4	194
	성	11	11		6		6
	도				97		97
	소 계 (15)	81	56	25	892	272	620



시·도	시·군·구	어촌정주어항 지정수			소규모 어항수		
		계	육지	도서	계	육지	도서
경 북	포항				44	44	
	경주				7	7	
	영덕	4	4		15	15	
	울진	4	4		12	12	
	울릉				8		8
	소 계 (5)	8	8		86	78	8
경 남	마산				27	22	5
	진해	6	4	2	8	7	1
	통영	49	25	24	97	42	55
	거제	82	54	28	11	11	
	고성	59	59		2		2
	사천	40	34	6			
	남해	95	92	3			
	하동	11	10	1			
	소 계 (8)	342	278	64	145	82	63
제 주	제주	36	36		11	1	10
	서귀포	10	10		18	16	2
	소 계 (2)	46	46		29	17	12

※ 지자체(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자료기준

31 수산물 생산 현황

(1) 연도별 어업생산량(총괄)

어업별

(단위 : 천MT, 억원)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0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919	4,913	34	908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710	9,901	27	2,231
'08	3,363	63,550	1,286	32,297	1,382	15,225	666	13,274	29	2,753
'09	3,182	69,242	1,227	36,404	1,313	18,463	612	11,638	30	2,738
'10	3,112	74,257	1,134	39,117	1,355	18,156	592	13,645	31	3,338

품종별

(단위 : 천MT)

	계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90	3,198	1,822	435	112	346	42	442
'95	3,348	1,695	405	120	421	35	671
'00	2,514	1,280	300	83	428	36	387
'03	2,487	1,144	403	89	379	15	457
'04	2,519	1,157	410	85	306	15	546
'05	2,714	1,265	409	92	295	16	636
'06	3,032	1,261	474	110	392	17	778
'07	3,275	1,330	555	124	432	23	811
'08	3,363	1,448	429	126	402	23	935
'09	3,182	1,425	421	133	312	24	870
'10	3,112	1,331	440	147	256	23	915



(2)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 해조류

(단위 : M/T)

	계	톳	우무가사리	미역	청각	김	다시마류	파래	도박류	기타
'90	30,324	7,222	8,339	5,075	565	3,533	7	1,425	756	3,402
'95	22,368	6,179	7,798	3,868	530	62	979	497	-	2,455
'00	13,023	6,062	2,872	1,717	220	1	350	64	15	1,722
'03	5,154	2,744	467	942	27	122	37	182	7	626
'04	9,060	5,284	1,791	719	616	3	-	71	48	528
'05	15,212	3,520	3,079	4,740	3,083	13	9	246	128	394
'06	13,754	2,933	3,012	3,569	2,875	2	12	164	473	714
'07	18,189	2,672	2,859	6,384	3,950	24	28	167	446	1,659
'08	13,866	2,721	1,093	3,114	1,400	1	2	295	1,170	4,070
'09	10,843	2,590	822	3,882	553	23	354	297	670	1,652
'10	13,043	2,366	3,715	4,783	451	8	180	368	118	1,054

■ 패류

(단위 : M/T)

	계	굴류	바지락	동죽	소라고동	개량조개	키조개	골뱅이	맛류	백합류	기타
'90	106,458	16,079	12,868	27,234	2,673	3,353	15,299	6,382	2,480	935	19,155
'95	92,267	18,262	15,041	9,225	8,834	9,038	3,634	5,224	4,905	2,715	15,389
'00	77,103	15,939	20,982	2,468	7,281	4,149	5,795	818	1,572	1,430	16,669
'03	109,878	20,201	13,148	21,240	14,065	5,694	2,443	2,600	6,311	6,918	17,258
'04	100,180	25,690	12,902	13,433	9,507	3,363	2,471	2,101	5,456	6,860	18,397
'05	81,012	27,320	14,447	5,201	8,498	128	3,453	1,696	2,240	3,135	14,894
'06	80,434	31,016	7,559	7,597	7,496	612	5,409	1,434	854	4,490	13,967
'07	73,714	29,316	8,640	2,601	6,909	606	7,897	1,639	1,457	2,662	11,987
'08	81,399	29,185	20,761	1,444	3,055	146	5,489	1,133	1,344	1,415	17,427
'09	90,192	24,254	22,488	698	331	324	7,368	1,288	807	1,396	31,893
'10	80,380	22,686	12,818	1,393	7,242	248	10,224	3,018	698	1,146	20,907

■ 어류

(단위 : M/T)

	계	멸치류	고등어류	갈치	강달어류	잔갱어류	참조기	삼치류	붕장어	가자미류	병어류	청어	아귀	전어	꽂치	송어류	가오리류	도루묵	조외발락	납치류	기타
'90	1,111,328	130,192	96,297	103,736	53,212	16,586	27,890	16,700	21,848	12,594	10,304	6,219	8,759	8,525	5,301	2,522	7,600	3,137	5,072	2,380	572,454
'95	957,692	220,679	200,481	94,596	70,394	12,269	25,173	17,429	19,667	13,674	10,896	8,622	8,173	7,931	6,544	4,282	3,990	2,065	1,695	1,914	217,218
'00	769,628	201,192	145,908	81,050	31,345	19,510	19,630	25,641	8,303	15,423	7,838	13,473	4,930	6,366	19,883	8,730	2,309	1,571	2,682	1,607	152,237
'03	656,528	250,106	122,044	62,861	18,880	20,454	7,098	22,608	17,451	13,107	7,496	3,571	10,486	6,518	1,424	7,877	2,566	1,928	3,811	1,801	74,441
'04	672,227	196,646	184,274	66,291	18,727	25,513	17,570	26,622	16,506	12,038	9,286	5,113	11,885	4,313	2,960	8,023	2,320	2,472	3,774	1,737	56,157
'05	721,947	249,001	135,596	60,086	15,495	42,608	15,272	33,794	14,739	15,319	11,448	7,592	11,448	6,264	4,319	9,774	2,446	2,401	3,000	2,112	79,233
'06	715,048	265,346	101,427	63,739	19,375	23,227	21,428	36,484	15,242	19,879	13,873	12,496	12,226	7,315	697	8,835	3,126	2,647	3,713	2,298	81,675
'07	761,970	221,110	143,776	66,029	13,817	19,089	34,221	42,199	19,399	24,340	9,489	28,280	14,417	9,873	4,740	11,312	3,996	3,769	4,037	3,074	85,003
'08	878,348	261,531	190,456	72,313	11,046	22,752	33,200	40,809	18,441	20,264	8,121	45,472	17,944	7,191	4,909	8,248	2,236	2,720	4,484	4,263	101,948
'09	795,502	203,728	175,329	85,450	12,074	22,087	34,033	36,793	13,507	19,687	9,929	37,514	14,961	5,826	3,550	6,178	2,593	3,939	3,178	5,439	103,707
'10	736,198	249,636	99,534	59,242	5,003	19,305	31,931	35,778	13,757	20,107	8,871	25,005	13,104	8,282	2,564	6,387	2,021	4,236	2,351	6,035	122,849

■ **갑각류**

(단위 : M/T)

	계	붉은대게	젓새우	꽃게	꽃새우	중하	보리새우	대하	대게	답새우	기타
'90	104,856	-	22,579	23,004	-	3,358	2,336	912	3	698	51,966
'95	117,161	33,155	16,495	17,651	5,414	2,168	2,399	1,406	79	1,242	37,152
'00	74,994	16,281	13,985	12,842	5,263	2,621	578	1,211	756	461	20,996
'03	66,002	19,262	12,885	9,478	3,988	325	240	148	1,889	393	17,394
'04	57,110	23,113	7,889	2,683	2,575	414	132	848	2,605	595	16,256
'05	62,075	21,926	7,352	3,714	3,364	834	282	989	3,240	742	19,632
'06	73,715	23,890	7,810	6,894	4,272	980	215	1,261	4,062	772	23,559
'07	85,297	25,388	12,553	13,606	3,885	1,010	315	704	4,817	734	22,285
'08	88,052	28,293	14,934	17,846	2,497	1,646	254	275	3,019	554	18,734
'09	100,126	29,993	13,722	31,302	3,452	1,048	297	219	2,372	1,111	16,610
'10	108,199	30,749	18,861	33,193	2,587	652	123	252	2,606	1,093	18,083

■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낙지	문어	주꾸미	갑오징어류	꽃뚜기	기타
'90	109,236	74,172	9,264	5,962	4,422	12,395	2,391	630
'95	227,019	200,897	10,803	7,027	3,870	2,567	1,222	633
'00	248,047	226,309	5,861	8,718	4,569	1,267	885	438
'03	252,624	233,254	7,248	5,121	5,200	872	758	171
'04	232,588	212,760	7,023	5,953	5,048	905	793	106
'05	211,517	189,126	7,658	7,637	4,390	1,325	1,304	77
'06	219,792	197,084	7,397	7,894	4,032	1,988	1,354	43
'07	205,611	174,479	8,625	12,033	6,828	1,938	1,657	51
'08	216,303	186,160	7,881	11,838	4,075	3,038	2,379	932
'09	223,212	189,160	7,013	15,386	4,285	3,396	2,260	1,712
'10	187,777	159,130	6,954	10,813	2,977	4,105	2,203	1,595

■ **기타 수산동물**

(단위 : M/T)

	계	성게	해삼	우렁쟁이	미더덕	기타
'90	9,608	4,325	2,491	222	1,961	609
'95	8,706	3,707	1,891	2,067	25	1,016
'00	6,205	1,461	1,419	1,440	3	1,882
'03	6,340	1,607	1,281	836	994	1,622
'04	5,522	1,301	1,154	1,115	211	1,741
'05	5,278	2,035	1,135	1,485	62	561
'06	6,072	2,596	1,614	1,105	8	749
'07	7,518	2,651	2,936	1,127	1	803
'08	7,737	3,555	2,260	1,482	-	440
'09	7,091	2,846	2,789	1,107	5	344
'10	6,939	2,868	2,687	1,076	1	307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백만원)

품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멸치류	생산량	201,192	273,927	236,315	250,106	196,646	249,001	265,346	221,110	261,532	203,728	249,636	생산금액
	생산금액	203,278	303,171	315,691	186,601	167,694	286,773	274,886	233,260	286,631	286,419	390,405	생산량
고등어류	생산량	145,908	203,717	141,751	122,044	184,274	135,596	101,427	143,776	190,456	175,329	94,331	생산금액
	생산금액	148,771	183,371	170,776	157,906	233,856	167,382	147,817	179,314	210,082	280,378	167,876	생산량
갈치	생산량	81,050	79,898	60,172	62,861	66,291	60,086	63,739	66,029	72,313	85,450	59,242	생산금액
	생산금액	203,707	244,675	203,283	200,408	194,639	225,004	198,611	228,330	328,467	296,454	300,903	생산량
삼치류	생산량	25,641	25,513	25,956	22,608	26,622	33,794	36,484	42,199	40,809	36,793	35,778	생산금액
	생산금액	44,823	48,795	44,407	38,227	56,011	60,006	50,520	55,065	84,547	106,662	114,071	생산량
참조기	생산량	19,630	7,938	10,941	7,098	17,570	15,272	21,428	34,221	33,200	34,033	31,931	생산금액
	생산금액	119,055	60,598	70,368	53,022	107,665	77,093	91,510	148,377	115,301	155,054	160,686	생산량
가자미류	생산량	15,423	14,503	13,816	13,107	12,038	15,319	19,879	24,340	20,162	19,687	20,107	생산금액
	생산금액	78,802	74,656	74,575	81,940	86,376	107,694	142,892	169,226	128,005	135,930	145,641	생산량
꽃게	생산량	12,842	13,016	18,659	9,478	2,683	3,714	6,894	13,606	17,596	31,302	33,193	생산금액
	생산금액	125,159	134,819	163,420	126,550	51,834	54,537	92,142	141,176	190,452	279,764	278,915	생산량
붉은대게	생산량	16,281	12,973	9,166	19,262	23,113	21,926	23,890	25,388	28,293	29,993	30,749	생산금액
	생산금액	12,155	15,487	11,620	37,623	45,707	44,845	62,800	46,811	42,738	44,264	41,637	생산량
대게	생산량	756	1,001	896	1,889	2,605	3,240	4,062	4,817	3,019	2,372	2,606	생산금액
	생산금액	8,924	9,433	11,584	21,026	31,581	37,502	48,078	47,371	43,209	39,133	41,385	생산량
굴류	생산량	15,939	10,056	7,950	20,201	25,690	27,320	31,016	29,316	29,185	24,254	22,686	생산금액
	생산금액	12,354	8,847	9,333	18,602	23,490	23,562	26,002	24,876	23,991	22,551	23,479	생산량
바지락	생산량	20,982	20,004	14,758	13,148	12,902	14,447	7,559	8,640	20,761	22,488	12,818	생산금액
	생산금액	27,350	29,029	27,668	26,982	26,110	26,591	15,704	17,363	38,377	47,746	30,379	생산량
오징어	생산량	226,309	225,616	226,656	233,254	212,760	189,126	197,084	174,479	186,160	189,160	159,130	생산금액
	생산금액	279,595	283,241	304,054	372,977	443,191	405,949	348,618	263,463	282,701	390,506	567,828	생산량
문어	생산량	8,718	9,668	12,408	5,121	5,953	7,637	7,894	12,033	11,838	15,386	10,813	생산금액
	생산금액	58,422	71,808	83,626	45,865	53,557	67,729	73,101	97,704	95,345	138,324	130,006	생산량
낙지	생산량	5,861	5,911	5,297	7,248	7,023	7,658	7,397	8,625	7,879	7,013	6,954	생산금액
	생산금액	72,814	83,415	87,782	114,818	118,958	119,177	120,151	132,481	141,732	125,584	129,313	생산량

(3)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 해조류

(단위 : MT)

	계	미역	김	다시마류	톳	파래	청각	말	매생이	기타
'90	411,869	269,333	97,637	8,084	23,920	12,463	427	-	-	5
'95	649,099	386,819	192,960	27,295	37,679	4,344	2	-	-	-
'00	374,456	212,429	130,488	14,160	11,654	5,288	164	-	-	273
'03	452,054	198,172	193,553	25,259	33,661	1,355	53	-	-	-
'04	536,748	261,574	228,554	22,510	22,814	1,154	142	-	-	-
'05	621,156	281,871	197,610	108,327	30,058	814	1,597	877	-	2
'06	764,914	322,371	217,559	201,919	21,125	682	165	919	-	174
'07	792,593	309,097	210,956	250,049	20,909	684	158	490	-	-
'08	921,024	381,076	224,242	285,221	17,701	8,003	1,186	1,059	-	610
'09	858,659	309,155	211,444	306,183	19,533	5,930	1,796	-	2,536	2,536
'10	901,672	393,616	235,534	241,322	21,133	4,531	1,394	2,383	2,819	1,799

■ 패류

(단위 : MT)

	계	굴류	홍합류	바지락	피조개	꼬막류	맛류	키조개	동죽	전복류	기타
'90	325,592	219,124	9,759	61,713	17,758	11,113	31	11	5,607	2	474
'95	312,252	191,156	75,353	15,260	9,357	13,027	7,169	51	478	61	340
'00	222,608	177,079	11,713	17,927	10,618	820	-	1,998	-	20	2,433
'03	291,063	238,326	15,785	27,494	4,696	2,440	2	783	-	1,065	472
'04	304,889	239,270	20,409	27,570	3,134	10,849	-	1,997	-	1,260	400
'05	326,255	251,706	43,953	17,401	2,548	3,226	-	4,950	-	2,062	409
'06	391,060	283,296	81,617	14,327	2,064	5,063	-	872	-	3,050	771
'07	478,646	321,276	98,121	18,819	3,015	28,372	-	3,870	3	4,350	820
'08	344,799	249,976	67,442	16,633	1,903	1,637	-	1,318	213	5,146	531
'09	326,544	240,911	55,035	17,905	1,714	2,966	-	1,320	-	6,207	468
'10	355,699	267,776	54,440	23,430	1,560	1,155	-	748	-	6,228	362

■ 어류

(단위 : MT)

	계	넙치류	조피볼락	송어류	참돔	농어	감성돔	기타돔류	기타볼락	방어	기타
'90	2,656	1,037	-	-	228	391	-	56	386	462	96
'95	8,360	6,733	985	34	25	193	9	16	174	159	32
'00	25,986	14,127	8,473	968	412	605	221	386	225	494	75
'03	72,393	34,533	23,771	4,093	4,417	2,778	1,084	1,287	167	114	149
'04	64,476	32,141	19,576	3,596	3,988	1,850	1,379	1,430	132	45	339
'05	81,437	40,075	21,297	5,500	5,816	2,600	2,671	2,048	339	57	1,034
'06	91,123	43,852	27,517	5,651	4,386	1,571	2,705	1,689	496	66	3,190
'07	97,663	41,171	35,564	4,921	7,213	2,361	2,841	1,109	415	5	2,063
'08	99,006	46,432	32,992	6,149	7,424	2,007	1,588	19	263	208	1,924
'09	109,516	54,674	33,020	5,581	9,226	2,395	1,694	4	270	304	2,348
'10	80,110	40,925	20,918	4,657	6,300	1,952	2,254	9	280	141	2,674



■ 갑각류

(단위 : MT)

	계	대하	보리새우	기타새우	흰다리새우
'90	312	257	55	-	-
'95	438	404	34	-	-
'00	1,158	1,158	-	-	-
'03	2,324	2,324	-	-	-
'04	2,426	2,426	-	-	-
'05	1,399	1,399	-	-	-
'06	1,683	1,022	-	-	661
'07	1,321	463	-	-	858
'08	1,924	130	-	-	1,794
'09	1,893	81	-	-	1,812
'10	2,731	26	-	-	2,705

■ 기타 수산동물

(단위 : MT)

	계	우렁챙이	미더덕	기타(오만둥이)
'90	32,291	20,768	11,523	-
'95	26,302	22,626	3,675	1
'00	29,165	2,336	13,889	12,940
'03	8,411	3,116	2,047	3,248
'04	9,176	6,349	2,590	237
'05	10,827	9,334	1,412	81
'06	10,495	7,127	1,519	1,849
'07	15,221	9,318	2,309	3,594
'08	10,446	7,826	2,620	-
'09	16,743	7,208	3,845	5,690
'10	14,788	6,364	2,920	5,504

■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백만원)

품 종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넙 치	생산량	14,127	16,426	23,348	34,533	32,141	40,075	43,852	41,171	46,432	54,674	40,925
	생산금액	190,091	191,426	228,872	367,096	330,937	353,585	458,933	438,934	408,262	545,701	489,793
조 피 볼 락	생산량	8,473	9,254	16,550	23,771	19,576	21,297	27,517	35,564	32,992	33,020	20,918
	생산금액	75,248	69,576	90,611	164,953	175,521	197,335	187,178	197,549	207,293	247,043	197,478
참 돔	생산량	412	641	960	4,417	3,988	5,816	4,386	7,213	7,424	9,226	6,300
	생산금액	4,200	5,781	8,325	37,251	35,538	52,686	35,802	57,386	55,878	78,028	64,208
감성돔	생산량	221	275	685	1,084	1,379	2,671	2,705	2,841	1,588	1,694	2,254
	생산금액	2,961	3,010	7,030	11,577	14,790	25,697	24,043	26,418	16,347	16,967	22,615
굴 류	생산량	177,079	174,117	182,229	238,326	239,270	251,706	283,296	321,276	249,976	240,911	267,776
	생산금액	83,814	83,554	82,807	98,101	112,689	130,894	131,410	130,555	118,445	155,129	169,827
홍 합	생산량	11,713	13,653	13,201	15,785	20,409	43,953	81,617	98,121	67,442	55,035	54,440
	생산금액	4,800	6,099	6,932	9,640	11,502	17,917	32,503	36,024	24,534	37,753	28,682
바지락	생산량	17,927	16,433	10,652	27,494	27,570	17,401	14,327	18,819	15,541	17,905	23,430
	생산금액	22,089	24,398	20,978	53,860	48,628	32,468	27,765	32,558	25,932	36,023	49,224
전 복	생산량	20	29	85	1,065	1,260	2,062	3,050	4,350	5,146	6,207	6,228
	생산금액	1,941	2,695	6,352	62,872	61,903	92,813	120,002	161,987	171,410	233,145	228,411
미 역	생산량	212,429	175,490	242,135	198,172	261,574	281,871	322,371	309,097	381,076	309,155	393,616
	생산금액	23,934	21,276	37,660	28,789	38,876	40,188	40,594	52,648	56,096	42,099	62,749
다시마	생산량	14,160	17,506	24,873	25,259	22,510	108,327	201,919	250,049	285,221	306,183	241,322
	생산금액	7,283	6,520	9,439	8,211	8,707	19,750	27,845	43,746	46,193	58,233	47,150
김	생산량	130,488	167,909	209,995	193,553	228,554	197,610	217,559	210,956	224,242	211,444	235,534
	생산금액	100,276	131,100	134,353	135,023	191,500	191,255	169,278	193,988	194,373	178,396	230,588
우렁 쟁이	생산량	2,336	4,603	9,613	3,116	6,349	9,334	7,127	9,318	7,826	7,208	6,364
	생산금액	2,176	7,336	11,957	5,771	10,247	16,340	12,812	15,392	13,423	13,471	15,435
미너덕	생산량	13,889	15,084	5,266	2,047	2,590	1,412	1,519	2,309	2,620	3,845	2,920
	생산금액	12,385	14,677	10,376	1,947	7,352	3,201	2,909	4,041	4,818	5,093	3,394



(4) 원양어업 생산량

어류

(단위 : M/T)

	계	명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꽂치	민어류	기타돔	갈치	가오리류	기타
'90	676,445	322,176	138,493	56,705	34,339	-	5,846	12,248	8,430	3,788	94,420
'95	700,735	336,810	137,848	51,951	26,821	31,321	21,254	7,168	7,423	9,734	70,405
'00	465,200	86,066	137,015	49,461	30,079	25,029	23,169	6,449	12,135	10,946	84,851
'03	397,196	21,890	153,328	52,192	21,839	31,219	23,401	6,604	3,264	7,441	76,018
'04	400,134	20,009	162,200	40,216	26,324	22,625	19,578	7,316	2,802	7,631	91,433
'05	439,711	26,004	171,641	52,474	24,178	40,509	18,712	7,627	2,065	5,058	91,443
'06	433,122	26,269	205,221	55,831	24,333	12,009	15,522	6,240	2,049	5,154	80,494
'07	446,641	20,109	213,729	53,752	22,763	16,976	16,567	5,689	2,480	4,778	89,798
'08	445,367	27,980	187,277	70,778	20,092	29,591	15,404	6,905	2,779	3,450	81,111
'09	493,857	38,996	257,481	36,823	21,912	22,001	15,990	6,812	2,383	4,459	87,000
'10	488,155	46,794	216,720	67,138	25,234	21,360	18,491	7,040	580	4,081	80,717

갑각류

(단위 : M/T)

	계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게류	새우류	기타
'90	6,352	4,491	1,861	-	-	-
'95	2,194	-	737	746	-	711
'00	6,534	4,499	1,835	192	-	8
'03	20,927	20,411	162	101	6	247
'04	25,648	25,212	104	176	-	156
'05	28,842	28,678	26	82	-	56
'06	33,807	33,677	43	32	-	55
'07	37,247	37,074	53	92	-	28
'08	35,522	35,441	8	6	14	53
'09	29,588	29,396	5	4	3	180
'10	36,057	35,843	82	3	22	107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갑오징어	문어류	한치류	기타
'90	236,515	229,148	4,316	1,120	-	1,931
'95	194,395	193,124	906	346	-	19
'00	179,533	177,843	824	457	-	409
'03	126,468	121,945	3,633	217	-	673
'04	73,618	69,999	2,882	557	-	180
'05	83,543	81,172	1,908	80	362	21
'06	172,255	170,211	945	550	449	100
'07	226,072	222,164	1,314	381	2,165	48
'08	185,293	181,780	1,310	19	1,649	535
'09	88,505	84,652	1,993	721	1,080	59
'10	67,904	65,416	1,282	15	1,131	60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다랑어	생산량	137,015	137,569	173,693	153,328	162,200	171,641	205,221	213,729	187,277	257,481	216,720
	생산금액	81,430	134,408	154,657	124,875	162,259	154,848	177,875	256,529	336,599	356,162	321,838
황다랑어	생산량	49,461	58,957	48,778	52,192	40,216	52,474	55,831	53,752	70,778	36,823	67,138
	생산금액	109,057	116,012	107,350	122,350	89,713	77,099	75,227	101,534	192,610	92,644	201,596
명태	생산량	86,066	199,123	24,825	21,890	20,009	26,004	26,269	20,109	27,980	38,996	46,794
	생산금액	71,873	181,365	27,398	16,391	24,680	26,756	35,071	19,757	38,377	59,102	64,359
눈다랑어	생산량	30,079	31,335	31,962	21,839	26,324	24,178	24,333	22,763	20,092	21,921	25,234
	생산금액	233,163	206,913	185,781	170,392	171,078	140,776	155,334	139,989	176,070	217,403	262,244
꽂치	생산량	25,029	20,869	20,088	31,219	22,625	40,509	12,009	16,976	29,591	22,001	21,360
	생산금액	33,065	30,323	31,747	22,390	23,783	31,354	14,918	20,153	33,469	25,095	38,450
민어	생산량	23,169	22,033	24,295	23,401	19,578	18,712	15,522	16,567	15,404	15,990	18,491
	생산금액	83,019	85,961	90,404	89,325	73,045	75,577	69,602	68,995	56,814	58,325	65,428
전갱이	생산량	-	-	14	2,525	10,365	9,572	11,933	11,617	13,851	14,718	8,895
	생산금액	-	-	-	25	15	3,490	4,588	4,323	6,080	13,850	11,313
조기	생산량	4,160	1,630	2,054	3,703	5,507	5,984	5,085	6,609	4,073	1,178	2,775
	생산금액	6,555	1,544	2,403	30,718	9,501	9,501	9,915	11,182	8,508	3,174	7,931
남빙양새우	생산량	4,499	1,650	12,965	20,411	25,212	28,678	33,677	37,074	35,441	29,396	35,843
	생산금액	5,331	4,363	7,779	18,656	20,876	27,705	30,871	32,616	35,676	36,267	44,897
오징어	생산량	177,843	163,092	141,352	121,945	69,999	81,172	170,211	222,164	181,780	84,652	65,416
	생산금액	210,439	114,121	113,259	136,359	77,371	117,751	173,618	181,529	180,540	90,031	145,113



(5) 내수면어업 생산량

■ 패류

(단위 : MT)

	계	재첩	개량조개	우렁이	다슬기	기타
'90	2,601	1,450	508	-	-	643
'95	933	664	3	5	-	261
'00	675	370	36	31	-	238
'03	2,016	1,283	-	64	-	669
'04	4,670	4,149	-	53	-	468
'05	1,883	1,034	18	72	-	759
'06	2,879	816	37	1,254	531	241
'07	3,027	523	-	1,813	445	246
'08	2,993	628	-	1,581	612	172
'09	3,742	591	-	2,114	930	107
'10	4,085	798	-	2,458	690	139

■ 어류

(단위 : MT)

	계	항어	뱀장어	송어류	붕어	메기	잉어	미꾸라지	피라미	기타어류
'90	31,612	9,926	1,271	1,542	6,146	606	2,875	1,092	2,228	5,926
'95	28,057	10,918	2,471	2,799	2,790	2,150	1,687	493	982	3,767
'00	19,614	1,838	2,739	2,808	2,432	2,966	1,716	644	386	4,085
'03	17,399	920	4,332	3,521	1,107	1,708	1,137	974	120	3,580
'04	20,415	702	5,205	3,502	1,503	1,916	1,661	1,837	51	4,038
'05	21,760	975	5,810	3,320	1,321	2,575	1,640	1,953	21	4,145
'06	24,843	706	8,012	1,878	1,223	2,985	1,281	1,138	46	7,574
'07	23,424	800	10,597	2,882	1,495	2,266	1,094	798	47	3,445
'08	25,343	1,028	6,576	2,811	2,543	3,905	1,871	432	113	6,064
'09	25,718	930	6,766	2,737	2,636	3,869	2,001	506	156	6,117
'10	26,326	1,169	8,021	2,652	2,734	4,282	2,002	703	227	4,536

■ 갑각류 및 기타

(단위 : MT)

	계	갑각류		계	기타 자라
		게류	새우류		
'90	97	20	77	1	1
'95	218	4	214	13	13
'00	114	55	59	168	168
'03	127	78	49	138	138
'04	78	35	43	136	136
'05	101	50	51	95	95
'06	479	115	364	90	90
'07	177	107	70	132	132
'08	726	207	519	118	118
'09	511	134	349	100	100
'10	345	92	250	266	266

■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백만원, %)

품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뱀장어	생산량	2,739	2,661	2,978	4,332	5,205	5,810	8,012	10,597	6,576	6,766	8,021	
	생산금액	36,284	32,406	37,188	50,090	76,039	88,946	114,672	134,616	153,826	141,976	205,435	
메기	생산량	2,966	2,669	2,634	1,708	1,916	2,575	2,985	2,266	3,905	3,869	4,282	
	생산금액	10,534	7,162	7,999	5,695	6,187	6,953	9,273	9,184	13,902	12,455	12,823	
붕어	생산량	2,432	2,065	1,659	1,107	1,503	1,321	1,223	1,495	2,543	2,636	2,734	
	생산금액	9,597	8,364	6,976	5,666	6,777	6,500	6,496	7,0101	11,352	12,674	13,294	
송어	생산량	2,808	2,834	2,869	3,521	3,502	3,320	1,878	2,882	2,811	2,737	2,652	
	생산금액	14,695	12,173	14,888	16,099	19,697	17,418	10,698	14,680	16,373	21,420	18,553	
잉어	생산량	1,716	1,325	1,166	1,137	1,661	1,640	1,281	1,094	1,871	2,001	2,002	
	생산금액	6,648	4,746	5,087	4,000	6,076	6,164	5,335	4,757	7,474	7,815	7,151	
향어	생산량	1,838	1,222	991	920	702	975	706	800	1,028	930	1,169	
	생산금액	7,643	4,590	3,898	3,148	2,709	3,860	2,914	3,298	4,895	4,692	5,206	
미꾸라지	생산량	644	644	398	974	1,837	1,953	1,138	798	432	506	703	
	생산금액	3,463	3,253	2,264	4,500	8,880	8,648	4,758	4,956	2,693	3,752	5,887	
우렁이	생산량	31	40	80	64	53	72	1,254	1,813	1,581	2,114	2,458	
	생산금액	110	149	294	135	166	228	3,571	5,954	6,005	6,135	6,241	
재첩	생산량	370	493	1,465	1,283	4,149	1,034	816	523	628	591	798	
	생산금액	995	1,639	7,076	6,056	9,500	2,744	2,127	1,283	1,504	1,371	1,747	
다슬기	생산량	-	-	-	-	-	-	531	445	612	930	690	
	생산금액	-	-	-	-	-	-	4,178	4,302	6,287	9,324	7,175	



(6) 어업별 생산량(연근해어업)

(단위 : M/T)

	계	대형 기저	근해 트롤	중형 기저	대형 선망	기선 권현망	근해 채낚기	안강망	연승	통발	정치망	잠수기	기타
'70	724	114	4	45	37	21	70	99	30	-	14	28	262
'80	1,370	153	95	59	222	107	40	244	20	11	80	23	316
'90	1,472	121	173	61	359	86	51	244	33	40	16	22	266
'95	1,425	128	104	26	228	140	94	174	33	77	65	17	339
'99	1,334	118	141	16	230	94	92	130	33	51	69	18	342
'00	1,189	106	132	15	180	75	81	102	38	44	69	14	333
'01	1,252	97	160	11	232	98	75	95	32	41	72	13	326
'02	1,096	89	142	16	182	90	73	85	30	51	39	11	288
'03	1,097	69	144	22	159	134	74	70	15	54	49	11	296
'04	1,077	78	124	18	231	105	67	64	11	54	37	11	277
'05	1,097	86	102	22	192	132	63	43	15	61	49	12	320
'06	1,109	96	108	24	168	143	66	48	16	64	45	11	320
'07	1,152	76	99	29	236	108	63	73	17	75	40	12	324
'08	1,286	65	106	35	272	150	61	76	25	69	56	11	360
'09	1,227	64	120	37	287	116	60	74	17	71	67	21	293
'10	1,134	64	100	41	209	158	46	79	15	74	38	10	300

(7) 시도별 생산량

연근해 어업

(단위 : 천M/T)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	1,472	426	64	-	37	80	39	84	297	86	323	36
'95	1,425	449	58	-	14	83	43	63	235	142	283	55
'99	1,336	446	44	20	18	64	55	51	206	155	234	43
'00	1,189	381	40	20	18	56	62	42	180	137	211	42
'01	1,252	437	35	19	16	56	46	39	183	127	250	44
'02	1,096	368	38	18	14	40	45	39	162	117	212	43
'03	1,097	343	24	22	5	42	69	61	135	122	229	45
'04	1,077	352	17	17	3	46	70	48	145	131	203	45
'05	1,097	300	21	20	9	57	57	30	158	117	262	66
'06	1,109	294	28	22	5	54	69	29	173	119	257	59
'07	1,152	322	33	18	7	63	68	35	169	142	232	63
'08	1,286	369	28	15	10	58	59	34	206	168	254	85
'09	1,227	366	37	17	7	63	81	35	173	166	220	64
'10	1,134	288	33	20	5	54	92	33	170	124	254	59

양식어업

(단위 : 천MT)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	119,211	437.8	-	-	4,443.4	2,435.5	8,829.2	3,440.6	60,808.7	1,254	36,951.9	609.9
'80	540,564	22,470	-	-	9,966	87	34,682	4,011	211,946	9,402	246,608	1,392
'90	772,731	52,849	87	-	14,245	133	19,044	61,026	386,542	20,779	217,920	106
'95	996,451	56,535	4,251	-	1,192	577	29,945	16,759	654,466	12,895	217,207	2,624
'97	1,015,134	46,183	1,159	-	769	1,560	23,974	10,107	682,484	8,409	234,715	5,774
'98	777,230	58,064	1,191	5,151	1,157	1,264	28,937	21,103	439,414	4,464	208,757	7,728
'99	765,252	53,912	1,302	6,529	1,624	1,178	25,808	23,433	431,196	4,273	206,048	9,949
'00	653,373	50,244	1,439	11,389	801	3,163	24,394	20,704	330,399	4,413	201,034	5,393
'01	655,827	41,775	868	15,556	881	698	29,409	21,719	328,963	4,719	205,172	6,067
'02	781,519	48,529	1,666	16,936	1,021	324	25,227	25,833	439,985	5,333	205,499	11,166
'03	826,245	37,058	1,588	14,820	3,920	265	38,331	26,183	474,680	6,789	206,354	16,257
'04	917,715	45,458	1,512	13,508	3,874	786	43,715	26,305	531,242	6,890	226,366	18,059
'05	1,041,074	75,405	1,714	12,923	5,145	1,076	42,800	25,880	578,427	8,610	268,374	20,720
'06	1,259,274	39,884	1,537	10,551	5,509	937	52,576	32,121	756,097	8,536	329,113	22,413
'07	1,385,804	40,272	2,244	11,840	8,462	1,612	37,445	40,676	793,058	9,763	419,147	21,285
'08	1,382,098	53,916	3,492	11,488	9,383	2,068	27,154	44,101	848,285	8,289	348,512	25,410
'09	1,313,355	34,575	1,318	7,027	13,321	963	33,865	46,746	805,761	8,137	330,127	31,515
'10	1,355,000	57,208	2,430	5,581	12,473	1,667	35,799	42,648	834,952	6,788	333,365	22,089



<연근해어업>

생산량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멸치류	249,636	3,904
오징어류	159,130	5,678
고등어류	94,331	1,679
갈치	59,242	3,009
삼치류	35,778	1,141
꽃게	33,193	2,789
참조기	31,931	1,607
붉은대게	30,749	416
청어	25,005	238
굴류	22,686	235
가자미류	20,107	1,456
방어	19,468	357
전갱이류	19,305	251
젓새우	18,861	498
붕장어	13,757	1,066
까나리	13,557	98
아귀	13,104	434
바지락	12,818	304
문어	10,813	1,300
키조개	10,224	276

생산금액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오징어류	159,130	5,678
멸치류	249,636	3,904
갈치	59,242	3,009
꽃게	33,193	2,789
고등어류	94,331	1,679
참조기	31,931	1,607
가자미류	20,107	1,456
문어	10,813	1,300
낙지	6,954	1,293
삼치류	35,778	1,141
붕장어	13,757	1,066
병어류	8,871	691
넙치류	6,035	620
젓새우	18,861	498
주꾸미	2,977	466
아귀	13,104	434
붉은대게	30,749	416
대게	2,606	414
방어	19,468	357
기타새우	8,099	346

<양식어업>

생산량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미역	393,616	627
굴류	267,776	1,698
다시마류	241,322	472
김	235,534	2,306
홍합류	54,440	287
넙치류	40,925	4,898
바지락	23,430	492
툰	21,133	207
조피볼락	20,918	1,975
우렁쉥이	6,364	154
참돔	6,300	642
전복류	6,228	2,284
오만둥이	5,504	43
숭어류	4,657	286
파래	4,531	43
미더덕	2,920	34
흰다리새우	2,705	360
모자반(말)	2,383	39
감성돔	2,254	226
농어	1,952	200

생산금액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넙치류	40,925	4,898
김	235,534	2,306
전복류	6,228	2,284
조피볼락	20,918	1,975
굴류	267,776	1,698
참돔	6,300	642
미역	393,616	627
바지락	23,430	492
다시마류	241,322	472
흰다리새우	2,705	360
홍합류	54,440	287
숭어류	4,657	286
피조개	1,560	241
감성돔	2,254	226
툰	21,133	207
농어	1,952	200
우렁쉥이	6,364	154
돌돔	902	133
가자미류	552	77
매생이	1,759	76



<내수면어업>

생산량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뱀장어	8,021	2,054
메기	4,282	128
붕어	2,734	133
송어류	2,652	186
우렁이	2,458	62
잉어	2,002	72
기타어류	1,276	67
향어	1,169	52
숭어	956	23
재첩	798	17
미꾸라지	703	59
다슬기	690	72
부르길	414	10
동자개	391	49
가물치	283	24
빙어	255	5
민물돔	251	14
새우류	250	22
피라미	227	13
자라	226	98

생산금액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뱀장어	8,021	2,054
송어류	2,652	186
붕어	2,734	133
메기	4,282	128
자라	226	98
다슬기	690	72
잉어	2,002	72
기타어류	1,276	67
우렁이	2,458	62
미꾸라지	703	59
쏘가리	139	56
향어	1,169	52
동자개	391	49
가물치	283	24
숭어	956	23
계류	92	22
새우류	250	22
비단잉어	52	22
황복어	19	18
재첩	798	17

<원양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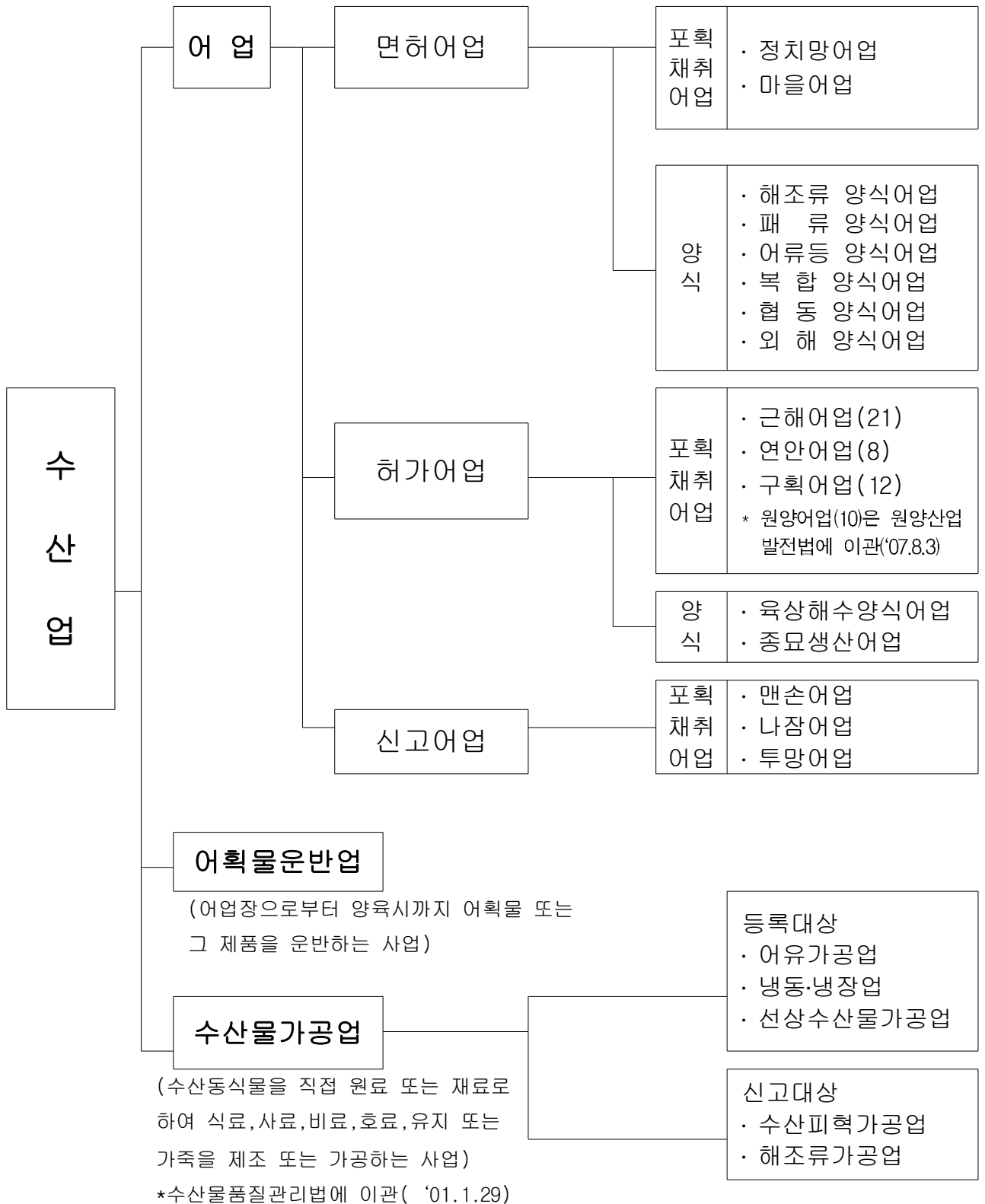
생산량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가다랑어	216,720	3,218
황다랑어	67,138	2,016
오징어류	65,416	1,451
명태	46,794	644
남빙양새우	35,843	449
눈다랑어	25,234	2,622
기타어류	24,315	372
꽁치	21,360	384
민어류	18,491	654
새꼬리민태	10,852	190
전갱이류	8,895	113
기타돔	7,040	135
대구	4,479	71
민대구	4,139	101
가오리류	4,081	75
삼치류	3,765	42
기타새치	3,348	97
조기류	2,775	79
메로(이빨고기)	2,203	201
날개다랑어	2,154	72

생산금액 순위		
품종별	생산량 (톤)	생산금액 (억원)
가다랑어	216,720	3,218
눈다랑어	25,234	2,622
황다랑어	67,138	2,016
오징어류	65,416	1,451
민어류	18,491	654
명태	46,794	644
남빙양새우	35,843	449
꽁치	21,360	384
메로(이빨고기)	2,203	201
새꼬리민태	10,852	190
남부다랑어	736	143
기타돔	7,040	135
전갱이류	8,895	113
민대구	4,139	101
기타새치	3,348	97
조기류	2,775	79
황새치	1,272	79
가오리류	4,081	75
붉은메기	2,050	74
날개다랑어	2,154	72



33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34 기타 참고

수출입실적

(단위 : 백만\$, %)

		'06	'07	'08	'09	'10	증감 (10/09)
수 출	□ 국가전체	325,465	371,489	422,007	363,534	466,384	28.3
	○농림축수산물	3,395	3,759	4,497	4,809	5,880	22.3
	○농축산물	2,180	2,404	2,930	3,130	3,868	23.6
	- 농산물	2,008	2,223	2,715	2,991	3,722	24.4
	- 축산물	172	181	215	139	146	5.0
	○임산물	124	128	119	168	214	27.4
○수산물	1,090	1,227	1,448	1,511	1,798	19.0	
수 입	□ 국가전체	309,383	356,846	435,275	323,085	425,212	31.6
	○농림축수산물	13,327	19,242	23,199	21,241	25,787	21.4
	○농축산물	10,866	13,324	17,257	14,239	17,211	20.9
	- 농산물	8,117	10,089	13,905	11,754	13,988	19.0
	- 축산물	2,749	3,235	3,352	2,485	3,123	25.7
	○임산물	2,462	2,858	2,864	4,108	5,219	27.0
○수산물	2,774	3,060	3,078	2,894	3,457	19.5	
수 지	□ 국가전체	16,082	14,643	△13,268	40,449	41,172	1.8
	○농림축수산물	△9,932	△15,483	△18,702	△16,432	△19,907	△21.1
	- 수산물	△1,684	△1,833	△1,630	△1,383	△1,659	△20.0

1인당 연간소비량

(단위 : kg, %)

	'95	'00	'05(a)	'09(b)	'09/'05
수산물	39.3	36.8	49.5	49.8	0.6
쌀	106.5	93.6	80.7	74.0	△8.3
채소류	160.6	165.9	145.5	152.5	4.8
과실류	55.4	58.4	62.7	67.7	8.0
육류	27.4	31.9	32.0	36.8	15
계란(개)	184	184	220	238	8.2
우유	47.8	49.2	62.7	62.3	△0.6



수출입실적

(단위 : 백만\$, %)

		'05	'06	'07	'08	'09	증감 (09/08)
수 출	□ 국가전체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13.9
	○농림축수산물	3,416	3,395	3,759	4,497	4,809	7.0
	○농축산물	2,072	2,180	2,404	2,930	3,130	6.8
	- 농산물	1,899	2,008	2,223	2,715	2,991	10.2
	- 축산물	173	172	181	215	139	△35.4
	○임산물	150	124	128	119	168	41.5
○수산물	1,194	1,090	1,227	1,448	1,511	4.3	
수 입	□ 국가전체	261,238	309,383	356,846	435,275	323,085	△25.8
	○농림축수산물	11,889	13,327	19,242	23,199	21,241	△8.4
	○농축산물	9,758	10,866	13,324	17,257	14,239	△17.4
	- 농산물	7,397	8,117	10,089	13,905	11,754	△15.5
	- 축산물	2,361	2,749	3,235	3,352	2,485	△25.9
	○임산물	2,131	2,462	2,858	2,864	4,108	43.4
○수산물	2,387	2,774	3,060	3,078	2,894	△6.0	
수 지	□ 국가전체	23,181	16,082	14,643	△13,268	40,449	△404.9
	○농림축수산물	△8,473	△9,932	△15,483	△18,702	△16,432	△12.6
	- 수산물	△1,193	△1,684	△1,833	△1,630	△1,383	△15.2

1인당 소비량

(단위 : kg)

	'95	'00	'05(a)	'08(b)	'08/'05
수산물	39.3	37.2	32.4	57.0	175.9%
쌀	67.8	64.6	61.0	65.1	106.7%
채소	105.8	101.5	94.8	108.7	114.7%
과실	42.2	41.5	39.4	54.3	137.8%
육류	28.5	28.8	28.0	43.3	154.6%
달걀	17.2	17.0	16.6	19.8	119.2%
유제품	91.2	94.2	92.2	86.3	93.63%

* 주요 어종별 : 명태 7.2kg, 오징어 5.6, 고등어 3.6

* 주요 품종별 : 어류 24.0kg, 패류 15.1, 해조류 15.8, 기타 2.1

IV. 수산관련 지도

전국 수협 현황

구분	조합명	조합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경 인 (5)	경인북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7-1	417-807	032-933-3405
	용진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85-19	402-061	032-865-2257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로 45	406-113	032-220-2221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0-10	442-831	031-220-7520
	영흥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8-165	409-870	032-882-1348
강 원 (9)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51	219-901	033-682-2073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15-131	240-050	033-532-2019
	삼척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41-2	245-140	033-572-1014
	원덕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55	248-801	033-573-5632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82-17	217-030	033-633-1263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26-7	215-842	033-671-6304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84-92	210-800	033-662-3633
	죽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56	219-822	033-632-0024
	대포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21-59	217-100	033-635-8747
충 청 (8)	당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9-5	343-800	041-350-6640
	보령	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	355-010	041-931-0250
	서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78-3	357-906	041-673-8173
	서천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327	325-907	041-956-6880
	서천서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43	325-893	041-952-5886
	태안남부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96-3	357-950	041-672-2117
	안면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69	357-961	041-673-9901
	신항	충남 보령시 신항동 1895	355-944	041-931-3352
전 북 (4)	군산시	전북 군산시 조촌동 828-1	573-885	063-450-6688
	김제	전북 김제시 요촌동 641-4	576-807	063-546-3425
	부안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2	579-800	063-584-9400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133	585-800	063-561-2132
전 남 (14)	강진군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0-65	527-910	061-432-2081
	목포	전남 목포시 금화동 15-1	530-040	061-244-6192
	신안군	전남 목포시 행복동 1가 3	530-160	061-242-5911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628-4	513-805	061-351-3196
	완도금일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032	537-901	061-554-5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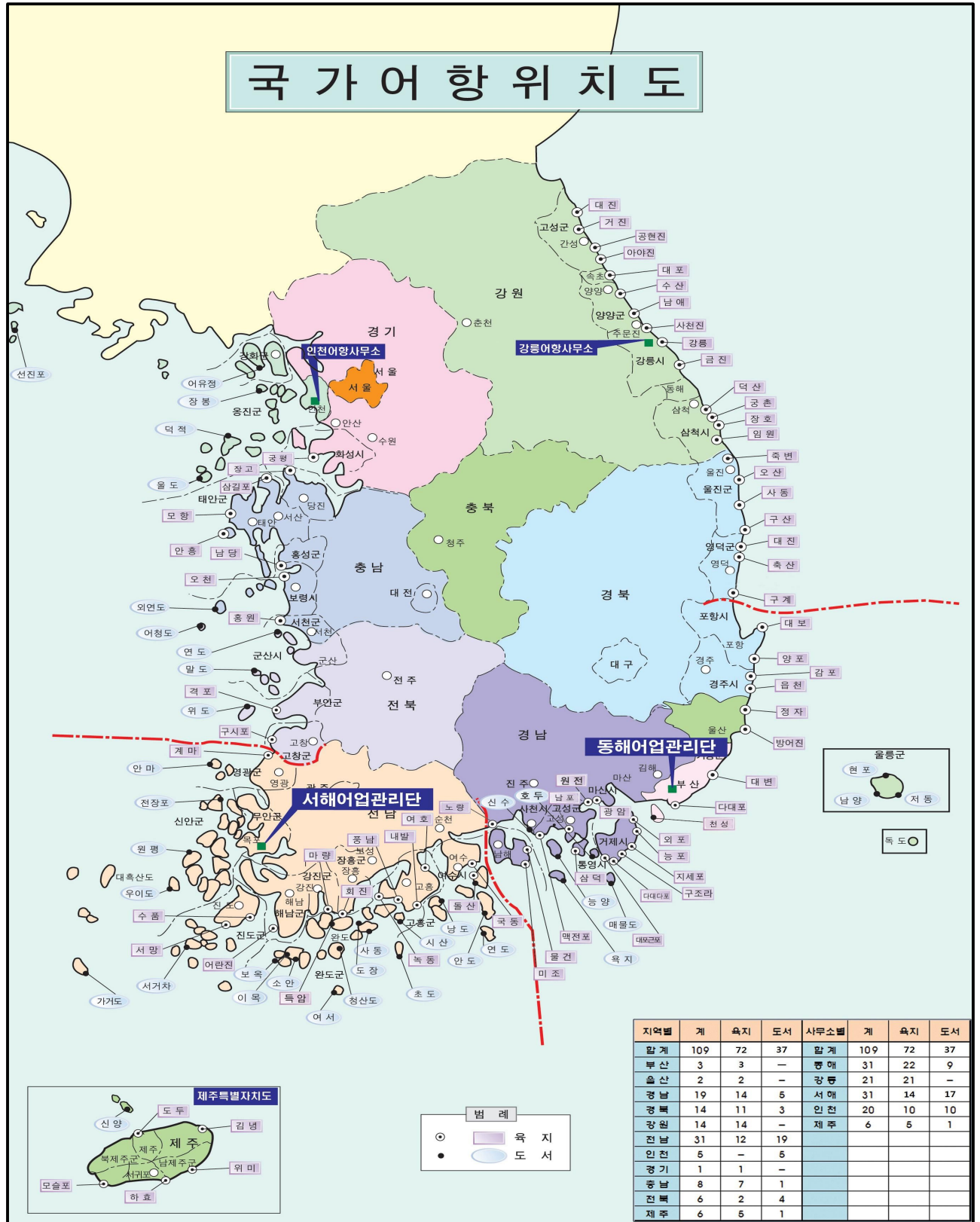
구분	조합명	조합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완도소안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130-1	537-830	061-553-7206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5-4	539-802	061-543-5111
	해남군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28-36	536-813	061-534-4151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7	556-850	061-666-8020
	고흥군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09-21	548-903	061-840-3112
	나로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1000-58	548-943	061-833-8101
	전남동부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0-3	556-892	061-682-7176
	여수	전남 여수시 봉산동 100-7	550-170	061-641-2601
	장흥군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762-15	529-800	061-867-8105
경북 (8)	경주시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69-14	780-830	054-744-3736
	강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6-48	766-821	054-732-9112
	구룡포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	799-800	054-276-2807
	울릉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	799-802	054-791-2094
	죽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20-28	767-812	054-783-7480
	영덕북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941-5	766-834	054-732-5001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8	791-100	054-247-0856
	후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50-2	767-833	054-787-1331
경남 (14)	거제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58	656-910	055-682-4170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5	638-806	055-673-4162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동성동 310-1	631-460	055-249-5111
	삼천포	경남 사천시 서동 311-17	664-030	055-830-7300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1238-3	680-850	052-268-8005
	의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823-1	645-510	055-552-3088
	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5	645-051	055-543-7004
	통영	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	650-070	055-646-1222
	하동군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667-922	055-883-9317
	남해군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21	668-831	055-867-6525
	육지	경남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581-33	650-912	055-643-6771
	사천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42-1	664-823	055-854-0540
	사량	경남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84-4	650-931	055-641-8246
	창원서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256	631-815	055-271-2032
부산 (2)	부산시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1-3	602-020	051-254-9935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6-9	619-912	051-722-1905

구분	조합명	조합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제주 (6)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6	697-010	064-733-3501
	모슬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0-28	699-935	064-794-0556
	성산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25-1	699-903	064-782-3135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39-4	690-801	064-720-3100
	추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	690-951	064-742-8193
	한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	690-932	064-796-0913
업종 별 (20)	기선권현망	경남 통영시 정량동 1405	650-030	055-646-2211
	대형선망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1-3	602-740	051-254-9011
	동해구기선저인망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8	791-010	054-231-3314
	서남구기선저인망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1-3	602-740	051-254-7891
	근해유망	전남 여수시 여서동 215	550-260	061-665-7810
	경남정치망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1-3	602-021	051-254-8631
	전남정치망	전남 여수시 교동 64	550-110	061-666-4400
	제1,2구잠수기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 55-2	600-046	051-243-9565
	제3,4구잠수기	전남 여수시 국동 1082-7	550-180	061-640-2011
	대형기선저인망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1-3	602-740	051-242-7511
	피조개양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92-2	631-460	055-244-1802
	굴수하식	경남 통영시 수산로 44	650-070	055-645-4511
	근해안강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4	157-010	02-2606-6141
	명계수하식	경남 통영시 서호동 177-410	650-090	055-647-0610
	근해통발	경남 통영시 정량동 1402	650-807	055-646-9322
	양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76-2	501-015	062-234-8431
	제주어류양식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359-11	690-833	064-727-6109
	서남해수어류양식	전남 여수시 봉산동 96-8	550-818	061-642-1010
	전남서부어류양식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92-4	537-801	061-552-2095
	경북어류양식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138번지	791-052	054-772-0391
가공 별 (2)	통조림가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538(성지빌딩502호)	121-743	02-715-1058
	냉동냉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251-158(냉협빌딩)	143-201	02-458-9191



지도 1

국가어항 위치도



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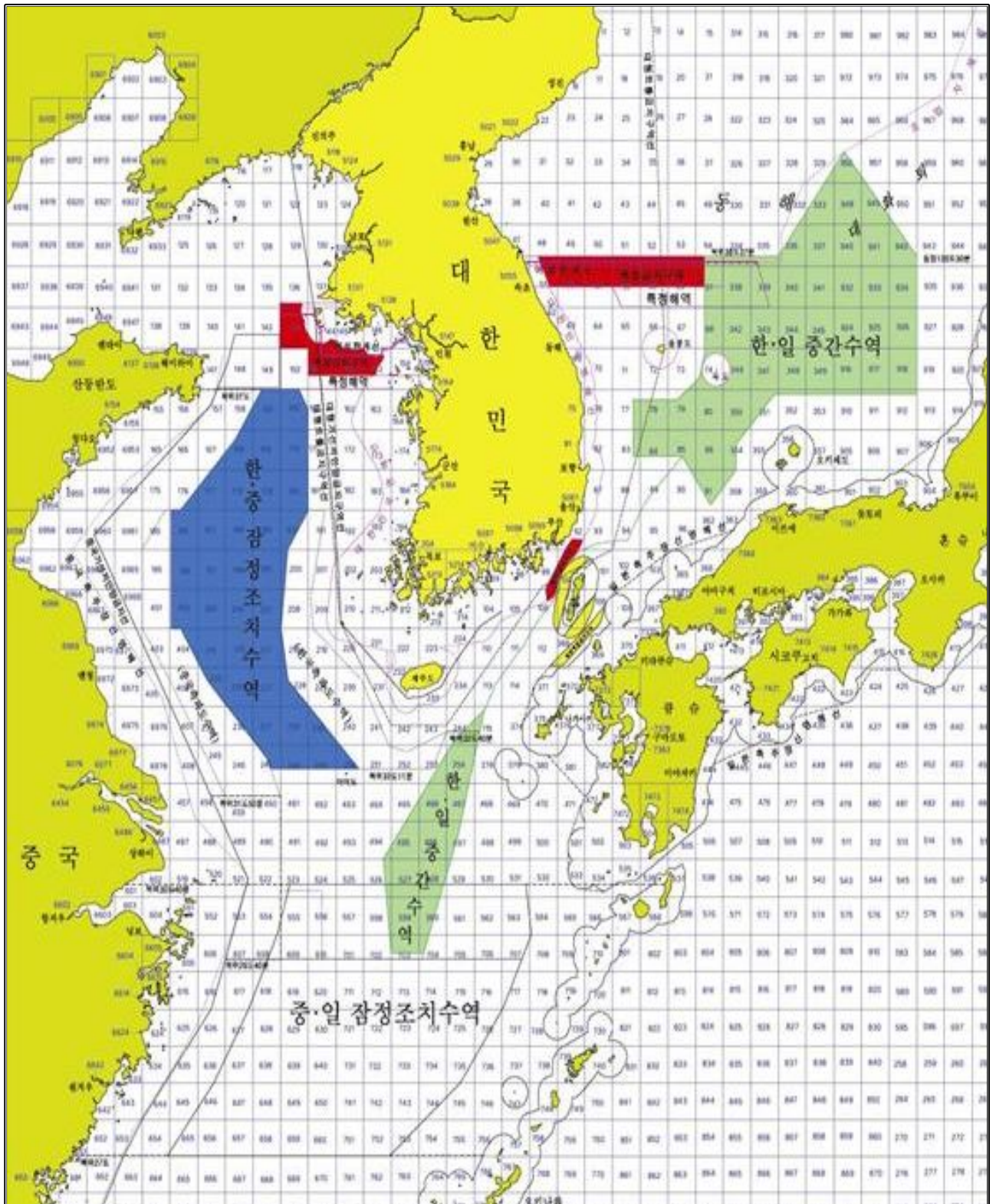
동·서해 어업관리단 관할수역도

- 전남 완도·고흥경계 기점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동측 수역은 동해 어업관리단, 서측수역은 서해어업관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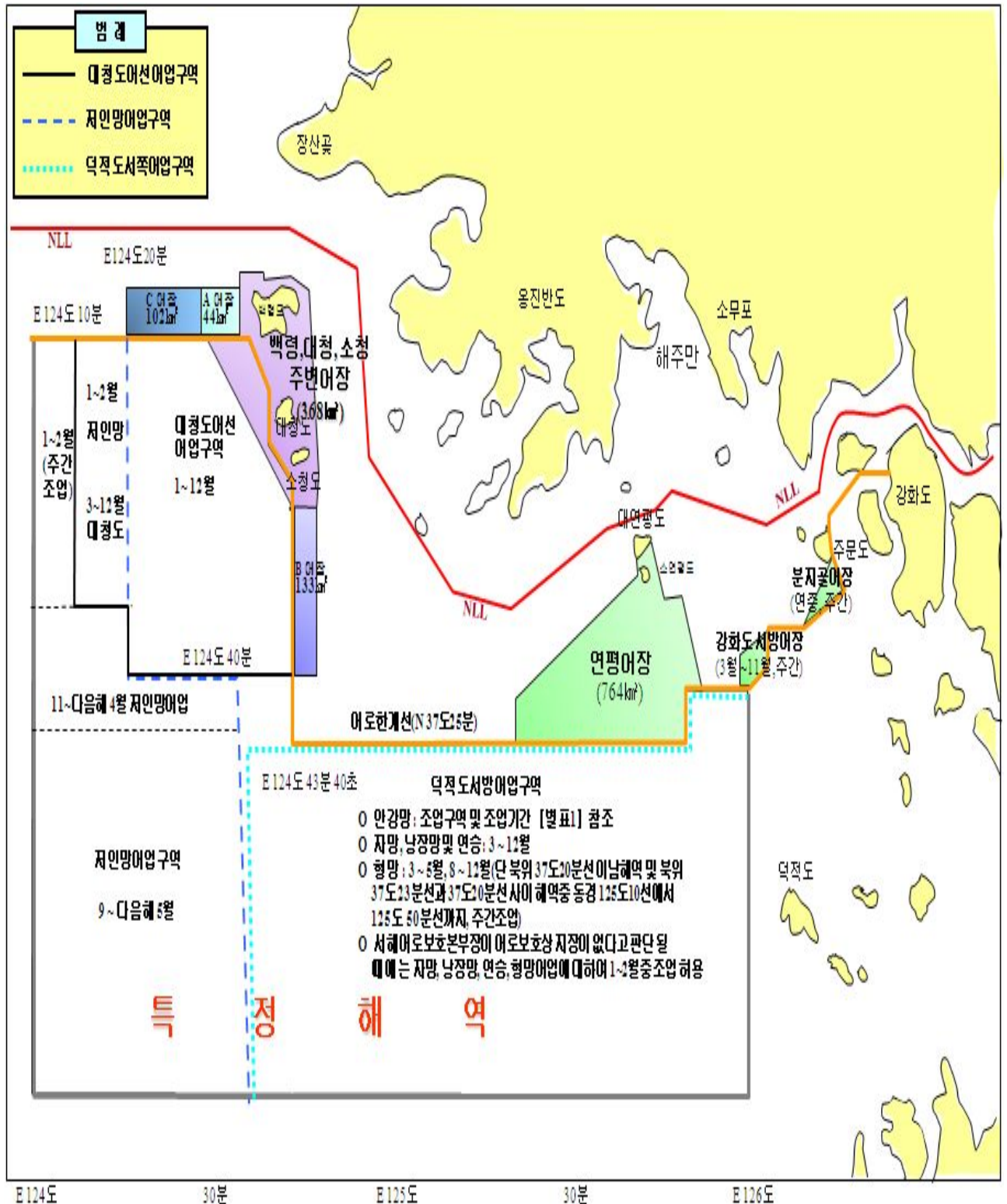
지도 3

한·중·일 어업협정수역도



지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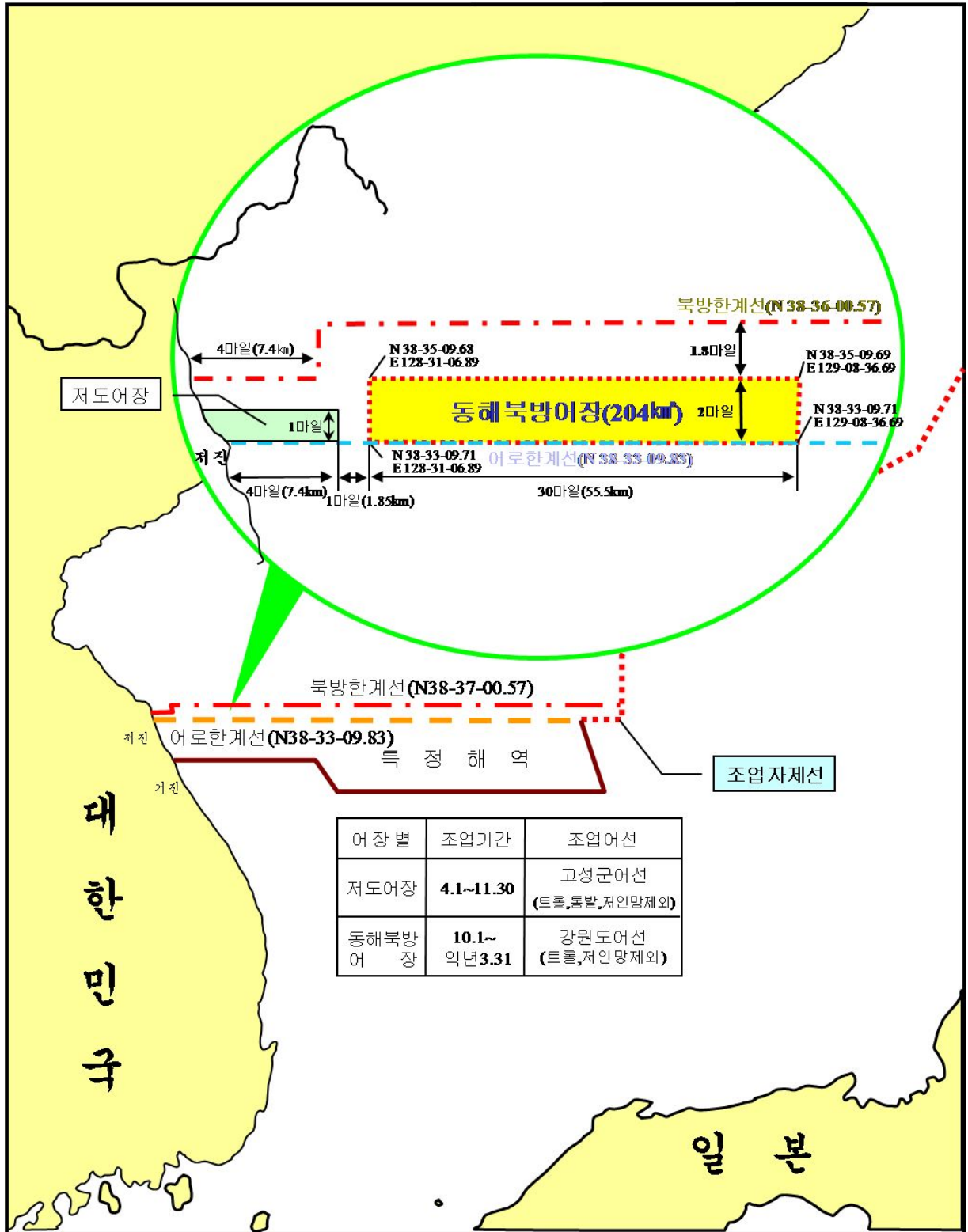
서해 5도서 어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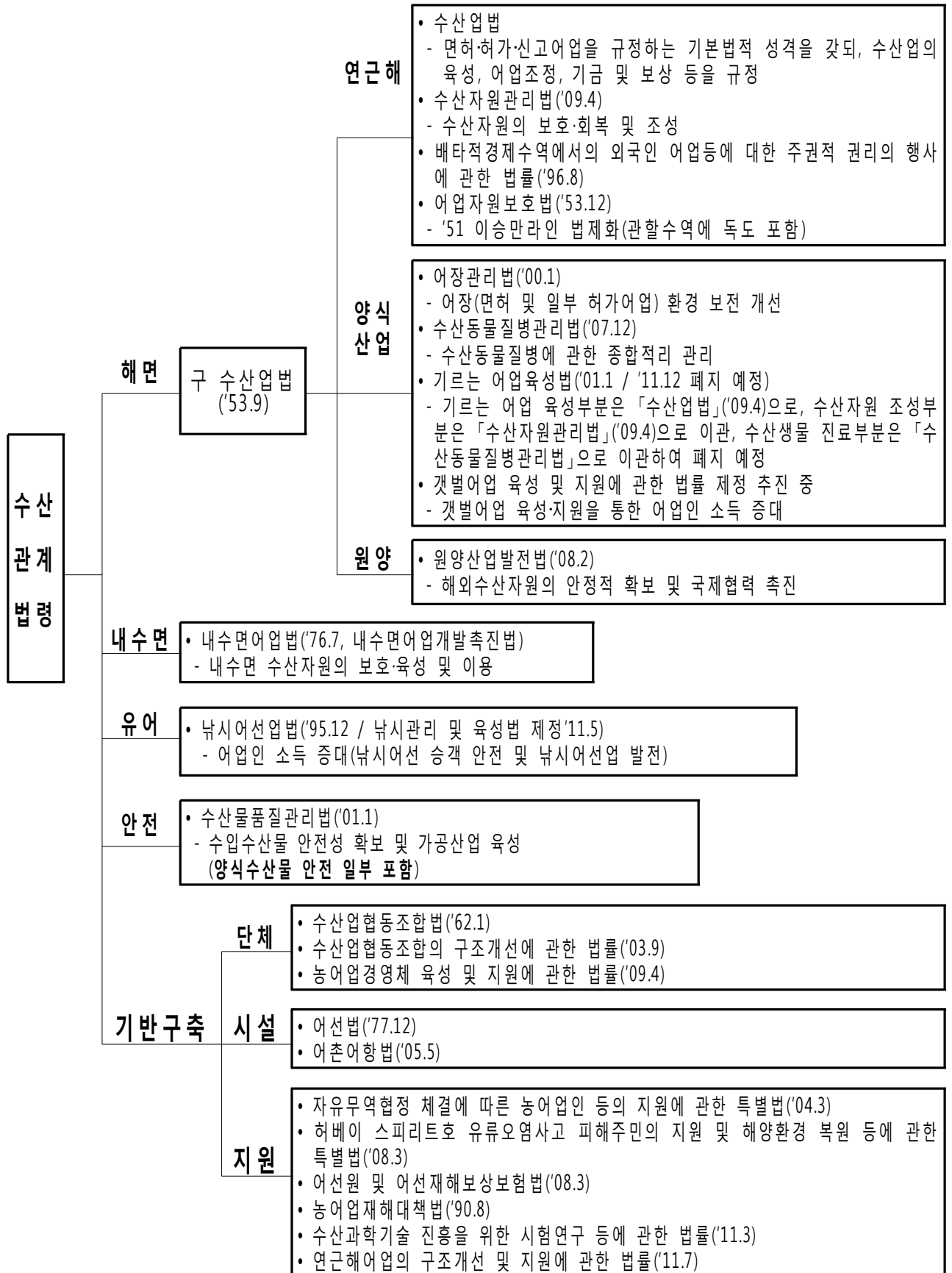
지도 5

동해 북방어장 구역도



V. 소관 법령 개요

(1) 수산관계법령 체계도(22+1)





<법령개요>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1013호(1962.1.20) ○ 개정 : 2010.4.12. 일부개정 법률 제10245호
제정목적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구성	○ 183조의 본문과 19조의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정치관여가 금지되며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정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부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조합계 : 구내 2308~9)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973호(2003.9.3) ○ 개정 : 2008.2.29. 일부개정 법률 제8863호
제정목적	<p>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수산업협동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어업인 및 어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p>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조의 본문과 3조의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등을 부실조합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실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 설립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등 4개 고시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정책과(조합계 : 구내 2308~9)



◀ 어촌·어항법 ▶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7571호(2005.5.31) ○ 개정 : 2011.7.14 일부개정 법률 제10848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조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 어항구역, 어항시설, 어항개발사업, 어항 운영전산망, 폐기물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 기본계획수립, 다른계획과의 관계 ○ 어촌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수립, 인허가등의 의제 사업시행, 준공확인, 조사측량설계감리위탁, 국공유지의 양여 시설관리 목적외사용, 폐지 등 ○ 어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지정권자, 어항지정변경해제, 어촌관광, 어항개발계획수립 및 내용 협의, 시행, 지진안정성고려, 사업대행, 시설매각, 양여, 재산등기 운영권, 등록, 처분특례, 준용 등 어항시설사용허가, 유지관리, 훼손, 취소, 사용료징수, 변상금, 금지행위 원상회복, 전산망구축운영 ○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및자료제출, 법령위반처분, 어촌어항관광활성화지원 공익처분 비상재해시조치, 손실보상, 청문, 권리의무이전, 권한위임위탁, 협회 설립, 협회사업, 정관변경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촌·어항법 시행령 ○ 부령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개발과(기획계 : 구내 2322~2323)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866호(2003.03.19) ○ 개정 : 2010.05.27. 일부개정 법률 제9727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위탁, 감독, 회계처리,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등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급여, 보험료 등 ○ 어선재해보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급여, 보험료 등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재심사) 청구 제기 및 심리·재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 ○ 보칙 및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납부기한, 시효, 보고, 검사 및 과태료 등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부령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개발과(보험정책계 : 2335, 2323)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연혁	○ 제정 : 법률 제10483호(2011.3.29)
제정목적	○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
구성	○ 18조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인, 수산과학기술, 수산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 ○ 지방수산업진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설립근거 마련 ○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사업 촉진을 위해 기초과학, 품목연구, 응용연구 등 ○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시책방향, 추진과제 및 내용 등 반영 ○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 ○ 연구공무원, 기술보급공무원 및 명예직연구관의 자격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국유재산의 대부 및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자체에 무상양여 규정마련,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용료 징수 또는 면제, 공무원에대한 보상규정 마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령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부서	○ 수산개발과(기획계 : 구내 2331~2332)

< 훈령(고시) 현황 >

■ 총 37건 : 고시 26, 훈령 11

순번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	명 칭	담당부서
1	훈령	제2010-50호	'10.11.15	수산발전기금 운용요령	수산정책과
2	고시	제2008-59호	'08.7.31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	수산정책과
3	고시	제2008-60호	'08.7.31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수산정책과
4	고시	제2008-61호	'08.7.3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납입보험요율	수산정책과
5	고시	제2008-62호	'08.7.31	결제성예금의 범위	수산정책과
6	고시	제2010-98호	'10.10.13	수산업협동조합채무기준	수산정책과
7	고시	제2010-99호	'10.10.13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범위	수산정책과
8	고시	제2010-100호	'10.10.13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수산정책과
9	고시	제2010-101호	'10.10.13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수산정책과
10	고시	제2010-102호	'10.10.13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수산정책과
11	고시	제2010-103호	'10.10.13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 규정(예)	수산정책과
12	고시	제2010-104호	'10.10.13	어촌계정관(예)	수산정책과
13	고시	제2010-105호	'10.10.13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수산정책과
14	훈령	제171호	'09.10.13	어업용면세유류공급및사후관리요령	수산정책과
15	훈령	제187호	'09.12.29	어항건설공사 업무규정	수산개발과
16	훈령	제2009-153호	'09.09.16	활어일시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수산개발과
17	훈령	제118호	'09.08.25	수산시험연구및기술보급사업운영관리규정	수산개발과



순번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	명 칭	담당부서
18	훈령	제45호	'08.08.21	어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세칙	수산개발과
19	고시	제2010-91호	'10.09.27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	수산개발과
20	고시	제2010-84호	'10.09.07	국가어항(신양항)개발계획변경	수산개발과
21	고시	제2010-44호	'10.04.29	국가어항 육역지정	수산개발과
22	고시	제2009-309호	'09.09.08	국가어항개발 조정	수산개발과
23	고시	제2009-2호	'09.01.12	국가어항(이목항)지정	수산개발과
24	고시	제2008-103호	'08.11.12	국가어항구역(육역)추가 및 해제	수산개발과
25	고시	제2008-21호	'08.05.26	국가어항명칭	수산개발과
26	고시	제2009-437호	'09.12.29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보험요율	수산개발과
27	고시	제2009-436호	'09.12.29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특례에 따른보험요율증감표	수산개발과
28	고시	제2009-368호	'09.09.16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어선원의 기준임금	수산개발과
29	고시	제2010-93호	'10.10.13	수협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수산개발과
30	훈령	제212호	'10.6.10	선박통제규정	지도안전과
31	훈령	제266호	'11.8.19	국가어업지도선 운용 관리 및 선박 직원 복무요령	지도안전과
32	훈령	제239호	'11.1.26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지도안전과
33	훈령	제1호	'10.6.18	수산통신 운영관리지침	지도안전과
34	훈령	제215호	'10.6.18	종합상황실 운영요령	지도안전과
35	고시	제2010-7호	'10.1.14	어선안전조업규정	지도안전과
36	고시	제2009-135호	'09.8.21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지도안전과
37	고시	제2011-40호	'11.5.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지도안전과

수산정책 업무편람

인 쇄 일 2011년 12월
발 행 일 2011년 12월
편 집 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장
발 행 처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전 화 (02)500-2304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인 쇄 처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비매품